

2019 시민신문고위원회 운영보고서



이 보고서는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31조에 따라 2019년(1. 1.~12. 31.) 위원회 운영상황을 울산광역시장과 울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고 시민에게 공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발간사

2018년 9월 10일, 우리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어느 나라의 자치단체 고충해결기구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선진적이고 모범적인 기구 운영을 목표로 출범하였습니다.

이제 2년차로 가는 시점에서 작년 2019년 우리 위원회의 활동성과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 실시한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시민고충민원 처리”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함축적으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시민의 고충해결과 권익향상이 우리의 사명과 보람입니다”라는 우리 위원회의 신조(信條)에 서처럼 고충민원의 적극적인 해소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매진한 지난 1년에 대해 울산의 시민단체에서도 알토란 같은 성과를 내었다고 격려와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지역경제가 침체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빈발하고 있는 개인 간, 집단 간 사회갈등이 신뢰와 조화의 선진사회가 되는 토대인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저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고충을 공정하게 해결하고 시민과 행정 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시민주권이 실현되는 행복도시 울산 만들기 위한 우리 시민신문고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까닭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2019년 한 해 동안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운영상황과 함께 접수된 민원에 대한 분석 및 해결 사례 등을 수록하여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민여러분께 공표하고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꿀베고 나무하는 사람에게도 묻는다”는 순우추요(詢于芻蕘)의 마음으로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 차 인 환



2019 시민신문고위원회

운영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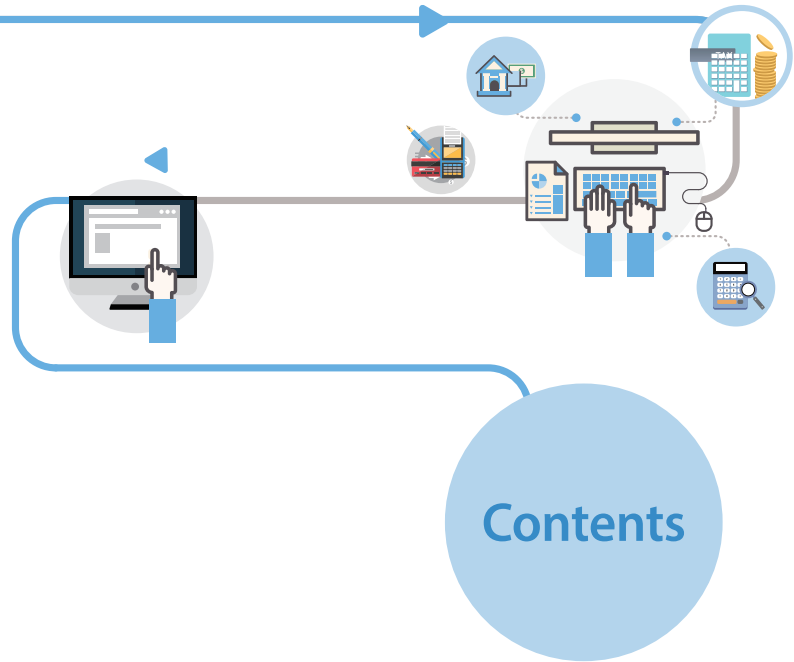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시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다양한 고충을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소통의 장,

울산을 다시 뛰게 할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합니다.

I 총평 007

II 위원회 운영 개요 011

- | | |
|------------------|-----|
| 1. 2019년 주요활동 | 013 |
| 2. 위원회 구성 현황 | 014 |
| 3. 위원 자격 및 현황 | 015 |
| 4. 위원회 직무권한 및 기능 | 017 |
| 5. 고충민원 처리절차 | 022 |



Ⅲ 위원회 운영 성과 029

1. 시민 감동의 고충해결과 권익보호	031
2. 공공사업의 청렴계약 감시 · 평가활동 전개	035
3. 명예민원상담관 운영	044
4. 금융민원상담관 운영	045
5.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운영	046
6. 금융복지 클리닉 개최	047
7. 고충민원처리 역량 강화	048
8. 시민 · 사회단체 민의 반영	049
9. 제1회 시민신문고의 날 개최	050

Ⅳ 주요 처리 사례 053

1. 고충민원 처리현황	055
2. 공공사업의 청렴계약 감시 · 평가 활동 결과	173

참고 207

1. 주요 언론 보도 사례	209
2. 고충민원 해결에 대한 민원인 소감	223
3.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229
4.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운영규정」	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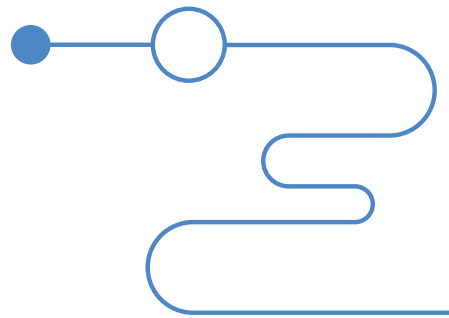
2019 시민신문고위원회

운영보고서



제1편

총 평





1. 총 평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지난 2018. 9. 10. 출범한지 올 1월로 1년 4개월째로 그간 운영상황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첫째, 고충민원처리 관련 시민 만족도와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였다. 시(市)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되어 신문고 위원의 활동에 있어 독립성과 직무전념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의 권익보호와 시정의 공정성·투명성 감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 과거 부단체장 소속의 감사관내 하나의 팀에서 고충민원이 부수적인 업무로서 추진되는 것에 비해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는 국내 최고의 분야별 전문 위원이 직접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우리시 고충민원 해결에 있어 일대 전환을 확립하는 시기였다.

둘째, 지난 1년간 시민신문고위원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시민들의 삶과 관련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실질적으로 촉진함으로써,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기구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1년 이였다. 신문고 위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경청하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모색하여 민원인과 행정기관 등에 제시함으로써 해결·조정·중재자로서 역할하였다. 그리고 민원인이 종래의 경우와 달리 민원제기에 있어 물리적 비용과 심리적·시간적 부담에서 벗어나 언제든지 당당히 요구하고 세심한 행정서비스를 받는 세계 어느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구축하였다.

셋째, 우리나라의 지자체에 있어 지방옴부즈만제도의 확산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리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의미있는 롤모델로 역할 하였다. 지방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해 각종 법규 및 제도 정비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우리 시민신문고위원회를 시민고충처리에 있어 우수한 지방옴부즈만 사례로 보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 위원회를 벤치마킹 하는 등 우리 시민신문고위원회를 시민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모범사례로 전국에 알린 한 해였다.

2020년에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빈발·다수인 민원에 대한 기획조사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시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 공공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시활동 전개 등 시민의 행복과 시정에 대한 신뢰증진을 위한 의미있는 행보를 계속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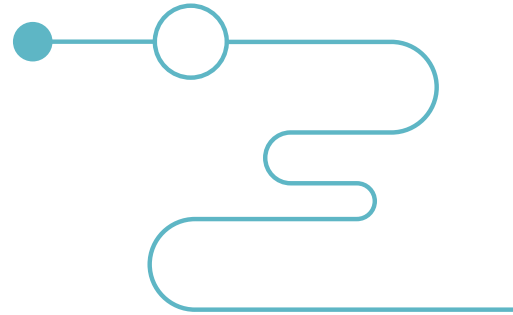
2019 시민신문교위원회

운영보고서



제2편

위원회 운영 개요



1. 2019년 주요활동
2. 위원회 구성 현황
3. 위원 자격 및 현황
4. 위원회 직무권한 및 기능
5. 고충민원 처리절차





1. 2019년 주요활동

- 01.25.~26. 2019년 시민신문고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 02. 14. 2018년도 시민신문고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 03. 14.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 간담회 개최(1차)
- 03. 26. 제1회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운영(북구)
- 04. 18. 금융민원상담관 1명 위촉(금융감독원 소속 협력관)
- 05. 28. 시민신문고위원회 명예상담관 2명 위촉
- 06. 13.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 간담회 개최(2차)
- 06.13.~14. 건축분야 고충민원 권익구제 세미나
- 06. 25. 제2회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운영(남구)
- 07. 11. 소상공인·서민을 위한 금융복지클리닉 개최
- 09. 10. 제1회 시민신문고의 날 개최
- 09. 17. 시민신문고 제도의 이해 직장교육(남구)
- 09. 25. 제3회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운영(중구)
- 10. 02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 간담회 개최(3차)
- 12. 11.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 간담회 개최(4차)
- 12. 12. 제4회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운영(울주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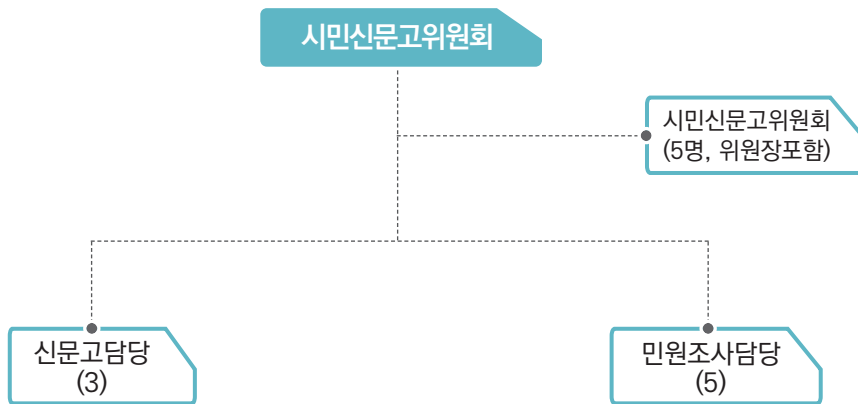
2. 위원회 구성 현황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시장 직속 합의제 기구로 독립된 지위에서 업무를 처리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조례 제3조)되어 있으며, 현재 위원 5명이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와 심의·의결을 담당하고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사무기구 직원은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조례 제27조) 현재 2담당(신문고, 민원조사) 8명을 두어 민원 조사 및 행정 업무를 보좌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조직 구성



◆ 합의제행정기관 : 2담당 9명(개방형1,경력직8)

○ 인력 : 정원 9명 / 현원 13명

(2019. 12. 31. 현재)

구분	총계	일반직					시간선택 임기제
		소계	4급	5급	6급	7급	
정원	9	9	1	2	3	3	-
현원	13	9	1	2	3	3	4

3. 위원 자격 및 현황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판사·검사, 변호사,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심사를 통해 선발했으며

위원장은 상기의 요건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서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능력과 적격성을 갖춘 인물로 심사를 통해 선발하였다.

-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
 - 중앙행정기관 이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분야별 위원 구성현황

계 \ 경력	음부즈맨	대학교수	사회단체	고위공무원	변호사
5	1	1	1	1	1

위원 현황 및 주요경력



위원장 차태환

- 現 전국지방음부즈맨협의회 회장
- 前 서울시 구로구 음부즈맨
- 前 국민권익위원회 도시수자원민원과장



위원 임용균

- 前 울산시 도시개발과/담당
- 前 북구청 건설도시국/국장



위원 김승호

- 前 울산대/겸임교수
- 前 고려아연/감사팀 외
- 前 LG금속/관리팀



위원 오영은

- 前 (재)울산발전연구원/평생교육 관련 업무
- 前 울산시민연대/사무국장



위원 권준우

- 現 변호사
-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4. 위원회 직무권한 및 기능

1. 직무권한/관할

「울산광역시시민신문고위원회」의 직무권한은 시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위원회가 발의한 사안의 조사 및 감사, 시장 또는 시의회에서 발의한 사안의 조사 및 감사, 청렴계약에 관한 감시·평가 및 청렴계약 부조리 사항에 대한 감사 및 조사 등이다.



조례 제4조(직무권한 및 관할)

제4조(직무권한 및 관할)

① 위원회의 직무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시민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
2.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위원회가 발의한 사안의 조사 및 감사
4. 시장 또는 시의회에서 발의한 사안의 조사 및 감사
5. 청렴계약에 관한 감시·평가 및 청렴계약 부조리 사항에 대한 감사 및 조사
6.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
7.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
8. 행정제도의 운영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및 권고
9. 감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내용공표
10. 위원회가 처리한 조사감사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11.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12.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13.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14.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속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된 사항

② 위원회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시 본청 및 소속기관
2. 구·군(시의 위임사무에 한정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4.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지방보조사업자

2. 주요기능

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

- 위원회는 '관할권 내에 있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으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을 민원(다수인민원 포함)으로 접수하여 조사한다. 조사 결과 이러한 행위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게 하도록 시정권고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등의 행위가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민원요구 사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 등을 권고한다.

② 불합리한 법령·제도·정책 등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민원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관할권 내 법령(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등) 및 제도나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법령과 제도·정책을 현실에 맞게 추진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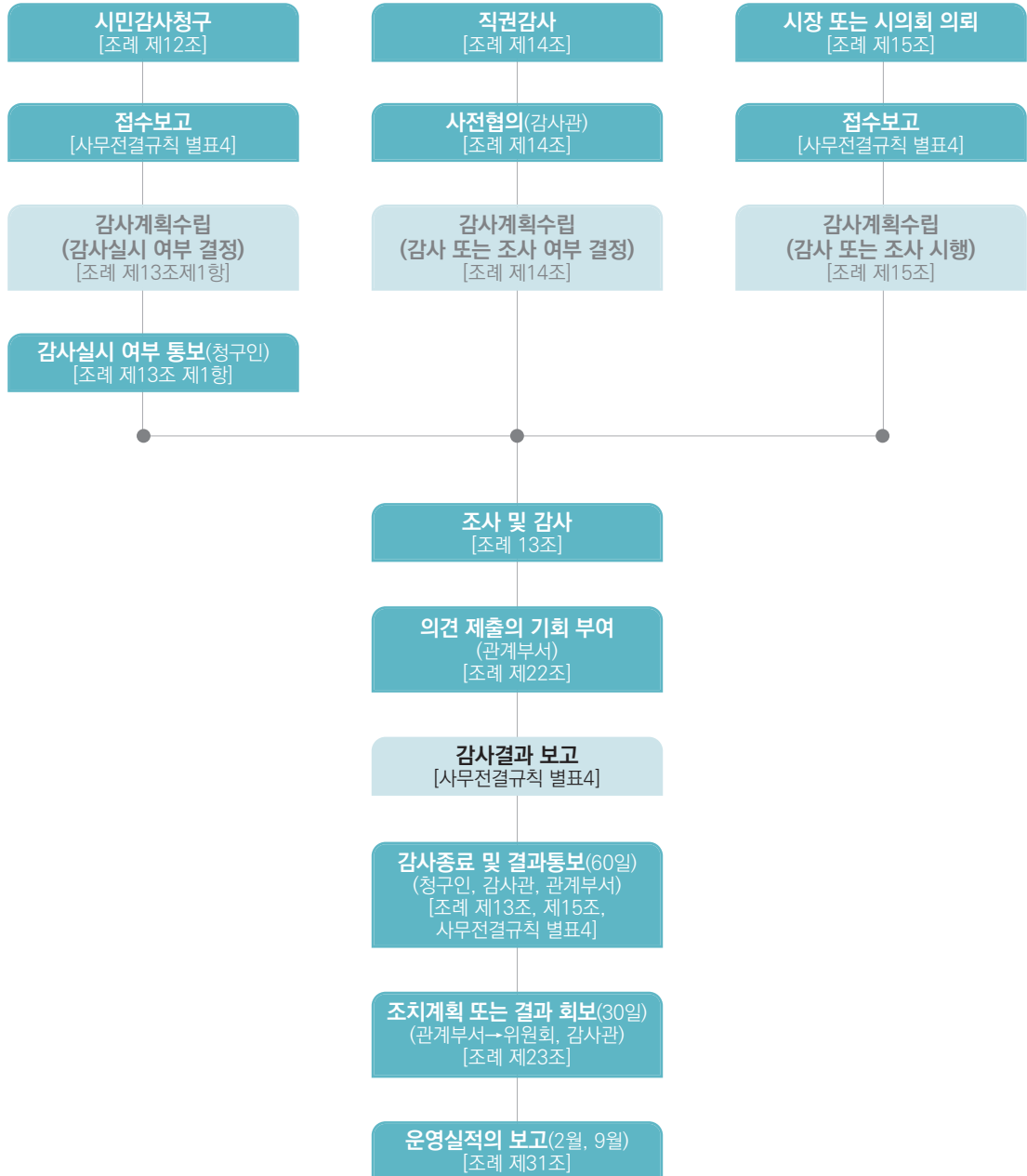
③ 시민의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 19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시민단체의 대표자에 의한 시민의 감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감사의 실시 여부를 통보한다.

※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시민의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조례 제12조) ② 직권에 의한 감사(조례 제14조) ③ 시장 또는 시의회 의뢰(조례제15조)에 의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민감사청구 등의 처리절차



④ 청렴계약 감시·평가

- 위원회에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으로서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에 대한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감시·평가한다.



조례 제20조~21조

제20조(청렴계약 감시·평가대상)

위원회가 감시·평가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으로서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에 대한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감시·평가한다.

1.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
2. 2억5천만원 이상의 용역
3. 5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4. 그 밖에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21조(자료제출 및 요구)

- ① 제20조의 감시·평가 대상에 대하여 실·본부·국장, 사업소장,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목록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1월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20조의 감시·평가대상인 공사, 용역,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울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장은 사전에 위원회에 심의자료와 일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청렴계약과 관련하여 감시·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 홍보·교육 및 교류·협력

-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 홈페이지 배너 개설 및 안내문 배부 등의 홍보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주요 고충민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 알리고 있다. 이와 함께 위원 및 조사관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처리 관련 워크숍 및 전문 교육과정에 참석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한 기법·사례 등을 습득·공유하고 있다.

3. 주요권한

① 민원 조사

- 위원회에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가 실시된다. 위원회에서는 정확한 민원조사를 위해 관련 부서에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조례 제18조

제18조(조사의 방법)

- ① 위원회는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 및 시 소속기관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시 및 시 소속기관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시 및 소속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장소·시설에 대한 실시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시정권고 및 권고(의견표명)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또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경우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이에 대한 취소·변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행위가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고(의견표명)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③ 직권감사

-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청렴계약에 대한 감시·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조례 제14조

제14조(직권에 의한 감사)

위원회는 시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청렴계약에 대한 감시·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조사결과 보고 및 공표 권한

- 위원회는 매년 2월, 9월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현황, 권고 및 의견을 표명한 내용, 관련 부서의 처리 결과 등에 대해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공표한다.

5. 고충민원 처리절차

1. 고충민원 신청 및 조사

① 고충민원 신청

- 민원인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울산광역시시민신문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중복으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시민신문고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조례 제16조

제16조(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 ① 민원인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중복으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③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가 고충민원의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신청인은 고충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이 원할 경우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한다.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한 민원체계에 따라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② 민원의 조사

-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위원회가 직접 조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관계 부서 및 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17조

제17조(고충민원의 조사·처리)

-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위원회가 직접 조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관계 부서 및 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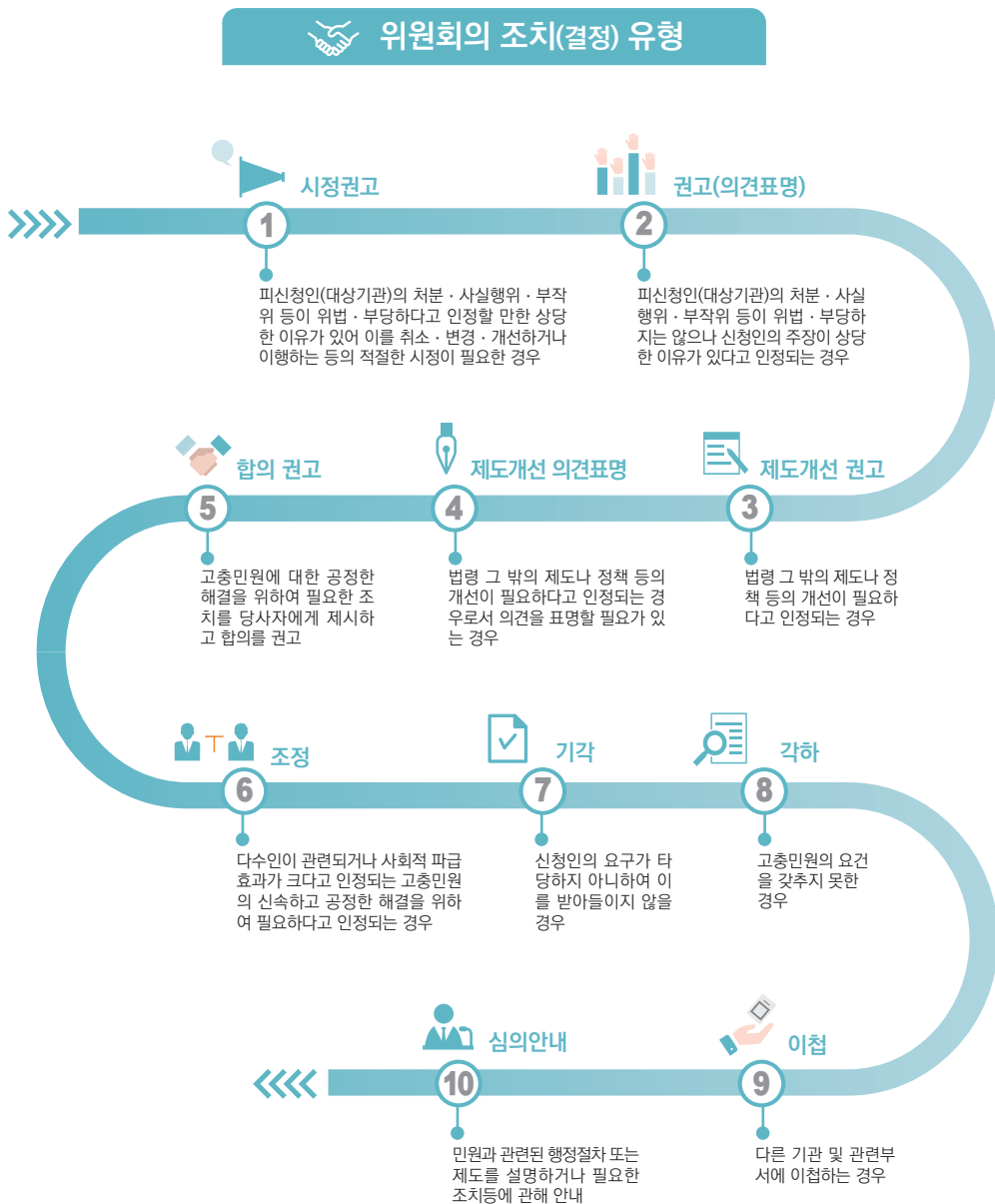
민원처리 예외 대상(민원의 각하)

- 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②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 ③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해당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④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⑤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⑥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⑦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⑧ 행정기관 등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

2. 심의·의결 / 조사결과와 통지

① 심의·의결

- 조사가 완료된 민원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의한다. 위원회 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함이 원칙이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회의의 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사결과 통지

- 위원회는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 관계기관·관계부서의 장 및 감사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사후관리

- 위원회는 권고 등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에 관계 서류의 제출,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확인 및 점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운영규정 제44조

제44조(이행실태의 확인·점검 등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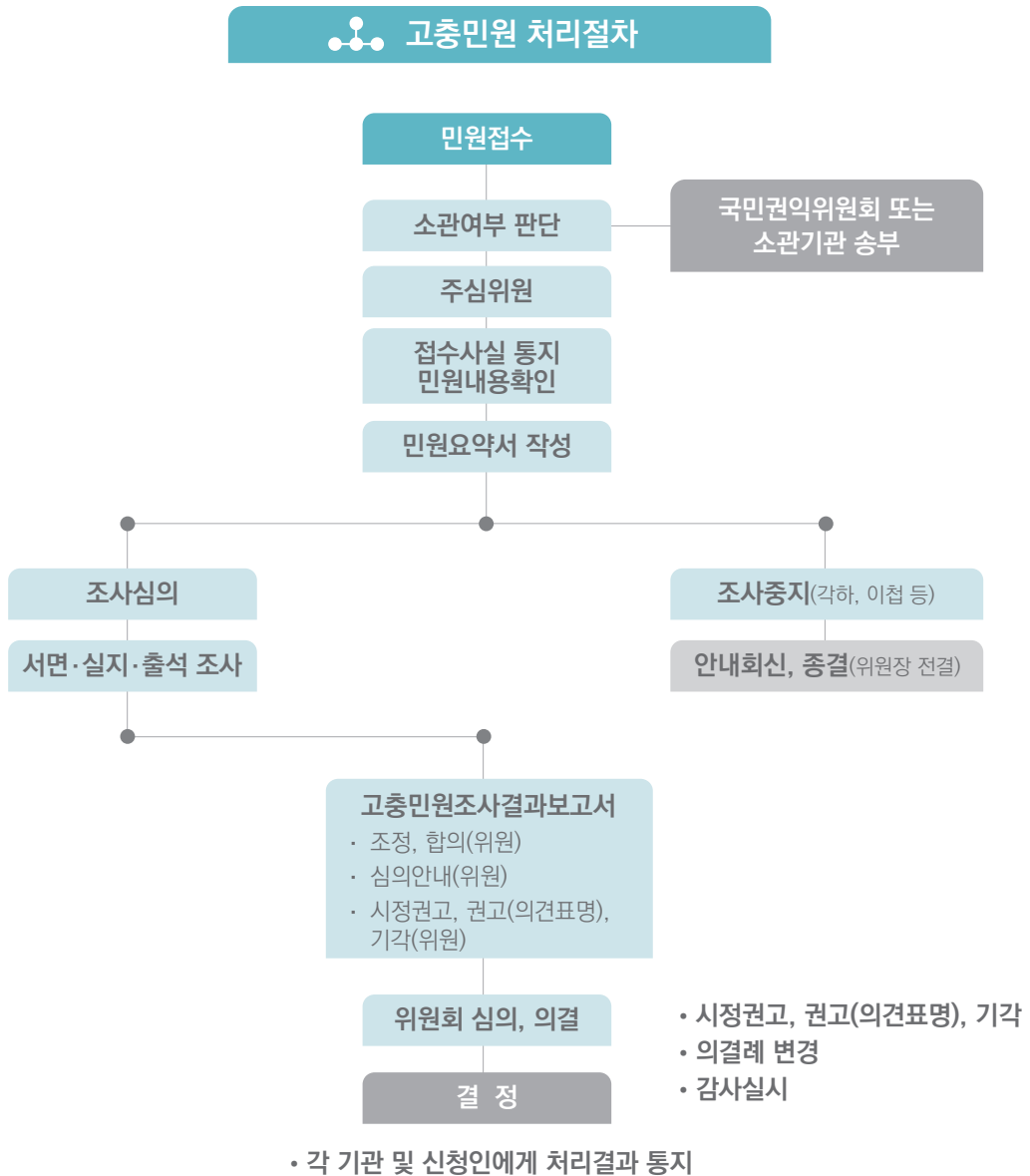
- ① 조사관은 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피신청인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그 내용을 사후관리카드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② 신문고 담당은 시정권고 또는 권고에 대한 사후관리카드 입력실태 및 피신청인의 처리결과를 시정권고 또는 권고일로부터 2년간 반기별로 확인·점검하고 위원회에 그 결과 및 사후관리 종결 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신문고 담당은 제2항에 따라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대상이 되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주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④ 신문고 담당은 시정권고 또는 권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민원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목록을 작성하여 사후관리를 수행한다.

4. 고충민원 처리 흐름도

① 처리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

② 처리절차



③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의 구분

■ 고충민원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고충민원 VS 일반민원

	고충민원	일반민원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고충민원의 정의) •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 (고충민원의 유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일반민원)
범위	• 일반민원에 대한 2차민원 →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 포함), 부작위 → 소극적 행정행위 →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 * 법령·제도·절차 등 질의 및 상담 * 제도개선 건의 ※ 밀줄 친 부분에서 개인의 권리·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 법정민원 :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호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질의 및 상담 * 제도개선 건의 ※ 밀줄 친 부분이 개인의 권리·이익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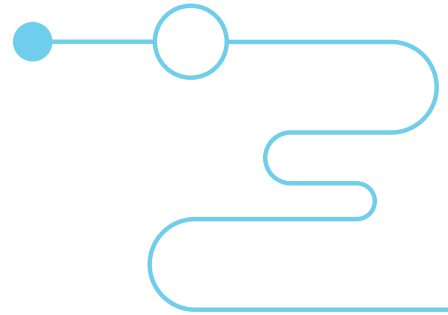
2019 시민신문고위원회

운영보고서



제3편

위원회 운영 성과



1. 시민 감동의 고충해결과 권익보호
2. 공공사업의 청렴계약 감시·평가 활동 전개
3. 명예민원상담관 운영
4. 금융민원상담관 운영
5.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운영
6. 금융복지클리닉 개최
7. 고충민원처리 역량 강화
8. 시민·사회단체 민의 반영
9. 제1회 시민신문고의 날 개최





1. 시민 감동의 고충해결과 권익보호

1.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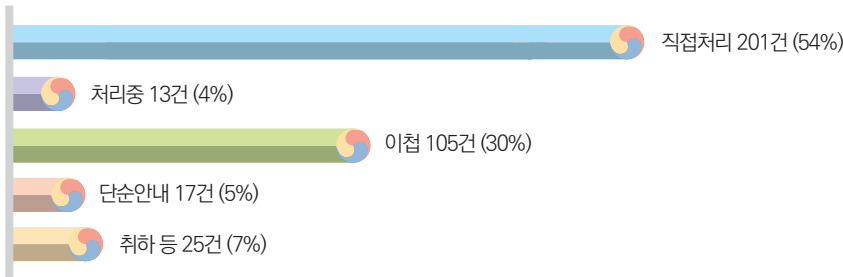
2019년 우리 위원회는 총 348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다.
이 중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직접조사 처리한 고충민원은 201건(57.8%)으로, 매월 평균 17건을 직접 조사하였으며, 이첩, 단순 문의 사항 등이 147건(42.2%)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19.12.31.기준, 단위: 건)

합계	직접처리			간접처리			
	소계	완료	처리중	소계	이첩	단순안내	취하 등
348	201	188	13	147	105	17	25



2. 고충민원 결정 유형별 현황

직접조사로 심의·의결한 188건의 고충민원을 위원회 의결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정권고 5건, 권고 7건, 제도개선 권고 1건, 합의·조정 19건, 조사중 해결 14건, 심의안내 106건, 기각 29건, 각하 7건 이었다.



고충민원 결정 유형별 현황(총괄)

(단위: 건)

합계	시정권고	권고	제도개선	조사중 해결	합의·조정	심의안내	기각·각하
188	5	7	1	14	19	106	36

3. 고충민원 인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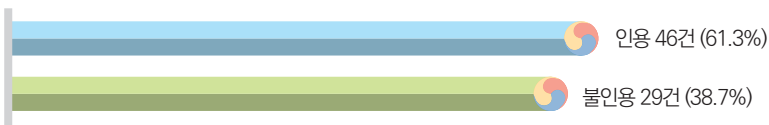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직접조사를 거쳐 심의·의결결과,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수용하여 결정한 인용건수는 46건(61.3%)이며, 기각된 불인용건수는 29건(38.7%)으로 나타났다.



고충민원 인용 현황

(단위: 건)

합 계		인 용		불 인 용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75	100	46	61.3	29	38.7



기각으로 결정된 사례를 제외한 시정권고, 권고(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 인용결정에 대해서는 피신청기관(부서)으로부터 최종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을 제출받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말 현재 부서에서 수용여부에 대한 수용률은 100%로 나타났다.



부서 조치 현황

(단위: 건)

구분	수용(a)		불수용 (b)	검토중**	비고
	수용	자체해결*			
46	27	19	-	-	* 자체해결 : 상호 중재 · 조정 · 합의 ** 검토중 : 화신 시기 미도래 등

※ 수용률 : $(a/a+b) \times 100$

4. 고충민원 창구별 접수현황 및 처리기간

직·간접처리한 고충민원 348건에 대한 접수 창구별 현황을 보면 방문 접수가 1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92건, 국민신문고를 통해 42건, 우편 등 44건을 접수하였다.

직접조사·처리한 고충민원 201건 중 처리가 완료된 188건에 대한 평균처리 기간은 35일이었으며, 최장기간은 93일, 최단기간은 9일만에 처리하였다.

합계	창구별 접수 현황(건)				처리기간(일)		
	방문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우편 등	평균	최장	최단
348	170	92	42	44	35	93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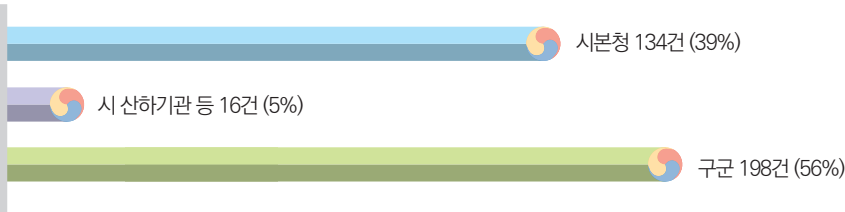
5. 피신청기관별 고충민원 현황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을 피신청기관별로 분석한 결과, 총 348건 중 5개 구·군이 1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 본청 관련 민원이 134건, 시 산하기관 등이 16건 순으로 파악되었다.

피신청기관별 고충민원 접수현황

(단위: 건)

시청		시 산하기관 등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34	38.5	16	4.6	33	9.5	47	13.5	8	2.3	61	17.5	49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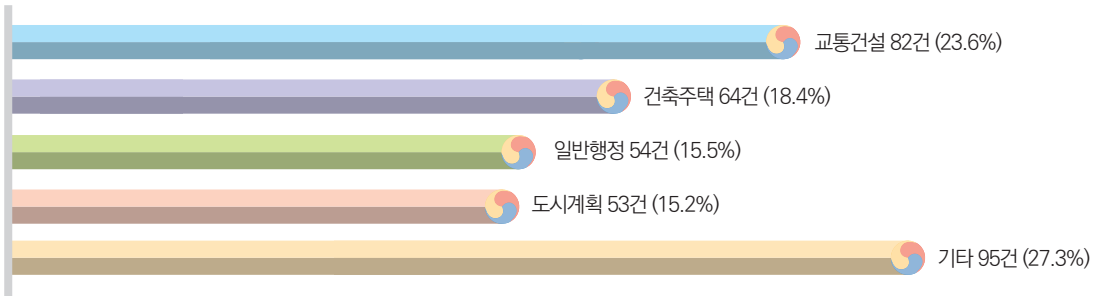
6. 분야별 민원접수 현황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을 분야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총 348건 중 교통건설 관련 민원이 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건축주택 64건, 일반행정 54건, 도시계획 53건, 환경녹지 31건 등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분야별 고충민원 접수현황

(단위 : 건)

합계		교통건설		건축주택		일반행정		도시계획		기타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348	100	82	23.6	64	18.4	54	15.5	53	15.2	95	27.3



2. 공공사업의 청렴계약 감시·평가 활동 전개

1. 활동대상

2019년 감사평가대상으로 공사 21건, 용역 10건, 물품구매 3건 등 총 34건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 10억 원 이상 공사, 2.5억 원 이상 용역, 5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 중 위원회에서 선정

(단위: 건)

	계	계	공 사	용 역	물품구매	비 고
심의 결과	계	34	21	10	3	
	본 청	15	8	7	-	
	사업소	11	6	2	3	
	출자·출연기관	4	3	1	-	
	구·군	4	4	-	-	

2. 활동실적

2019년 12월 현재, 공사 15건, 용역 10건, 물품구매 3건 등 28건에 대해 심의·의결을 완료하였으며, 6건은 정상 추진중이다.

(단위: 건)

	계	계	공 사	용 역	물품구매	비 고
심의 결과	계	34	21	10	3	
	시정권고	1	1	-	-	
	권고	21	11	9	1	
	특이사항 없음	6	3	1	2	
	정상추진	6	6	-	-	

3. 활동실적 분석

- 공공사업에 대한 종합적 감시·평가 활성화로 시정감시 기능 강화
 - 2019년에는 시 역점사업, 주요 시책사업 등 감시평가 대상을 확대하여 체계적 감시·평가 활동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공공사업 안정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사후 예방적 감시활동 추진
 - 발주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대해 계약이행, 적정성 여부 등 점검
 -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고 발주전 면밀한 검토 권고
 - 사업장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위험 요소 및 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 용역·물품 과업지시서 이행, 사용자재 및 수급관리의 적정여부 점검

4. 활동내역

연번	사 업 명	활 동 내 용		주심위원
1	옥동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감시·평가일: 2019.9.30.]	사업기간	- 2016 ~ 2019	김승호
		대상부서	- 남구 안전총괄과	
		감시·평가 활동결과	- 실시설계 시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 불필요한 설계변경 최소화를 시정권고 - 저류시설의 다양한 활용방안 및 저류수의 약취 등의 해결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시정권고	
		해당부서 조치결과	- 향후 사업 추진 시 반영 - 바닥 청소 및 수질개선편제 살포, 지속적인 수질 관리를 위하여 수질개선편제 및 식재비용을 당초 예산 반영	
2	2035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감시·평가일 : 2019.12.27.]	사업기간	- 2019 ~ 2020	임용균
		대상부서	- 도시계획과	
		감시·평가 활동결과	-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므로 사회적 증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계획 인구 목표와 인구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가용토지 자원 등에 대한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할 것을 권고	
		해당부서 조치결과	- 검토중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 [감시·평가일 : 2019.12.27.]	사업기간	- 2018 ~ 2020	임용균
		대상부서	- 도시계획과	
		감시·평가 활동결과	- 도시계획시설의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에 대해 관계 기관(부서)과 지속 협의하여 2020. 7. 이전 사업인정(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편입 토지 보상 등의 행정절차 이행 권고 - 과도한 경사 또는 절토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등으로 사실상 사업시행이 불가하거나 재정여건 상 보상 계획 또는 재원조달 계획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될 수 없는 시설은 실효 전 적극적으로 해제(또는 변경) 권고	
		해당부서 조치결과	- 검토중	

연번	사 업 명	활 동 내 용		주심위원
4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시범 사업 [감시·평가일 : 2019.12. 9.]	사업기간	- 2018 ~ 2020	임용균
		대상부서	- 환경생태과	
		감시·평가 활동결과	- 놀재로 가속 및 우회전 전용차로 확보 권고 - 놀재로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검토 권고 - 공사 전 주민 홍보와 공사기간 단축방안 검토 권고	
		해당부서 조치결과	- 검토 중	
5	용연하수처리구역 중계5펌프장 일원 차집관로 정비사업 [감시·평가일 : 2019. 5. 21.]	사업기간	- 2016 ~ 2019	임용균
		대상부서	- 하수관리과	
		감시·평가 활동결과	- 우수기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천내 유수지장물 철거 대책 마련 권고 - 긴급입찰을 지양할 것을 권고 - 실시설계시 설계기준을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자체 교육 실시할 것을 권고	
		해당부서 조치결과	- 우수기전 공사장 주위 정비 완료 - 사전에 공사시행계획 수립 철저 및 교육 실시 - 실시설계 시 건설표준품셈 변경 여부 확인 및 교육 실시	
6	화봉제1공원 공영주차장조성사업 [감시·평가일 : 2019. 12. 2.]	사업기간	- 2018 ~ 2020	임용균
		대상부서	- 교통기획과	
		감시·평가 활동결과	- 공사비 증액 등의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용역 관리 감독 철저 권고 - 풋살경기장 소음발생 최소화 위한 수목식재 계획 변경 검토 권고	
		해당부서 조치결과	- 실시설계용역감독 철저히 공사비 증액 발생하 지 않도록 조치 - 수목 추가 식재	
7	회야계통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감시·평가일 : 2019.12. 23.]	사업기간	- 2018 ~ 2022	임용균
		대상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감시·평가 활동결과	- 지하매설물과 주요 구조(시설)물의 기초 자료, 교통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송수관로 노선 계획에 반영 권고 - 경제적 설계 및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발주 시 토지조사 비용 반영 권고	
		해당부서 조치결과	- 검토 중	

연번	사업명	활동내용		주심위원
8	천상계통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감시·평가일: 2019.12. 23.]	사업기간	- 2018 ~ 2022	임용균
		대상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감시·평가 활동결과	- 지하매설물과 주요 구조(시설)물의 기초 자료, 교통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송수관로 노선 계획에 반영 권고 - 경제적 설계 및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발주 시 토지조사 비용 반영 권고	
		해당부서 조치결과	- 검토 중	
9	옥동~농소 1도로 개설사업 [감시·평가일 : 2019.11.11.]	사업기간	- 2009 ~ 2021	임용균
		대상부서	- 종합건설본부	
		감시·평가 활동결과	- 사곡교차로 교통개선 사업시행 권고 - 시점부 사토처리를 위하여 청량~옥동 간 국도 건설공사의 발주처와 지속적 협의할 것을 권고 - 오산대교 하부 인도교와 명정천 하류 만회정과 연결하는 연결로 설치 검토 권고 - 비탈면 유실 구간에 대한 보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권고	
		해당부서 조치결과	- 교통개선공사 추진 (2019. 11. ~ 2020.1.)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결과 2019. 12. 사토 반출 예정 - 연결로 설치에 대한 검토 보고에 따라 추진 예정 - 비탈면 보강 방안 검토 중	
10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공사 [감시·평가일 : 2019. 7. 15.]	사업기간	- 2014 ~ 2021	임용균
		대상부서	- 종합건설본부	
		감시·평가 활동결과	- 공사착공 전 교통소통대책 수립할 것을 권고 - 현장여건을 고려한 실시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우수기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천내 우수지장물 철거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해당부서 조치결과	- 도로점용공사 시행 시 착공 전 교통소통대책 수 립후 추진 - 실시설계 추진 시 관리감독 철저 - 집중호우 대비 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 수립	

연번	사 업 명	활 동 내 용		주심위원
11	울산미포국가산단 (석유화학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감시·평가일 : 2019.12.2.]	사업기간	- 2017 ~ 2021	김승호
		대상부서	- 환경생태과	
		감시·평가 활동결과	- 시공업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협조 요청할 것을 권고 - 현장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도록 관리·감독 할 것을 권고	
		해당부서 조치결과	- 검토 중	
12	울산슬러지 자원화시설 건립 사업 [감시·평가일 : 2019.12.27.]	사업기간	- 2016 ~ 2022	김승호
		대상부서	- 하수관리과	
		감시·평가 활동결과	- 악취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반입장의 밀폐방안 (감압, 이중문 설치 등) 및 악취제거 설비의 사양(용량 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것을 권고	
		해당부서 조치결과	- 검토 중	
13	방어진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감시·평가일 : 2019.7.15.]	사업기간	- 2017 ~ 2021	김승호
		대상부서	- 하수관리과	
		감시·평가 활동결과	- 향후 각종 용역 등을 시행할 경우 긴급공고를 행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용역시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용역시행 할 것을 권고 - 향후 설계변경 시에는 별개의 사업을 추가반영 하지 않도록 권고	
		해당부서 조치결과	- 담당 및 직원 교육실시	
14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1차) [감시·평가일 : 2019.12.23.]	사업기간	- 2016 ~ 2021	김승호
		대상부서	- 하수관리과	
		감시·평가 활동결과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현장의 위험성을 감소 시키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 -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 - 안전관리비의 사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철저히 확인할 것을 권고	
		해당부서 조치결과	- 검토 중	

연번	사 업 명	활 동 내 용		주심위원
15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부곡용연 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감시·평가일 : 2019.12.9.]	사업기간	- 2018 ~ 2023	김승호
		대상부서	- 울산도시공사	
		감시·평가 활동결과	-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개발계획 검토 시 공해를 저감할 수 있는 완충녹지의 설치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	
		해당부서 조치결과	- 검토 중	
16	시민과 함께 하는 태화강 백리대숲 조성 [감시·평가일 : 2019.12.27.]	사업기간	- 2019 ~ 2020	오영은
		대상부서	- 환경생태과	
		감시·평가 활동결과	- 하천 수목식재에 따른 하천유수 소통 지장여부 대책 수립 권고	
		해당부서 조치결과	- 검토 중	
17	덕하공영차고지 조성 공사 [감시·평가일 : 2019.12.27.]	사업기간	- 2017 ~ 2019	오영은
		대상부서	- 어르신복지과(종합건설본부)	
		감시·평가 활동결과	- 우수기 집중호우 시 토사 사면 보강 등을 통한 배수로의 통수단면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	
		해당부서 조치결과	- 검토 중	
18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감시·평가일 : 2019.12.23.]	사업기간	- 2017 ~ 2020	오영은
		대상부서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감시·평가 활동결과	- BF인증 최우수 등급 방안 검토, 분양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관계부서(기관) 협의체 구성 권고	
		해당부서 조치결과	- 검토 중	
19	울리~삼동간 (상작,하작구간) 도로개설 공사 [감시·평가일 : 2019.12.27.]	사업기간	- 2016 ~ 2020	오영은
		대상부서	- 종합건설본부	
		감시·평가 활동결과	- 주민 교통사고 예방 및 차량 통행을 위하여 준공 전 다기능 무인단속장비 설치, 유턴 및 좌회전 허용 등 교통안전시설물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이행 권고	
		해당부서 조치결과	- 검토 중	

연번	사 업 명	활 동 내 용		주심위원
20	일산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감시·평가일 : 2019.12.27.]	사업기간	- 2018 ~ 2020	오영은
		대상부서	- 동구 도시디자인과	
		감시·평가 활동결과	- 중1-186(B)호선과 소로2-215호선의 도로 접속 관련 교통영향평가 부서와 협의 권고 - 사업지구 내 배수계획 및 안전시설 설치 검토 권고	
		해당부서 조치결과	- 검토 중	
21	무기응집제 구입 [감시·평가일 : 2019.12.2.]	사업기간	- 2019	권준우
		대상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회야정수사업소	
		감시·평가 활동결과	- 황산알루미늄 Tank 내 잔여분을 처리(제거) 하고 향후 홍수 등으로 인한 고탁도나 조류 과다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무기응집제 PACS(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의 Tank로 활용권고	
		해당부서 조치결과	- 검토 중	
22	태화강(석남사~상북교) 생태하천 조성사업 실시 설계 용역 [감시·평가일 : 2019.12.27.]	사업기간	- 2017 ~ 2020	김승호
		대상부서	- 건설도로과	
		감시·평가 활동결과	- 국토교통부의 하천기본계획 수립 이후 사업 재추진 시 활용 가능한 본 용역 성과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	
		해당부서 조치결과	- 검토 중	
23	제2시립노인복지관 건립 공사 [감시·평가일 : 2019.12.19.]	사업기간	- 2017 ~ 2019	오영은
		대상부서	- 어르신복지과(종합건설본부)	
		감시·평가 활동결과	- LH공사가 부지정지 한 서측 사면구간이 최종 준공도면과 상이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 - 특이사항 없음	
		해당부서 조치결과	- 해당사항 없음	

연번	사업명	활동내용		주심위원
24	울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감시·평가일 : 2019.12.26.]	사업기간	- 2011 ~ 2020	오영은
		대상부서	- 울산도시공사	
		감시·평가 활동결과	- 2018년도 권고사항 이행 확인 - 사업구간 외 상하수도 매설 공사 추진사항 확인 - 특이사항 없음	
		해당부서 조치결과	- 해당사항 없음	
25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감시·평가일 : 2019.12.26.]	사업기간	- 2017 ~ 2021	권준우
		대상부서	- 중구 안전총괄과	
		감시·평가 활동결과	-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소송으로 인한 공사 미전개 - 특이사항 없음	
		해당부서 조치결과	- 해당사항 없음	
26	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감시·평가일 : 2019.12.26.]	사업기간	- 2018 ~ 2021	권준우
		대상부서	- 중구 안전총괄과	
		감시·평가 활동결과	- 공사착공과 동시에 소송으로 인한 공사중지로 공사 미전개 - 특이사항 없음	
		해당부서 조치결과	- 해당사항 없음	
27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물품) [감시·평가일 : 2019.11.27.]	사업기간	- 2019	권준우
		대상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감시·평가 활동결과	-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10년이 경과한 노후 측정장비 교체(조달청 구매) - 특이사항 없음	
		해당부서 조치결과	- 해당사항 없음	
28	가성소다 구입 [감시·평가일 : 2019.12.2.]	사업기간	- 2019	권준우
		대상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회야정수사업소	
		감시·평가 활동결과	- 특이사항 없음	
		해당부서 조치결과	- 해당사항 없음	

연번	사 업 명	활 동 내 용		주심위원
29	중.남구 노후간선관로 정비공사	사업기간	- 2017 ~ 2021	김승호
		대상부서	- 하수관리과	
		감시·평가 활동결과	- 추진 중	
30	울산시립미술관 건립	사업기간	- 2011 ~ 2021	김승호
		대상부서	- 문화예술과	
		현장점검 결 과	- 추진 중	
31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	사업기간	- 2018 ~ 2021	오영은
		대상부서	- 종합건설본부	
		현장점검 결 과	- 추진 중	
32	GW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기간	- 2017 ~ 2021	오영은
		대상부서	- 종합건설본부	
		현장점검 결 과	- 추진 중	
33	울동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사업기간	- 2015 ~ 2022	권준우
		대상부서	- 울산도시공사	
		현장점검 결 과	- 추진 중	
34	제2실내종합체육관건립	사업기간	- 2019 ~ 2021	권준우
		대상부서	- 종합건설본부	
		현장점검 결 과	- 추진 중	

3. 명예민원상담관 운영

1. 도입배경

시민신문고를 방문하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에 대해 공직의 오랜 민원 해결 경험을 가진 퇴직공무원을 활용하여 단순민원 안내부터 고충민원의 전문적 상담까지 민원인의 각양각색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안내하기 위해 명예민원상담관을 운영하고 있다.

2. 운영

2019. 5. 28. 울산광역시장이 행정 이론과 실무 경험이 많은 관리자급 퇴직 공무원 2명을 명예민원상담관으로 위촉하였으며, 2명이 격주제로 시민신문고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임기는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3. 역할

명예민원상담관은 민원담당경력을 바탕으로 고충민원뿐만 아니라 일상민원에 대해 안내 및 상담을 수행하여 민원인에 대한 심리적 안정 및 치유를 병행하여 수행함으로써 민원인으로 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시민의 반행정 정서를 완화하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명예민원상담관 위촉('19. 5. 28.)]



[민원인 상담]

4. 금융민원상담관 운영

1. 운영배경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간의 분쟁조정,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분야와 관련된 피해 및 불만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문상담이 되고 있지 못하였다. 이러한 금융민원 상담을 위해서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는 최고의 금융전문가를 위촉하여 일반시민, 기업과 밀접한 금융민원을 직접 상담.처리하고 있다.

2. 운영

- 시 기 : 2019. 4. 18. ~ 2020. 2. 19. ※ 금융협력관 파견 기간
- 장 소 : 시민신문고위원회 상담실(시의회 1층)
- 근무형태 : 매주 1회(목요일) 상담실에서 1명 상시근무, 본관 협력관실사무실에서 수시 전화상담·처리
- 상담관 현황 : 1명(금융감독원 소속 신규종 금융협력관)

3. 처리현황

(19. 4. 18~12. 31.)

구분(계)	은행 대출	보험	대부업	금융기타	비고
22	10	2	1	9	

- * 대 출 : 대출 거부, 분양대금 중도금 대출, 높은 대출금리로 인한 어려움 호소 등
- * 보 험 : 정신지체장애인(3급)의 상해, 암보험 가입 거부
- * 대부업 : 대부업 자금 차입 관련 문의
- * 기 타 : 점포 부도로 인한 부가세 조기환급 요청, 상조회사 공제금 지급 관련 문의



[금융민원상담실]



[금융민원 상담]

5.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운영

1. 목적

풀뿌리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 및 제도개선 요구사항 수렴 등 시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며, 고충민원 뿐만 아니라 실생활의 생활민원 등 현장중심의 민원해결로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시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2. 운영

2019년도에는 북구에서의 제1회 찾아가는 시민신문고를 시작으로 매 분기별 순회.운영하여 총 4회 실시하였으며, 개최결과 91건의 민원을 상담하여 65건에 대해 현장해결 하였으며, 26건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하였다.

- 2019년 제1회 찾아가는 신문고 운영: '19. 3. 26. 북구청 대회의실
- 2019년 제2회 찾아가는 신문고 운영: '19. 6. 25. 남구청 대강당
- 2019년 제3회 찾아가는 신문고 운영: '19. 9. 25. 중구청 컨벤션
- 2019년 제4회 찾아가는 신문고 운영: '19. 12. 12. 언양읍행정복지센터

3. 고충민원 처리현황 : 26건(북구 7, 남구 5, 중구 4, 울주군 10)

(단위 : 건)

구분	조정	심의안내	조사중해결	이첩	기각·각하	조사중
합계 (26)	2	4	2	9	3	6



[북구 ('19. 3. 26.)]



[남구 ('19. 6. 25.)]

6. 금융복지클리닉 개최

1. 추진배경

조선경기 악화, 실직여파, 금융기관 연체를 증가 등 서민의 경제사정 악화로 신용불량 및 하락으로 인한 금융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책지원 우선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에서 소상공인, 서민 등 금융 약자에 대한 금융민원 해결 뿐만 아니라 대출상담, 신용회복, 금융사기예방 등 맞춤형 금융정보 제공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2. 개최결과

2019. 7. 11. 개최된 금융복지클리닉에는 시민신문고위원회를 비롯하여 7개 기관 32명이 참여하여, 505명 방문인원에 대해 상담·대출(350명)과 교육(155명)을 실시하였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상담 민원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포싱 등 금융사기 예방교육과 금융민원 상담을 위한 금융사랑방 버스를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다.

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에서는 보증상담, 창업교육 등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개인회생, 채무종합상담 등을 진행하여 금융민원 상담을 윈스톱으로 제공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였다.

특히 BNK경남은행에서는 저신용자를 포함한 소상공인 대상 1천만원 한도 무담보저리 대출을 실시하여 148개 소상공인에게 14억 8천만원 대출을 지원하여 서민경제 활력을 제고하였다.



[금융복지클리닉 ('19. 7. 11.)]

7. 고충민원처리 역량 강화

1. 목적

행정수요 다변화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고충민원 최적의 해결책 모색은 위원과 조사관의 개별적인 역량에 크게 좌우되므로 위원과 조사관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일선공무원 간의 상호 정보 교류와 소통을 위한 역량강화 기회를 마련하였다.

2. 결과

2019. 1. 25.~1. 26.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과 조사관의 업무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2019. 6. 13.~6. 14. 건축분야 담당공무원과 업무연찬회를 실시하였다.

2019. 1. 25.~1. 26. 자체워크숍에서는 2019년 상반기 인사에 따른 신규임용 직원과 조사관.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민원 조사와 심의·의결과 관련된 조사보고서 및 의결서 작성요령 등 위원장 및 경험이 풍부한 위원의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특강 및 정보 공유 시간이 되었다.

2019. 6. 13.~6. 14. 건축분야 고충민원 권익구제 토론회에서는 건축분야 고충민원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원활한 해결방안 모색과 건축직원과 위원회와의 유기적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신문고처리 역량강화 워크숍 ('19. 1. 25.)]



[건축직 공무원 세미나 ('19. 6. 13.)]

8. 시민·사회단체 민의 반영

1. 행정제도 개선 시민공모전 개최

시민 불편야기 및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불필요한 제도·행태를 선제적으로 발굴(공모)·개선함으로써 시민이 감동하는 시정을 전개하기 위하여 행정제도 개선 제안 시민공모전을 개최하였다.

- 공모기간 : 2018. 12. 1 ~ 2019. 7. 31.(8개월)
- 접수/심사/채택 : 31건 접수 / 9건 심사 / 2건 채택
 - ▶ 채택 안건(2) : 버스승강장 벨 설치(우수), 울산일자리 종합센터 건립(장려)

2.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협력 간담회 개최

시민접점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등과 간담회를 통하여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시민의 고충해결과 권익향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매 분기별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행정제도개선 포스터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연번	시민단체명	참석
1	울산YWCA	사무총장
2	울산YMCA	사무총장
3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4	흥사단 울산지부	본부장
5	울산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
6	울산시민연대	소장
7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8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상임대표
9	(사)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10	울산여성의전화	대표

9. 제1회 시민신문고의 날 개최

1. 행사 개최

2019. 9. 10. 의사당 1층 시민홀에서 울산광역시, 시의회 의원, 시민, 시민사회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신문고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행사와 ‘제1회 시민신문고의 날’을 개최 하였다.

2. 주요 내용

이번 행사에서는 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운영성과와 활동사항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토의하였으며, 또한 우리 위원회가 출범한 9월 10일을 기억하고 울산시가 신문고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도시임을 대내외 알리기 위해 ‘제1회 시민신문고의 날’을 선포하였다. 아울러 행정제도 개선 시민 공모전 우수제안자와 유공공무원 및 유공부서에 대한 시상 등 시민과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3. 행사 의의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우리시 최초로 도입된 합의제 행정기관이자 지방옴부즈만 기구로서 위원의 독립성·전문성·직무 전념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고충해결과 권익보호는 물론 시정의 공정성·투명성 감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시민과 직접 소통·공감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소통과 협치의 기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제1회 시민신문고의 날 기념행사 : '19.9.10.]



동북아 오일 가스허브

원전해제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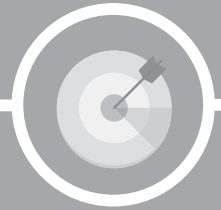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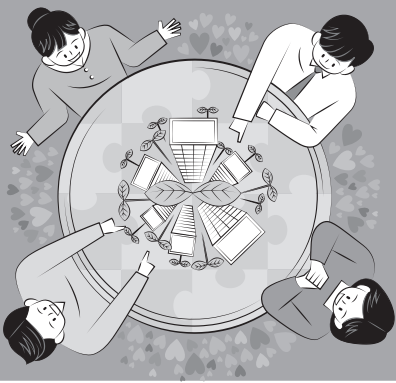
백리대술 품은 태화강 국가정원

울산 첫 국립병원

외곽순환도로와 도시철도 트램

수소경제 메카도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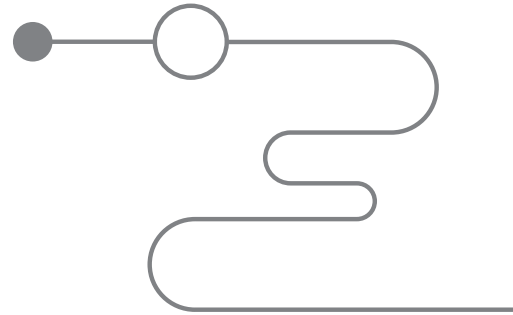
2019 시민신문고위원회

운영보고서



제4편

주요 처리 사례



1. 고충민원 처리현황
2. 공공사업의 청렴계약 감시 · 평가 활동 결과



1. 고충민원 처리현황 (‘19. 1.~12.)

시정권고

연번	내 용	신청인	관계기관	주심위원
1	편입토지 매수보상 및 건축허가 요건 완화	○○○	중구 (건축과)	임용균
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및 일반건축물 전환	○○○	울주군 (농업정책과)	김승호
3	자연환경해설사 적정운영 등	○○○	울산광역시 (환경생태과)	김승호
4	농업생산기반시설 편입토지 보상	○○○	북구 (농수산과)	권준우
5	개발행위허가 사후 관리	○○○	울주군 (도시과)	임용균

권 고

연번	내 용	신청인	관계기관	주심위원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지	○○○	울산광역시 (산업입지과)	임용균
2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해제)	○○○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임용균
3	폐천부지 교환 등	○○○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	임용균
4	특별교통수단 차등요금제 폐지(제도개선)	○○○	울산광역시 (교통기획과)	오영은
5	보조금 부적정 지급 조사 및 회원자격 완화	○○○	울산광역시 (어르신복지과)	김승호
6	경관 조례 폐지 등	○○○	울주군 (시설지원과)	임용균
7	방어진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해제)	○○○	울산광역시 (녹지지원과)	임용균

합의 / 조정

연번	내 용	신청인	관계기관	주심위원
1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 보상	○○○	남구 (환경관리과)	오영은
2	아파트 사용승인 관련 입주민 중재 요청	○○○	중구 (건축과)	김승호
3	장검터널 차량통행 제한 요청 등	○○○	남구 (건설과)	김승호
4	삼호3교 일원 폭우 시, 침수예방 대책 강구	○○○	남구 (건설과)	김승호
5	농지 내 석괴 정리	○○○	북구 (건설과)	김승호
6	행정재산 도로점용 허가 요청	○○○	남구 (건설과)	김승호
7	축사 건축허가	○○○	울주군 (도시과)	김승호
8	응급환자이송업 운영	○○○	울산광역시 (식의약안전과)	김승호
9	야간 식품접객업소 영업 소음 피해	○○○	남구 (환경관리과)	김승호
10	북구 어물동 ○○○○번지 농로 개설 요청	○○○	북구 (농수산과)	김승호

조사중 해결

연번	내 용	신청인	관계기관	주심위원
1	공유재산의 수익계약 매각	○○○	중구 (회계과)	임용균
2	상수도 급수공사 요청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임용균
3	오수받이 이설	○○○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임용균
4	공공하수도 누수에 따른 지하상가 피해 구제	○○○	남구 (건설과)	오영은
5	건축법 위반사항 행정처분 부당	○○○	남구 (건축허가과)	임용균

기 각

연번	내 용	신청인	관계기관	주심위원
1	양돈업허가(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양돈보상	○○○	울주군 (축수산과)	오영은
2	과오납 수도 요금 환급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오영은
3	누락된 보상청구(상개~매암간 혼잡도로공사)	○○○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임용균
4	북구 국민체육센터 진입 우회도로 개설	○○○	북구 (문화체육과)	김승호
5	농로 확장 요청	○○○	울주군 (농업정책과)	임용균
6	건축물 사용승인 부적정	○○○	중구 (건축과)	권준우
7	장애인보호작업장 채용 탈락	○○○	남구 (노인장애인과)	오영은
8	용도폐지 요청	○○○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김승호
9	오수중계펌프장 설치 부지 수용 취소	○○○	울주군 (지역경제과)	권준우
10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	울주군 (산림공원과)	김승호

각 하

연번	내 용	신청인	관계기관	주심위원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 수리 취소	○○○	울주군 (건축과)	오영은
2	지역주택조합 토지매매 계약 채무불이행	○○○	사인간	김승호
3	사유지 내 수도계량기 등 이설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임용균
4	도시가스 인입	○○○	사인간	김승호

시 / 정 / 권 / 고

1

편입토지 매수보상 및 건축허가 요건 완화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19-고-0020(2019. 1. 15.) / 2019. 2. 18.
- 신청인/피신청인 : ○○○(부산시 ○○○) / 중구(건축과)
- 결정결과 : 시정권고(주심위원 : 임용균)

① 민원취지

신청인 소유의 울산광역시 중구 ○○동 산161-2 임야 839㎡(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일부를 이 민원 저수지에 편입하였으니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또는 매수보상할 것과, 아울러 같은 동 산161-23 임야 7,427㎡ 및 같은 동 1508-28 잡종지 17㎡)에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건축을 하지 못하였으니, 이를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

② 사실관계

피신청인은 1974년 이 민원 저수지를 축조한 이후 1979년 제방보수공사를 거쳐 1991. 11. 18. ~ 1993. 12. 4. 기간 동안 3회 용수로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음.

신청인은 2005. 1. 13.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신청인은 ○○생태공원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 민원 토지 중 이 민원 저수지에 편입된 부분에 보행 데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이후 2008. 1. 10. ○○○○센터 건립을 위하여 이 민원 토지 외 2필지가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을 결정하고 2008. 8. 20. 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였으나 2012. 9. 20.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이 폐지(변경)되면서 신청인은 2008. 9. 10. 이 민원 토지 외 2필지를 환매하였음.

이에 따라 신청인은 2015. 11. ~ 2018. 12. 기간 동안 8차례에 걸쳐 이 민원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보행 데크 등)의 철거와 이 민원 저수지의 매립을 통한 원상 복구, 이 민원 토지 외 2필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저수지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면서 지역 주민의 산책로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상복구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으로 신청인에게 양해를 구해왔고,

또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미충족을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보완)하였음.

이 민원 토지 외 2필지에 대해서는 1975. 2.부터 도시관리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고 2003. 6. 각각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 되었다. 이후 2008. 1.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시 체육시설로 결정하였으나 ○○체육시설의 위치 변경으로 2012. 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으로 체육시설이 폐지되어 다시 제1·2종 주거지역으로 환원(변경)되었음.

3 피신청인 의견

이 민원 저수지대장에 따르면, 1974년 이 민원 저수지 축조 이후 3차례에 걸쳐 이 민원 저수지 보수 공사 및 준설공사, 그리고 용수로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나, 항공사진을 확인 결과 2005. 1. 5.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민원 토지의 일부가 이 민원 저수지에 편입되어 있었으므로, 2008년 ○○생태공원 조성으로 인하여 이 민원 저수지에 수몰(편입)된 것은 아니며,

이 민원 토지 외 1필지가 2008. 1. 10.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에 포함되어 신청인에게 손실보상을 하였으나 2012. 9. 20.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의 폐지(변경)로 인하여 2013. 9. 신청인으로 하여금 환매하게 하였음. 「농어촌정비법」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 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보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이 민원 저수지의 유지관리 수준의 공사를 추진하였음. 한편, 이 민원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이므로 「농어촌정비법」제24조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되는 등 폐지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 이 민원 저수지에 편입되어 있는 이 민원 토지의 원상복구를 위한 이 민원 저수지의 매립은 받아들일 수 없음.

2007. 3. ~ 2008. 3. 기간 동안 ○○생태공원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 민원 토지의 일부(엄격히 말하면, 이 민원 저수지에 편입된 부분)에 시설물(보행 데크)을 설치하였으나, ○○생태공원 조성공사 당시의 현황사진과 준공내역서상의 공종을 살펴볼 때 토지의 지형 변화에 영향이 없고, 또한 신청인의 시설물(보행 데크 등) 철거요구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것으로 보여 신청인이 건축허가를 받을 때까지 지역주민이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인에게 협조 요청하였음.

이 민원 토지, 울산 중구 ○○동 산161-23 임야 7,427㎡ 및 같은 동 1508-28 잡종지 17㎡는 둘 이상이 합쳐지는 필지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축물이 나누어지는 전체 필지에 걸치거나 합필이 가능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음.

이 민원 토지는 지목상 임야이나 그 일부가 이 민원 저수지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에는 지목변경이 불가하여 대지면적을 변경하도록 2018. 5. 17. 및 2018. 7. 5. 2회에 걸쳐 보완요청을 하였음에도 보완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였음.

4 판 단

신청인은 이 민원 저수지를 매립하는 등 이 민원 저수지에 편입된 이 민원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원상복구하라고 주장하나, 이 민원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이므로 「농어촌정비법」 제24조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되는 등 폐지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 이 민원 저수지에 편입되어 있는 이 민원 토지의 원상복구를 위한 이 민원 저수지의 매립은 받아들일 수 없음. 다만, 이 민원 토지의 일부가 이 민원 저수지에 편입됨으로써 신청인은 사용수익의 제한을 받는 등 신청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저수지에 편입된 부분에 대한 현황측량 후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평가하여 매수보상하여야 할 것임.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외 2필지에 건축을 하고자 건축(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외 2필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산림기본통계상 울산광역시 중구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50퍼센트 미만인 토지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 민원 저수지에 편입(수몰)된 이 민원 토지 일부를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지목변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되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상 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역의 특성과 지형조건을 감안하여 자연과 조화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계획·결정되며, 특히 이 민원 토지와 같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는 하천·호소 주변지역으로 경관이 양호하여 중·고층주택이 입지할 경우 경관

훼손의 우려가 큰 지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는 기존 시가지 및 주변 시가지의 주택지로서 중층주택이 입지하여도 환경악화, 자연경관의 저해 및 풍치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지역을 고려하여 계획·결정함. 따라서 이 민원 토지 외 2필지의 경우도 위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제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결정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20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2(개발행위허가 기준) 1. 분야별 검토사항 가. 공통분야 (4)(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20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적용함으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 민원 토지 외 2필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의 일부에 대한 보상 및 건축허가 요건 완화 등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의결함.

부서 조치결과 ▶ 수용

○ 중구 건축과 : 11341(2019. 3. 20.) 고충민원 조치계획 제출

- 도시과 : 건축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기준 완화 결정
- 경제산업과 : 소유자 매매 의사 시 매입하여 공공용(저수지)으로 사용
- 건축과 :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여부 결정

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및 일반건축물 전환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19-고-0048(2019. 2. 12.) / 2019. 6. 11.
- 신청인/피신청인 : ○○○(울주군 ○○○)/울주군(농업정책과, 건축과)
- 결정결과 : 시정권고(주심위원 : 김승호)

1 민원취지

신청인 소유의 울주군 ○○면 ○○리 1043-1 전 1,144㎡ 중 384㎡, 같은 리 1044 답 2,434㎡ 중 47㎡ 및 같은 리 1045 전 569㎡ 중 109㎡ 지상(이하 '이 민원 토지들'이라 한다)에 2010. 4. 신청인이 가설 건축물(지상 2층, 107.38㎡, 이하 '이 민원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피신청인이 농지전용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으므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및 피신청인은 위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 이후부터 이 민원 가설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 요청

2 사실관계

2010. 4. 30.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들의 지상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첨부하여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같은 해 5. 18.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한 후 같은 해 7. 6.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였음.

2012. 2. 16. 이 민원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2013. 7. 8. 및 2015. 6. 1. 이 민원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을 제2차에 걸쳐 연장하였으며, 2018. 7. 신청인은 이 민원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를 방문하여 협의하였는데, 피신청인 농업정책과장은 이 민원 가설건축물이 일반건축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아야 하고, 또한 이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음.

3 피신청인 의견

이 민원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청에 따른 검토결과 이 민원 도시계획시설이 이미 해제되어 그 존치기간의 연장은 더 이상 불가하나, 다만 신청인이 일반건축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 현행 건축법 등에 적합할 경우에 일반건축물로의 전환이 가능함.

2010. 5. 18. 이 민원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 농업정책과(구 농산과)와 협의를 하였으며, “사업부지는 도시계획시설(대로2류) 결정을 위하여 이미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가 완료된 농지이므로 농지전용허가(협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농업정책과(구 농산과)로부터 받아 이 민원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였음.

2010년 이 민원 가설건축물 허가를 할 당시 건축법을 비롯한 다른 법령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도록 한 규정이 없었고 2017. 10. 19. 「건축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비로소 협의의 조항이 신설되었음. 다만 울주군 건축조례에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시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도시계획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하고 있을 뿐, 기간연장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하도록 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관련부서와의 협의 없이 존치기간이 연장되었으며, 한편 이 민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였음.

당초 이 민원 토지들이 이 민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신청인은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였으나, 울산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이 민원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었으므로 단독주택 용도의 농지전용허가(협의)가 필요하며,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으려면 「농지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4 판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5항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결정하면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012. 2. 16. 이 민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해제 결정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5항 등에 따라 고시된 것으로 보이지만, 피신청인의 주장(답변)에서 보듯이 피신청인 조차도 이 민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2013. 7. 8. 이 민원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을 제1차 연장 허가한 후 2015. 6. 1. 이 민원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을 제2차로 연장 허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비록 2012. 2. 16. 이

민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고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신청인으로서 이 민원 가설건축물에 대한 2차에 걸친 존치기간 연장허가로 인하여 이 민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여전히 해제되지 아니하였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된 2012. 2. 16. 이후부터 이 민원 가설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한다(즉, 위법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 하거나 또는 농지원상회복을 명하려 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임.

한편 신청인은 이 민원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전환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미 건축된 가설건축물이 일반건축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는데, 이 민원 가설건축물의 경우는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민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될 당시(2012. 2. 16.)의 「건축법」 등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될 당시의 건축법령 등에 따라 일반건축물로의 전환이 가능한지를 판단한 후 일반건축물로 전환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민원 토지들은 농지에 해당하고, 또한 이 민원 가설건축물은 이 민원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치되는 건축물이어서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가설건축물 허가가 가능하였으나, 일반건축물로 전환하려면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7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농지법」 제38조 및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므로,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할 것임.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가설건축물의 일반건축물 전환 및 건축물대장 등재 절차를 2012. 2. 16. 당시의 건축법에 따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함.

부서 조치결과 ▶ 수용

○ 울주군 농업정책과 : 19935(2019. 7. 26.) 조치계획 제출

- 당초 신청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대로2류)사업으로 결정되어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로 건축물 준공을 받았으나,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됨(2012. 2. 16.)에 따라 농지전용허가(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 건축허가 신청 부지(정원 포함)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협의)하고 잔여부지는 농지로 원상 복구 할 계획임
⇒ 건축허가 신청 시 농지전용허가(협의)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3

자연환경해설사 적정운영 등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19-고-0055(2019. 2. 18.) / 2019. 4. 1.
- 신청인/피신청인 : ○○○(북구 ○○○) / 울산광역시(환경생태과)
- 결정결과 : 시정권고(주심위원 : 김승호)

① 민원취지

울산광역시 생태관광해설사회(이하 ‘이 민원 해설사회’라 한다) 집행부는 신청인에게 정확한 사유와 기준 없이 징계를 주고 근무를 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 임원은 허위로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근무수당을 교부받고 있으니 조사 요청.

② 사실관계

이 민원 해설사회는 2010. 6. 15. 임의로 설립된 단체로 자연환경해설사 22명 등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은 이 민원 해설사회를 통하여 해설인력을 배치하여 울산방문객 자연환경안내, 울산생태관광센터 홍보를 하고 있음.

피신청인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 제4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자연환경해설사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연환경해설사 운영(근무자 배치 등)에 대하여 직접 계획하지 않고 이 민원 해설사회가 자체 계획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위 해설사는 근무 후 활동현황(대장)을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피신청인은 이를 근거로 수당을 지급하여 왔음.

2019. 2. 11. 이 민원 해설사회는 회칙을 제정한 후 위 회칙에 따라 신청인에게 징계(6개월 회원자격 정지)를 결정하고 근무를 배제하였음.

③ 피신청인 의견

이 민원 해설사회는 법적 단체가 아니어서 피신청인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향후 피신청인이 자연환경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직접 관리할 계획이며, 신청인의 주장대로 허위로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수당을 받았다면 이를 확인한 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음.

4 판 단

관계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자연환경해설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하여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중 략〉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민원 해설사회 임원이 허위로 근무일지를 작성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근무수당을 받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8. 10. 23. 활동현황(대장)에는 5명의 해설사가 13:00~17:00에 스탬프투어(오산-십리대숲) 근무를 하고, 17:00~19:00에 은빛역 새달빛기행(명춘태화강역새군락지) 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두 장소의 거리는 상당히 연속근무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연속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활동현황(대장)상 근무시간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또한, 연번에 따라 근무일자가 순차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무일 이후에 추가 작성된 대장도 발견되었다. 또한 2018. 7. 활동현황(대장)에는 7. 21. ~ 22. 바이오블리츠생태해설과 관련하여 추가 대장이 작성되었는데 이는 근무장소가 선바위공원으로 추가대장 작성 사유로 인정이 되나, 추가대장 말미에 7. 27. 태화강백로생태학교개막식 관련하여 근무기록이 작성된 것은 근무장소가 태화강 지방정원내로 추가대장 작성사유로 인정하기에는 부적절함.

근무 장소 및 내용에 따라서 추가 작성 사유가 인정될 만한 사항도 있으나, 그렇지 않고 근무 장소가 태화강지방정원내로 근무 후 활동현황(대장)을 바로 작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일 이후에 추가 작성된 활동현황(대장)이 2018년 한해만 30건 이상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2018년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되므로, 최근 3년간 활동현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피신청인은 2016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의 자연환경해설사 활동현황(대장)의 허위 작성 여부 등을 조사한 후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교부받은 자에 대해서는 교부받은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고 일정기간 활동을 정지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 민원 해설사회는 법적인 단체가 아닌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상호 정보공유 및 친목도모 등을 위해서 결성된 것으로 보이나, 신청인의 주장과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민원 해설사회가 해설사를 징계하는 등 근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일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위 근무일지 작성 및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교부받는 등 그 폐해가 극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폐해를 방지하고 해설인력 운영(해설사 배치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영규정(근무시간, 수당지급 기준, 해설사 배치, 수당의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 등)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지체 없이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할 것임.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해설사회 임원의 부정수당의 조사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 권고하기로 의결함.

부서 조치결과 ▶ 수용

○ 환경생태과 : 5986(2019. 4. 26.) 조치결과 제출

- 2016년~2019년 자연환경해설사 활동비지급 관련 전수조사결과 대장 당일 미작성 등의 사례는 있으나 대장 허위 작성으로 인한 부정수령은 없었음. 향후 동일사례 방지를 위해 고정 근무지별 대장을 비치하고 당일 대장 작성토록 근태사항 교육 실시하였음.
- 자연환경해설사 운영규정은 2019. 3. 5. 기 수리하여 시행중에 있음.

4

농업생산기반시설 편입토지 보상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19-고-0107(2019. 5. 7.) / 2019. 6. 3.
- 신청인/피신청인 : ○○○(부산시 ○○○) / 북구(농수산과)
- 결정결과 : 시정권고(주심위원 : 권준우)

① 민원취지

신청인 소유의 울산 북구 ○○동 743-5 구거 55㎡(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의 제방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로서 신청인은 같은 동 743-5 구거 8㎡(같은 동 743-2 구거 63㎡에서 분할) 및 같은 동 743-3 구거 354㎡에 대하여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하천편입토지 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4. 4. 22. 피신청인으로부터 협의보상을 받았으나, 이 민원 토지를 우수기 주변 농경지의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보상 요청.

② 사실관계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의 제정 이유는 하천의 국유화 원칙에 따라 국유화된 하천구역의 토지 등에 대하여 「하천법」의 개정과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보상한 바 있었으나, 해당 법률에 따른 보상청구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 토지의 소유자와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방부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종전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보상청구기간을 2013년까지 정하여 보상하도록 하는 한편, 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보상하고 하천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보상 토지에 대한 하천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종전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서 정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은 2009. 8. 19.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하천편입토지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동천(경북도 경계~태화강 합류점) 219필지 202,622㎡에 대한 '하천편입토지조서'를 공고(울산광역시 공고 제2009-853호, 2009. 9. 10.)하였음.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보상업무를 수탁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서

분할된 신청인 소유의 같은 동 745-3 구거 8㎡에 대하여 388,000원에 협의 보상하고 2014. 4. 22.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 보상 당시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별도의 매수청구를 하지 않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 및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3. 12. 31. 만료되었음.

이 민원 토지는 동천 제방과 농경지 사이에 위치하고 토사 측구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우수기 집중호우시 동천(지방하천) 제방에서 유입되는 우수와 인근 농경지의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이 민원 토지의 상·하류 측로 11필지 735㎡(국유지 2필지 23㎡ 포함)가 있어 토지 소유자들은 소유권만 가지고 있을 뿐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③ 피신청인 의견

이 민원 토지는 1975. 10. 25. ○○의 하천구역에 일부 편입된 같은 동 743-5 구거 8㎡와 함께 일필의 토지(면적 63㎡)를 이루었으나,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의 시행으로 국유화된 하천편입 토지의 보상청구권이 발생되어 울산광역시로부터 보상업무를 수탁한 피신청인이 이를 분할 한 후 같은 동 743-5 구 8㎡와 같은 동 743-3 구 354㎡에 대하여 2014. 4. 경 신청인에게 388,000원과 17,169,000원을 각각 협의보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보상 당시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별도의 매수청구를 하지 않았음.

신청인이 매수 요청한 이 민원 토지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서 정한 하천구역 및 제방에 포함되지 않아 협의 매수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3. 12. 31. 만료되어 협의 매수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

이 민원 토지는 주변 농경지 배수처리를 위한 토사 측구로 이용되고 있으나 같은 동 466-5 일원 농업용·용수가 설치되어 있어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개설 및 정비된 구간이 아니므로 보상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

④ 판 단

피신청인은 2009. 6. 26.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의 시행으로 국유화된 하천편입 토지의 보상청구권이 발생되어 울산광역시로부터 보상업무를 수탁 받아 이 민원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를 협의보상후

2014. 4. 22.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였고 협의 보상후 남은 이 민원 토지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서 정한 하천구역 및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대상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상 당시 신청인은 별도의 매수 청구(즉, 잔여지 매수청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3. 12. 31. 만료되어 협의 매수청구는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민원 토지는 ○○ 제방과 농경지 사이에 위치하고 토사 측구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우수기 집중호우시 ○○(지방하천) 제방에서 유입되는 우수와 인근 농경지의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에도 우수기 집중호우로 인한 주변 농경지의 원활한 배수처리와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을 위해서는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한 유사 토지내 배수로는 계속적으로 이용되어야 할 것임. 결국 이 민원 토지는 현재는 물론 향후에도 토사 측구라는 농업기반시설로 이용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 민원 토지의 소유자인 신청인은 이로써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조속히 매수보상한 후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임.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매수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의결함.

부서 조치결과 ▶ 수용

- **북구 주민소통실** : 21374(2019.11. 29.) 고충민원 자체 점검결과 제출
 - 2019. 9월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요청 하였으며, 토지소유자의 매입요청시 매수계획임

5

개발행위허가 사후 관리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19-고-0191(2019. 7. 8.) / 2019. 9. 30.
- 신청인/피신청인 : ○○○(남구 ○○○) / 울주군(도시과)
- 결정결과 : 시정권고(주심위원 : 임용균)

① 민원취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 ○○리 83-8 과수원 1,984㎡, 같은 리 83-13 과수원 5,296㎡ 및 같은 리 83-14 과수원 2,423㎡(이하 ‘이 민원 토지들’이라 한다)는 2017. 7. 13. 개간사업이 완료된 토지인데, 이 민원 토지들의 개간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비가 오면 이 민원 토지들로부터 유출된 토사가 마을 안길로 흘러들어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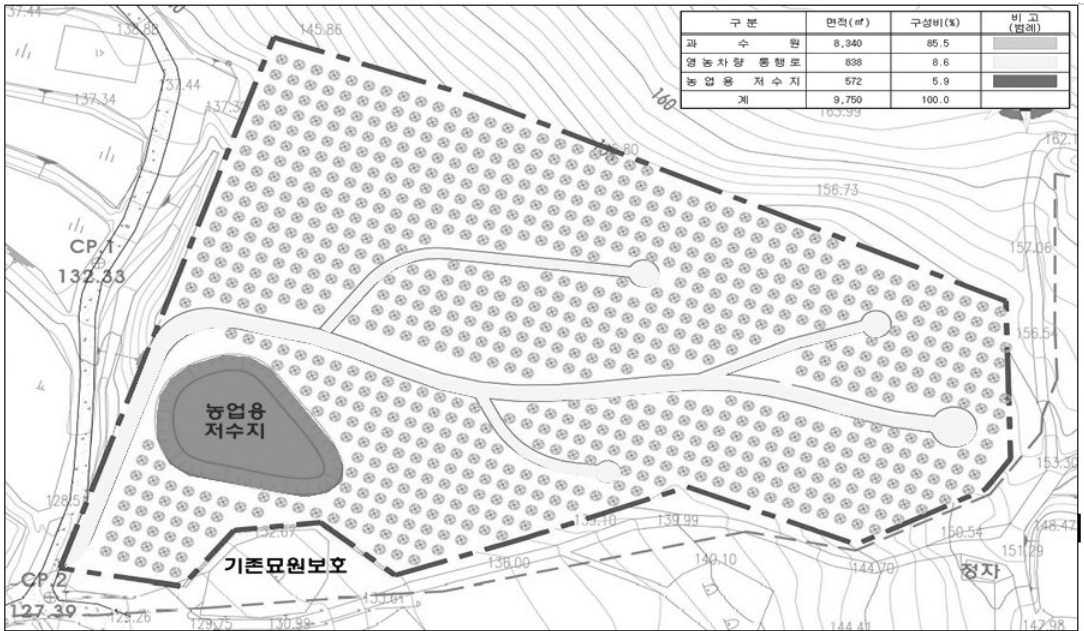
위 개간사업구역 밖에 있는 같은 리 83-9, 산 43-12의 일부가 불법으로 위 개간사업의 공사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으니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

② 사실관계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사업) 준공인가

이 민원 개간사업 시행자는 피신청인에게「농어촌정비법」제6조 제2항에 따라 2015. 1. 8. 개간대상지 선정을 신청한 후 2015. 2. 25. 이 민원 토지들로 분할되기 전의 울산 울주군 ○○읍 ○○리 산 43-1 임야 30,116㎡ 중 9,750㎡에 대한 개간대상지 선정(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음. 그 후 같은 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2015. 6. 1. 피신청인에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사전재해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관계 기관(부서) 협의를 거쳐 2015. 7. 30. 과수원(블루베리)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그림 3-1], [표 3-1]과 같이 승인하였음.

[그림 3-1. 개간사업 계획 승인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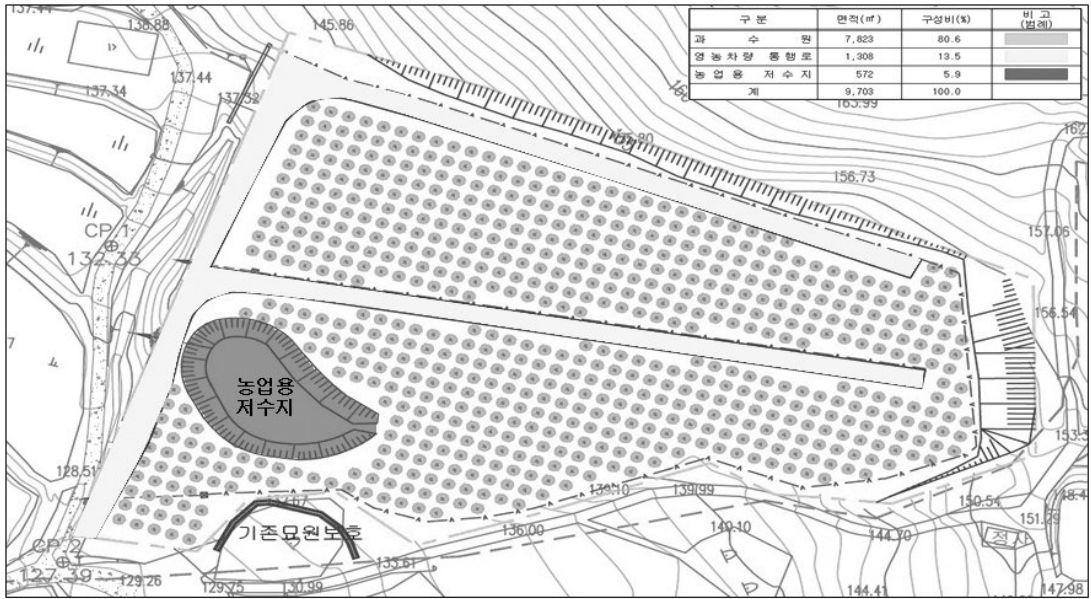


[표 3-1.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시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범 례
계	9,750	100.0	
과수원	8,340	85.5	
영농차량 통행로	838	8.6	
농업용 저수지	572	5.9	

이 민원 개간사업 시행자는 2016. 12. 29.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사업 기간의 변경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산림공원과, 도시과)은 산지전용의 변경 협의 없이 선 시공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청 및 당초 허가 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된 절토 부분 150m(높이 1.0~3.0m)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한 채 재해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 후 2017. 5. 22. 변경 승인하였고 2017. 7. 5. 이 민원 개간사업의 준공검사서를 이 민원 개간행위자에게 교부하는 한편, 2017. 7. 13.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17-143호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사업) 준공 인가 고시’를 하였음.

[그림 3-2. 개간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현황]



[표 3-2.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변경) 시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범 례
계	9,703	100.0	
과수원	7,823	80.6	
영농차량 통행로	1,308	13.5	
농업용 저수지	572	5.9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개간사업) 준공 인가 현황]

- 피허가자 : 농업회사법인 ○○(주) 대표이사 ○○○
- 위 치 : 울산 울주군 ○○읍 ○○리 83-8
- 면 적 : 9,703㎡
- 사업목적 : 농지확대 개발사업(개간)
- 사업내용 : 과수원(블루베리 660주) 조성
- 사업기간 : 2015. 5. ~ 2017. 6.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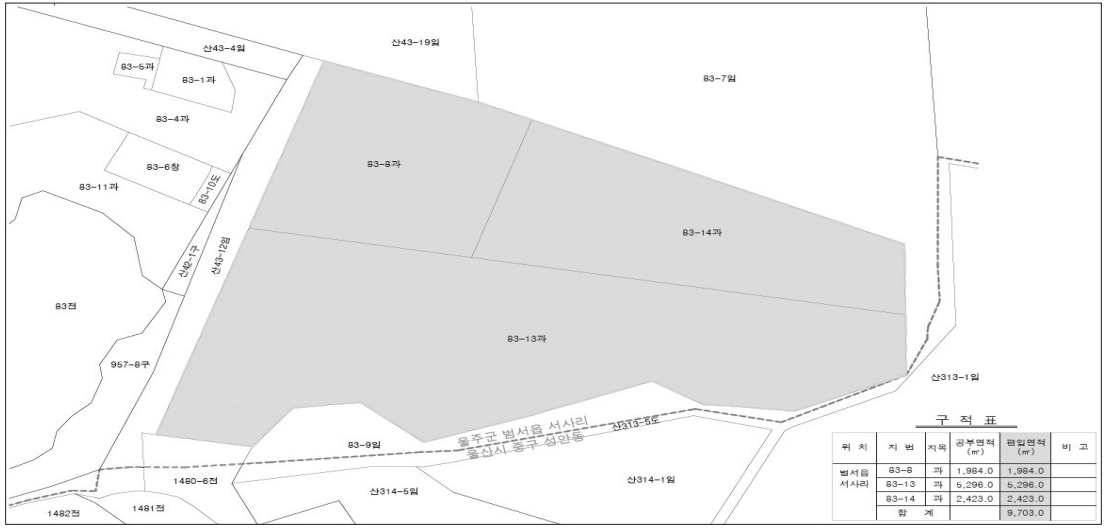
개간사업지에 대한 토지 분할

이 민원 개간사업이 완료된 후 2018. 6. 15. 및 2018. 10. 5. 개간사업 시행자와 농업회사법인 ○○(주) (대표이사 ○○○)는 이 민원 토지들을 매매할 목적으로 이 민원 토지들로 분할되기 전의 울산 울주 군 ○○읍 ○○리 83-8 과수원 9,703㎡에 대하여 택지 형식의 ‘가분할 도면’을 작성 후 피신청인(도시과)에게 토지 분할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따라 [그림 3-4와 같이 이 민원 토지들로의 분할을 허가하였다.

[그림 3-3. 개간사업 시행 계획 승인 당시 토지 현황]



[그림 3-4.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로 분할된 토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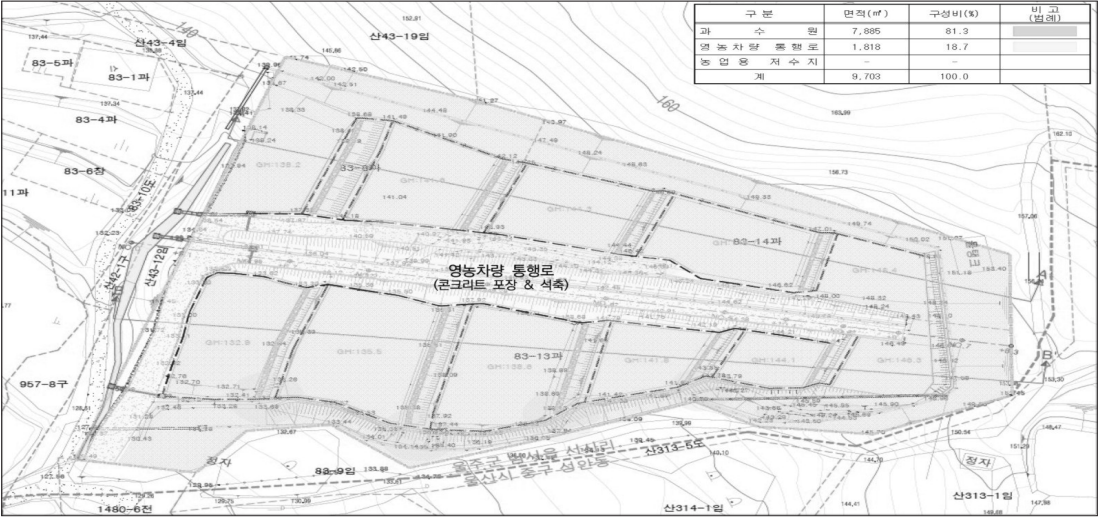
개간사업지 내 토사 유출로 인한 인근 농경지 및 마을 안길 토사 퇴적으로 인한 민원 발생
이 민원 개간사업이 준공된 후 비가 오면 이 민원 개간지에서 토사가 유출되어 측구(용·배수로)가 퇴적되고 이로 인하여 마을 안길로 토사가 유입됨에 따라 2018. 6.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되었음. 그리하여 피신청인(농업정책과)은 2019. 5. 29. 및 2019. 7. 2. 두 차례에 걸쳐 개간농지 성실영농 의무 이행 및 승인 조건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2018. 12. 11. 농업회사법인 ○○(주)(대표이사 ○○○)는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석축 설치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도시과)은 관계 기관(부서)과의 협의를 거쳐 2018. 12. 26. 석축설치허가를 하였음. 농업회사법인 ○○(주)(대표이사 ○○○)는 개간허가를 받을 당시의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영농 차량 통행로 법면부와 사업 구역 동측 법면부에 석축 찰쌓기를 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간허가 대상지 밖에 진입로를 허가 없이 사용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2019. 3. 28. 석축 찰쌓기 부분 110㎡와 개간허가 대상지 밖에 위치한 진입로 사용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할 것을 시정명령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19. 5. 2. 석축 찰쌓기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1,452,000원(납부 2019. 6. 10.)을 부과하였고, 재해예방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변경 승인 처리할 계획임을 안내하였음.

[개간사업 준공 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 현황]

- 피허가자 : 농업회사 법인 ○○(주) 대표 ○○○[울산 중구 ○○○ 17(○○○)]
- 위 치 : 울산 울주군 ○○읍 ○○리 83-8, 같은 리 83-13, 같은 리 83-14
- 면 적 : 9,703㎡
- 목 적 : 간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 공사
- 사업내용 :

- 토공(절토 700㎡, 성토 491㎡)	- 구조물공(자연석쌓기 1,646㎡)
- 배수공(우수관 38m, 토사측구 654m 등)	- 포장공(콘크리트포장 941㎡)
- 사업기간 : 2018. 12. 26. ~ 2019. 12. 31.

[그림 3-5.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현황]



[표 3-3.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범례
계	9,703	100.0	
과수원	7,885	81.3	
영농차량 통행로	1,818	18.7	
농업용 저수지	-	-	

3 피신청인 의견

○ 개간 농지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사면 보호 대책 등 시정 요구

농업회사법인 ○○(주)(대표이사 ○○○)(이하 ‘이 민원 개간사업의 시행자’라 한다)가 농지 확대개발(개간)을 목적으로 구 울산 울주군 ○○읍 ○○리 산 43-1 임야 30,116㎡ 중 9,750㎡에 대한 농업생 산기반 정비사업(개간사업)(이하 ‘이 민원 개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완료함에 따라 2017. 7. 13. 이 민원 개간사업에 대한 준공이 인가·고시되었다. 그때부터 비가 오면 이 민원 개간농지로부터 토 사가 유출되어 인근 마을로 유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 민원 개간농지에 대한 사 면 보호 등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음.

토양(농지)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농지개량시설에 해당되어 농지전용(협의) 절차 불필요

2018. 12. 11. 이 민원 개간사업 시행자로부터 계단설치를 허가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농지에 계단을 설치하는 행위는 농지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농지개량시설로서 농지전용대상이 아니어서 농지전용허가 협의 없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따라 계단설치행위를 허가하였다. 또한 이 민원 개간사업의 허가 당시 울산 울주군 범○○읍 ○○리 산 43-12 중 일부는 이미 콘크리트 포장되어 마을 안길 및 농로로 이용되고 있었음.

○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부과

이 민원 개간사업 시행자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법면부 석축 찰쌓기로 선 시공하였으나, 개간 농지의 토사 유출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으로 2019. 5. 2. 이행강제금 1,452,000원을 부과하였고, 사업 부지 외 공사용 진입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2019. 7. 16. 시정명령(3차)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통지를 한 후 2019. 8. 2. 이행강제금 1,035,000원을 부과하였음.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부지 외 진입로 사용부분 등의 시정명령

이 민원 개간 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울산 울주군 ○○읍 ○○리 83-9를 공사용 진입로로 무단형질 변경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9. 3. 28., 2019. 7. 16., 2019. 8. 2. 및 2019. 9. 3. 제4차에 걸쳐 시정명령(원상 회복)을 하고 이행강제금 1,035,000원을 부과하였음.

4 판 단

○ 개간사업 준공 후 사후관리 부적정으로 인한 농업행정의 신뢰도 저하

이 민원 토지의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시 제출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서를 살펴보면 “제5장 예상 재해저감대책” “V-28”의 “〈그림 5.2.2-1〉 배수 처리계획(개발 후)”과 “V-41”의 “〈그림 5.4.2-2〉 개발 후 저감대책”에는 분할 전 토지 서편과 동편으로 측구가 설치되어 기존 배수로로 유출되고 토지이용 계획상 도로 옆 측구는 남측 편 농업용 저수지(572×332×3.0)를 거쳐 기존 배수로로 유출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와 관련한 “제6장 유지관리계획” “VI-3” “6.2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에는 재해저감시설(집수정, 측구 등)에 퇴적된 토사는 정기(우기 전 1회), 수시로 준설하도록 하고 사면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절·성토 사면 피복상태, 세굴 여부, 용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 확인하여 보수 조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위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민원 개간사업 시행자는 이

민원 개간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우기 전 수시 점검을 통한 배수로 준설과 절·성토 사면의 피복상태 등을 확인하여 수시로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또한 토지이용계획상 이 민원 토지 남측에 위치한 재해저감 시설인 농업용 저수지를 피신청인(농업정책과)과 아무런 협의 없이 매립함으로써 비가 오면 이 민원 개간사업 부지 내에서 유출된 토사로 인하여 기존 배수로가 막히고 그리하여 인근 농경지와 마을 안길로 토사가 흘러들어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농업정책과)은 2018. 6. 29. 위와 같은 토사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또한 2019. 5. 29. 및 2019. 7. 2. 두 차례에 걸쳐 개간 농지 성실영농의무 이행 및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나아가 피신청인은 이 민원 개간사업을 시행하면서 매립한 농업용 저수지(침사지)를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조차 행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신청인이 이 민원 개간사업에 대한 감독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음.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의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시 검토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서 “제6장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재해저감시설(집수정, 측구 등)에 대한 퇴적토사 준설을 실시하게 하고, 아울러 사면 유지관리계획에 따른 수시 점검을 통한 파손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게 하여야 할 것임.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부지 외 울주군 ○○읍 ○○리 83-9를 공사용 진입도로 활용한 부분에 대한 행정 처분 필요

피신청인(도시과)은 개간사업지 밖에 있는 토지를 공사용 진입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울산 울주군 ○○읍 ○○리 83-9의 일부에 대하여 원상복구할 것을 4차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개간사업 시행자는 현재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단 형질 변경한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신청인(도시과)은 이에 대하여 이행촉구를 한 후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행정 처분 및 고발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울주군 ○○읍 ○○리 산 43-12의 공사용 진입로 인정은 적정

피신청인도 확인한 바와 같이 공사용 진입도로 사용되고 있는 울산 울주군 ○○리 산 43-12의 일부에 대해서는, 2014년도 항공사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민원 개간사업 승인 당시 이미 같은 리 83-1 건축물 등의 진입도로로 공용되고 있었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진입도로로의 사용이 달리 위법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5 결 론

○ 울주군 농업정책과, 도시과

개간사업 시행자(개발행위 시행자)로 하여금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시 검토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서 “제6장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철저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개간사업구역 내 농업용 저수지(침사지)를 원상복구하여 사업구역 내에서 유출되는 토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하기로 의결함.

○ 울주군 농업정책과

「농지법」 제22조에 따라 개간 농지가 세분화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각 시정권고하기로 의결함.

부서 조치결과 ▶ 수용

○ 울주군 도시과 : 26655(2019.10. 31.) 조치계획 제출

- 매립된 농업용 저수지(침사지) 원상복구 등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시 검토되지 않은 사전재해영향성에 대하여 재협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 ⇒ 매립된 농업용 저수지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상 존치하여야 할 시설로써 원상복구(복원)에 대하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담당부서(농업정책과)와 협의 후 행위허가 변경 등 처리
- 분할된 토지 환원(합필)
 - 개간사업구역 내 토지 분할 부적정은 환원 등 조치
 - ⇒ 담당부서(농업정책과)와 토지 분할 제한에 대하여 협의 후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
 - 토지 분할 현황

위 치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비 고
계	3필지		9,703		
범서읍 ○○리	83-8	과	1,984	농업회사법인 ○○(주)	모변지
	83-13	과	5,296		2018. 10. 분할
	83-14	과	2,423		2018. 11. 분할

- 사업부지 외 불법형질변경 조치
 - 공사용 진입로 사용을 위하여 불법형질변경 한 부분 등에 원상복구
 - ☞ 이행강제금(1,035천원) 징수완료, 원상복구 시정 중

권 / 고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지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19-고-0002(2019. 1. 3.) / 2019. 3. 25.
- 신청인/피신청인 : ○○○(대구시 ○○) / 울산광역시(산업입지과)
- 결정결과 : 권고(주심위원 : 임용균)

① 민원취지

신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일원(이하 ‘이 민원 구역’이라 한다)이 ‘반송일반산업단지’ 예정부지로서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이 행해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니, 이 민원 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청

② 사실관계

반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목적은 고부가가치의 첨단지식산업을 계획적으로 집적·육성하여 산업업종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기존 대기업, 주력산업 위주의 산업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소기업 위주의 적절한 산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에 있으며 그 사업개요는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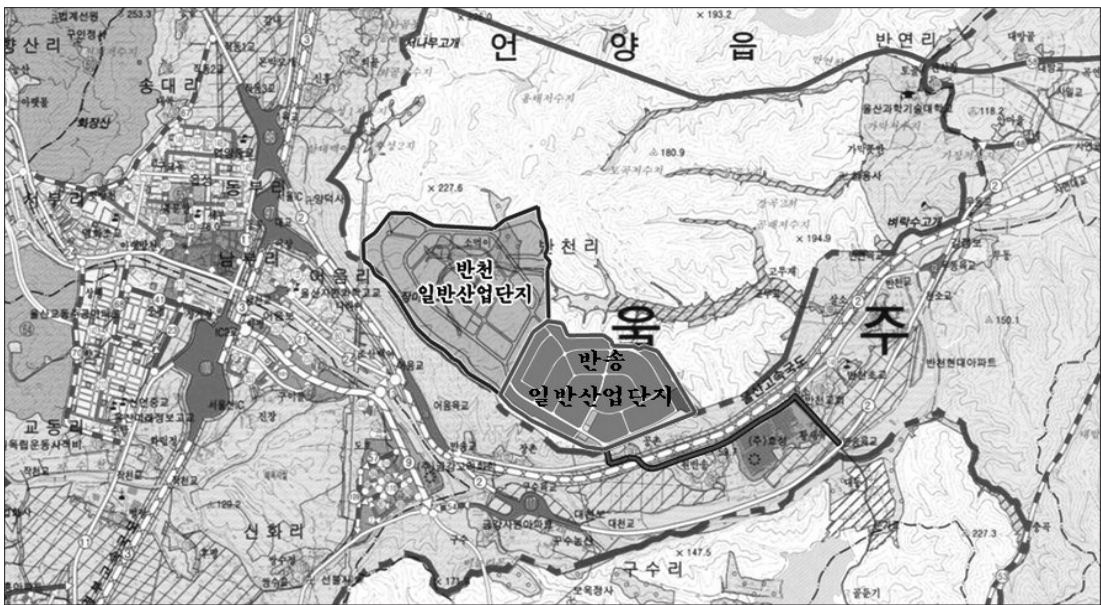
- 위 치 :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일원
- 사업규모 : 988천㎡ (산업 739, 지원 3, 공공 246)
- 사업비 : 2,295억원 (공사 1,795, 보상 275, 기타 225)
- 사업기간 : 2009 ~ 2020년
- 유치업종 : 의약품, 플라스틱제품, 전자부품, 기타기계제조업 등

이 민원 구역의 최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KTX 역세권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03. 11. 19. 지정되어 2011. 11. 18. 지정 해제 되었으나 이와 동시에 반송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으로 2011. 11. 19.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1-996호로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의 지정이 결정되었으며 이후 2014. 12. 1.(2차 재지정), 2017. 12. 1.(3차 재지정) 각각 재지정 공고되어 현재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반천리 일원 1,319,996㎡, 178필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간 이 민원 구

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위는 아래와 같음.

- 2003.11.19.~ 2011.11.18. : 고속철도 역세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8년)
 ※ 현 반송산단을 포함하여 반송.반천.구수.신화리 일대 24.04km² 지정
- 2011.11.19.~ 2014.11.18. : 반송산단 예정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2014.12. 1.~ 2017.11.30.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2017.12. 1.~ 2020.11.30.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반송일반산업단지 위치도]



이 민원 구역을 15여년 이상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의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반송일반산업단지 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수요(7개사)도 부족한 형편이며, 이 민원 구역의 경우 인접 반천일반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지하암반이 많을 것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인근 반천일반산업단지보다 산세의 굴곡이 심하고 협곡이 많이 존재하며 특히, 자생하는 수목이 현저히 많아 조성 공사비도 예상보다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본다. 또한 이 민원 구에는 철탑(154kV) 3기가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약 87,961m²의 토지활용이 제한되거나 지중화 작업으로 인한 사업비가 크게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인접지에 장애인보호시설이 존재하여 조성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소음 및 먼지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하여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등 환경분쟁이 우려됨.

3 피신청인 의견

이 민원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산권행사의 제약이 될 수 있으나 2011. 3. 24.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같은 해 6월 반송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수요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후에도 반송일반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과 이 민원 구역의 투기적인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취한 행정조치였음.

이후 2014. 12. 1.(3년간), 2017. 12. 1.(3년간) 두 번에 걸쳐 이 민원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은 울산의 전체적인 산업발전을 위한 균형적인 단지 공급 측면에서 이 민원 구역의 입지 조건이 양호하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연계·파생되는 산업 전문분야에 걸친 신성장 산업군 육성을 위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았기에 토지를 분할하여 투기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했음.

그러나 KTX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인한 이 민원 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2003. 11. 19. ~ 2011. 11. 18, 8년간), 반송일반산업단지 예정부지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2011. 11. 19. ~ 현재, 7년 4월간)으로 약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장기간 주민의 재산권행사 침해로 민원이 빈발하고 있고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 입주기업체 수요부족 등 사업성이 불투명한 상태여서, 다른 대체 산단 조성을 통해 공장용지 난을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개인의 사유지 재산권에 대한 장기간의 규제보다는 이 민원 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봄.

4 판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 지정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구역을 반송일반산업단지 지정구역으로 선정하고자 2010. 7. 12. 반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이 민원 구역 토지의 투기적 매매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11. 11. 19.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지만, 반송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산업단지계획(안)만을 수립하였을 뿐 이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이 민원 구역 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수요도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며, 나아가 반송일반산

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확보 계획도 없는 것으로 보임.

한편,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구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 판단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일응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 11. 19.부터 현재까지 반송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이 확정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사업성도 불투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구역을 계속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이로써 얻어지는 공익적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오히려 개인의 재산권행사의 제약이라는 사적 이익의 침해만을 초래하고 있으며, 나아가 향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면 이에 따른 주민들의 손해는 막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조속히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구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권고하기로 의결함.

부서 조치결과 ▶ 수용

- **산업입지과** : 3275(2019. 4. 19.) 조치계획 제출
 - 소관부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 및 후속절차 이행 통지
 - ※ 2019.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해제) 완료

2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해제)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19-고-0045(2019. 2. 8.) / 2019. 3. 11.
- 신청인/피신청인 : ○○○(울주군 ○○○) / 울산광역시(녹지공원과)
- 결정결과 : 권고(주심위원 : 임용균)

① 민원취지

신청인 소유의 울산 울주군 ○○리 산○○ 임야 62,802㎡, 같은 리 산○○ 임야 22,861㎡, 같은 리 산○○ 임야 21,025㎡, 같은 군 ○○리 산○○-○ 임야 51,562㎡(이하 ‘이 민원 토지들’이라 한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으니 이 민원 토지들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 요청.

② 사실관계

이 민원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1971년 한국전력이 건설부에 요구한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 반경 8km를 저 인구 지대(2만5천명 이상의 인구밀집집단이 없는 지역)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고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본래의 지정목적이 아닌 고유한 목적을 위하여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은 관련부서가 그 목적 소멸에 따른 해제를 요청하여 1999. 7. 22.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에서 해제토록 결정되어 1971년 지정당시의 구역확정 대상지인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35.28km²) 일원을 지정당시의 기준으로 하여 2002. 1. 4. 개발제한구역이 해제(행정구역경계선)되었음. 농·어업중심의 토지이용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왔던 고리원전 주변(서생면)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후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녹지 및 경관확보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보전용지(보전녹지지역, 공원, 녹지 등)로 계획함으로써 도시전체의 보존녹지축을 형성하고, 그 밖의 환경·생태·문화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보전중심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음. 한편 진하도시자연공원과 같이 자연환경 측면에서 반드시 보전되어야 할 지역으로 검토되어 보전녹지지역이나 공원 등 보전용도로 용도를 부여하게 되었음.[건설부고시 제728호(1971. 12. 29.) 참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64호(2002. 1. 4.) 참조,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2002. 12. 울산광역시)참조]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2003. 7. 31. 도시계획시설인 진하자연공원으로 결정(울산광역시 고시 제 136호)하였고, 2005년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신설되어 2005.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민의 요구수준에 맞도록 도시공원과 녹지를 확충·관리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및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함과 아울러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 조치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476호, 2005. 3. 31.」 제6조(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 2009. 12. 31.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010. 1. 1.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되는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피신청인은 2010. 10. 14. 진하공원(자연공원) 일부를 폐지(분리)하여 진하도시자연공원구역 및 진하공원(근린공원)을 지정(울산광역시 고시 제2010-260호)하게 되었음.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현황]

공 원 명	계획면적(㎡)	고시일자	비 고
진하도시자연공원구역	2,715,284	2010. 10. 14. 울산광역시 고시 제 2010-260호	민원 토지 포함
진하공원(근린공원)	2,297,416		

신청인은 1999. 10. 3. 울산 ○○면 ○○리 산○○ 및 같은 면 ○○리 산○○-○의 토지를 취득하였고, 2002. 10. 1. 울주군 ○○면장으로 부터 발급받은 가축사육 사실 확인원에 따르면, 사슴 사육을 시작으로 2003. 5. 2.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 부터 축사 2개동 부지면적 114,537㎡ 사슴 등에 대한 가축사육 변경 허가를 받았으며, 2014. 2. 26. 3개동 시설면적 1,014㎡에 대한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재 교부 받았다.

이 「2025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 보고서」 6. 도시자연공원구역기본계획 가. 도시자연공원 정비 계획 5)도시자연공원별 정비계획 다) 진하 도시자연공원 ② 지침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국토환경성평가 검토

- 도시자연공원구역 우선지정 지역: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
- 전체면적 5,012,700㎡ 중 4,356,779㎡(약 86%)가 해당

■ 생태자연도 검토

- 도시자연공원구역 우선 지정 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없음
-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이 약 70%

■ 녹지자연도 검토

- 도시자연공원구역 우선 지정 지역: 녹지자연도 8등급 지역
- 전체 5,012,700㎡ 중 168,446.2㎡(3.36%)가 해당

■ 지침 검토 결과

-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해당 있음
- 생태자연도 1등급: 해당 없음
- 녹지자연도 8등급: 해당 있음
- 전체 면적 5,012,700㎡ 중 4,356,799㎡(86.9%)가 해당

3 피신청인 의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8조의2에 따르면,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지역을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함.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이하 ‘이 지침’이라 한다.) 제4절에 따라 녹지가 훼손되어 자연환경의 보전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었거나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서의 이용 목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일부를 변경(해제)할 수 있음.

비록 이 민원 토지들의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지만 일부는 농경지(과수원)와 가축사육시설로 수년간 이용됨으로써 더 이상 임야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 민원 토지들의 총면적은 158,250㎡로서 상당히 큰 면적이며, 임야 중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 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4 판 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시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의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과 동시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관리기준을 정하고, 법 제28조 및 영 제32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취락지구의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효율적인 보전·관리와 동 구역 내 취락지구의 생활환경 개선 및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위 지침 제2장 제4절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기준’을 살펴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녹지가 훼손되어 자연환경의 보전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었거나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서의 이용목적 상실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해제)할 수 있고, 위 지침 2-2-2.에 의한 지역이 아닌 경우로서 식생 등의 보전가치가 낮고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3등급~5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임상도 3영급~1영급, 녹지자연도 6등급~0등급을 이용등급으로 하고, 이용등급을 대상으로 변경(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입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위등급지를 변경(해제)할 수 있음.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지조사와 위 사실관계 등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들과 주변지역은 농경지(과수원)와 가축사육시설이 등이 입지함에 따라 이미 식생 등의 보전가치가 낮아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등 ‘2025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 보고서’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된 환경부 국토환경성평가 등급·생태자연도 등급과 녹지자연도 등급이 현지의 사정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제16조에 따라 생태·자연도의 권역별 구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토지소유주 또는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은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립생태원장에게 생태·자연도 등급의 수정·보완을 신청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성평가지도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

태·자연도, 녹지자연도, 임상도 등이 재조사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신청토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35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시 도시자연공원구역변경(해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후 이를 '울산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 일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해제)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권고하기로 의결함.

부서 조치결과 ▶ 수용

- 도시계획과 : 9892(2019 11. 26.) 하반기 자체 점검결과 제출
 - 2035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해제) 재검토 선행 후 도시기본계획 반영 검토
 - 녹지공원과 : 2035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시 도시자연공원 변경(해제) 검토
 - 2035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용역 예산 반영



3

폐천부지 교환 등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19-고-0046(2019. 2. 12.) / 2019. 3. 18.
- 신청인/피신청인 : ○○○(남구 ○○○) / 울산광역시(건설도로과)
- 결정결과 : 권고(주심위원 : 임용균)

① 민원취지

신청인 소유의 같은 동○○○-○ 하천 283㎡ 및 같은 동 산○○○ 임야 27,260㎡ 중 2,491㎡(이하 ‘이 민원 토지 1’이라 한다)가 지방하천 신명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고, 국토교통부 소유의 울산 북구 ○○○동 ○○○-○ 하천 55,679㎡ 중 일부(이하 ‘이 민원 토지 2’라 한다)가 사실상 하천구역에서 제외되어 폐천부지화 되어 있으므로 이 민원토지 1과 교환될 수 있도록 하천기본계획 변경(재수립)요청.

② 사실관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2004. 7. “주전천·금천·어물천·신명천 하천정비기본계획”(울산광역시 고시 제2004-108호, 2004. 7. 8.)을 수립하면서 이 민원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신명해안에서부터 상류측 5.95km구간의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 개발 및 치수 경제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7년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연장 5.95km, 유역면적 19.13km²를 포함한 “성안천 등 12개소 하천기본계획(변경)”(울산광역시 고시 제2017-226호, 2017. 12. 21.)과 관련하여 2016. 6. 용역을 착수하여 2017. 4. 주민설명회, 2017. 8. 전략영향평가 협의, 2017. 11. 9. 전문가 자문(서면), 2017. 11.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회를 거쳐 수립하였음.

2004. 7. “주전천·금천·어물천·신명천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당시 신청인 소유의 울산 북구 ○○○동 ○○○-○ 하천 283㎡ 및 같은 동 산○○○ 임야 27,260㎡ 중 약 2,400㎡가 하천구역에 편입되고 국유(국토교통부)의 같은 동 ○○○-○ 하천 55,679㎡중 이 민원 토지 인근 약 2,950㎡가 폐천부지에 편입되었으나, 2017. 12. “성안천 등 12개소 하천기본계획(변경)”에서는 이 민원 토지 1과 국유의 같은 동 ○○○-○ 하천 55,679㎡ 중 33,243㎡가 하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음.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2016년 태풍 ‘차바’로 인해 발생한 이 민원 하천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2017. 12. “성안천 등 12개소 하천기본계획(변경)”의 계획하폭, 계획제방 등에 맞게 2017. 7. ~ 2018.

3. 기간 동안 전석 쌓기 3,620㎡, 교량 4개소 설치 등 울산 북구 대안동(상대안마을~상류부) '태풍 차바 수해복구공사(이 민원 하천의 3구역)'를 시행하였고, 또한 2017. 9. ~ 2018. 12. 기간에는 울산 북구 대안동~신명동 일원 '신명천 개선복구사업'으로 전석 쌓기 27,902㎡, 교량 9개소 등을 설치하였음.

2016. 7. 신청인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시행중인 '○○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2공구)'와 관련하여 농경지(답)로 사용되고 있는 국유의 울산 북구 ○○동 ○○○-○ 하천 55,679㎡ 중 약 2,950㎡ 폐천부지와 이 민원 토지 1과의 교환 등을 요구하였으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이 민원 토지가 위 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매입할 수 없고 위 국유지 등은 장래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교환할 수 없음을 회신하였음. 이후 신청인은 2017년 하천구역으로 추가 편입된 이 민원 토지 2에 대하여 폐천부지의 환원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18. 11. 27. 폐천부지로 환원하기 위해서는 지역 수자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으로 현시점에서의 환원은 곤란하고, 다만 이 민원 하천의 여건변화 등 하천기본계획 변경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이를 재검토할 계획임을 신청인에게 회신하였음.

③ 피신청인 의견

과거 홍수시 이 민원 하천의 상류 범람으로 이 민원 토지 1로 유로가 형성됨에 따라 이 민원 토지 1 이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으며, 2017. 12. 21. 이 민원 하천기본계획 고시 때 주변의 영농 기반시설(농로, 배수로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 민원 토지 2를 포함한 폐천부지를 하천구역으로 고시한 것으로 판단됨.

이 민원 토지 1, 2 주변 농경지의 영농을 위한 농로 및 배수로 용 현황 등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공공용으로 사용할 가치가 없는 구역에 대해서는 하천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계획이며, 하천구역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하천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8의2호에 따라 폐천부지 등의 보전 또는 활용에 관하여 관할 북구청장과 협의한 후 처분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임.

④ 판 단

「하천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즉, 폐천부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고, 그 폐천부지가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또는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할 수 있는바, 이 민원 하천의 관리를 수임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태풍 차바 수해복구공사(신명천 3구역)’ 및 ‘신명천 개선복구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민원 하천 기본계획의 계획제방에 맞게 하천정비를 완료함으로써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을 충분히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 안전성이 이미 확보된 상태이므로 이 민원 토지 2를 폐천부지로 환원한다 하더라도 치수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민원 하천의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등을 통하여 하천구역을 재정비하여 이 민원 토지 2를 폐천부지로 환원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또한 이 민원 토지 2가 폐천부지로 환원된다 하더라도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폐천부지 등의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하천구역에 포함된 이 민원 토지 1과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 1과 이 민원 토지 2의 교환 등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권고하기로 의결함.

부서 조치결과 ▶ 수용

- **건설도로과** : 6106(2019 5. 14.) 상반기 자체 점검결과 제출
 - 신명천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에 이와같은 경우의 하천에 대해 조사 및 기본계획 보완요청 (2019. 3. 22.)
 - 2017. 12. 21일 고시된 12개 하천(신명천 포함)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변경 고시를 위한 평면도 및 토지조서 작성중
 - “지역수자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천부지 등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한 하천 기본계획 고시 계획
 - 교환을 요구한 토지 주변의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북구청과 협의 후 민원해소 예정

4

특별교통수단 등 차등요금제 폐지(제도개선)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19-고-0120(2019. 5. 20.) / 2019. 8. 12.
- 신청인/피신청인 : ○○○(울주군 ○○○) / 울산광역시(교통기획과)
- 결정결과 : 권고(주심위원 : 오영은)

1 민원취지

동일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지 등이 울주군인 경우 더 많은 이용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구·군 간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 요금 상한제 차별 폐지 요청

2 사실관계

도농복합 광역시 중 유일하게 관내 구·군 간 요금상한 차등 규정

지역	조례 규정	요금체계		상한제	시계 할증
		기본요금	추가요금		
울 산	시내버스요금의 3배 이하	5km까지 1,800원	417m당 100원 또는 100초당 100원	구 4,500원 (구↔구) 군 9,000원 (구↔군)	없음
서 울	도시철도요금 (거리비례)의 3배 이하	5km까지 1,500원	5~10km 1km당 300원	없음	없음
			10km 초과 1km당 35원		
부 산	중형택시요금의 35% 이하	5km까지 1,800원	422m당 100원 또는 102초당 100원	없음	시계 외 20%
대 구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하	3km까지 1,000원	1km당 300원	시내 3,300원 시외 6,600원	시계 외 100%
인 천	도시철도요금 (거리비례)의 3배 이하	2km까지 1,200원	2~10km 1km당 200원	없음	2km까지 1,200원
			10km 초과 1km당 60원		
광 주	일반택시요금의 35% 이하	2km까지 660원	150m당 30원 또는 36초당 30원	없음	없음
대 전	일반택시요금의 50% 이하	3km까지 1,000원	440m당 100원 또는 107초당 100원	없음	시계 외 20%

※ 출처 : 「국토교통부,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및 각 지자체 누리집

울주군은 행정구역 면적 및 장애인 거주자수가 가장 높음에도 요금상한 차등 규정 적용

- 특·광역시 중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행정구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특히 울주군은 757.3km²로 우리시의 71.4%로 가장 넓고 장애인은 2,614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27.8%)

(단위 : km)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체	기장군	전체	달성군	전체	강화군	옹진군			전체	울주군
605.6	770	218.3	883.6	426.7	1,063.1	441.4	172.9	501.2	539.5	1,061.2	757.3

※ 출처 : 「2017년 지적통계_특·광역시별 면적, 국토교통부」

(단위 : 명, %)

서울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계
	인원 (등급 내 비율)	인원 (등급 내 비율)	인원 (등급 내 비율)	인원 (등급 내 비율)	인원 (등급 내 비율)	
1급	679 (17.0)	956 (24.0)	486 (12.2)	757 (19.0)	1,107 (27.8)	3,985 (100)
2급	1,330 (21.4)	1,562 (25.1)	836 (13.4)	991 (15.9)	1,507 (24.2)	6,226 (100)
계	2,009	2,518	1,322	1,748	2,614	10,211

※ 출처 : 「2018년 울산광역시 장애인 현황, 보건복지부」

운행거리에 따른 요금¹⁾ 등 이 다른 특·광역시보다 높음

- 30km를 운행하는 경우 최저요금인 대구광역시 대비 2.3배로 특·광역시 중 가장 높고 관내 구 지역 요금과 비교하여도 1.7배 수준

(단위 : 원)

운행거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구	울주군
5km (순위)	1,500 (6)	1,800 (1)	1,600 (5)	1,800 (1)	1,450 (7)	1,260 (8)	1,800 (1)	1,800 (1)
10km (순위)	3,000 (2)	2,980 (5)	3,100 (1)	2,800 (6)	2,590 (7)	2,260 (8)	3,000 (2)	3,000 (2)
16km (순위)	3,210 (7)	4,410 (1)	3,300 (6)	3,160 (8)	3,950 (4)	3,460 (5)	4,400 (2)	4,400 (2)
20km (순위)	3,350 (7)	5,350 (2)	3,300 (8)	3,400 (6)	4,860 (3)	4,260 (5)	4,500 (4)	5,400 (1)
30km (순위)	3,700 (7)	7,720 (2)	3,300 (8)	4,000 (6)	7,130 (3)	6,260 (4)	4,500 (5)	7,800 (1)

※ 출처 :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국토교통부」

1) 시간거리병산제가 적용되는 경우 거리를 기준으로 산출(울산, 부산, 대전, 광주)

3 판 단

일반택시 군 지역 할증은 폐지*되었으나 특별교통수단은 구·군 간 요금을 여전히 차등 적용하고 있어 평등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음**

* 일반택시 군지역 할증요금 20% 폐지(울산광역시 공고 제2018-1696호, 2018. 12. 20.)
** 헌법 제11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조례의 수권법률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5항에서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

표준조례(안)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가 대상이므로 상한선(대중교통요금의 2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요금체계 규정, 타 지자체 경우 특별교통수단 10km* 운행 시 시내버스 요금 대비 특별교통수단 요금은 2배 이내가 전체 지자체의 57*%

* 서울시 '17년 특별교통수단 운행거리 분석결과(전체 127만건) 10km 이내 69.1%(88만건), 20km 이내 19.9%(25만건), 20km 초과 10.9%(14만건)

[시내버스 요금 대비 특별교통수단 요금 수준 비교]

구 분	지자체	비율	광역시	시 군
합계	158*	100%	8	150
100% 이내	21	13.3%	-	21
200% 이내	69	43.7%	2	67
300% 이내	43	27.2%	6	37
400% 이내	17	10.8%	-	17
500% 이내	5	3.2%	-	5
500% 초과	3	1.9%	-	3

* 161개 지자체 중 요금무료 등 3곳 제외

4 결 론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시 반영

- 기 존: ‘군 지역 운행 시 6배 이하’ ⇒ 구·군 간 이용요금 차등 상한제
- 변 경: ‘제15조 제1항 단서조항’ 삭제 ⇒ 구·군 간 이용요금 평준화

다만 관련법령 개정(이용대상 확대, 법정 운행대수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가 대비 재원 확보 등 철저한 사전 검토 필요

☞ 경과규정 도입, 단계적 완화 등 입법기술을 통한 제도 개선

장래에 표준조례(안)의 '상한선(대중교통요금 2배 이하)' 조항 적극 검토

☞ 별도의 조례개정*이 없어도 실제 요금 인하 방안 수립 시 도입 가능

향후 울주군 거주 장애인의 경우 지역 및 이용요금의 부담으로 인한 이동의 제약이 없는지 면밀한 원인분석 필요

☞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 인구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그 수요 또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구·군간 이동 비율은 중구와 남구를 오가는 비중이 55.1%*

▶ 구·군간 이동 상위 6개 : 남-남(20.8%), 중-남(20.1%), 중-중(14.2%), 중-북(6.5%), 남-울(6.0%)

☞ 출·도착지는 남구와 중구가 70%내외 차지, 장애인 등록대비 울주·북구 비율이 낮음

▶ 출발지 비율(%) : 중(31.3), 남(38.9), 동(10.2), 북(11.1), 울주(8.5), 시외(0.0)

도착지 비율(%) : 중(30.7), 남(38.2), 동(10.2), 북(11.3), 울주(9.3), 울산 외(0.3)

*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자료 제공 ('18년 하차 311,020건 분석)

조치사항(권고)

과 제 명	조치사항	소관기관(부서)
특별교통수단 구·군 간 이용요금 평준화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시 반영	주관 : 교통기획과 협조 : 장애인복지과

부서 조치결과 ▶ 수용

○ 교통기획과 : 17299(2019. 12. 4.) 하반기 자체 점검결과 제출

-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 사전법제심사 및 사전규제심사 : 8. 27.
 - 관련기관 부서 의견 조회 : 8. 29 ~ 9. 4.
 -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9. 19. ~ 10. 17.
 - 의회 심의 및 의결 : 12. 16.(월)
 - 공포 및 시행 : '20. 1월

5

보조금 부적정 지급 조사 및 회원자격 완화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19-고-0135(2019. 6. 7.) / 2019. 8. 19.
- 신청인/피신청인 : ○○○(울주군 ○○○) / 울산광역시(어르신복지과)
- 결정결과 : 권고(주심위원 : 김승호)

① 민원취지

사단법인 ○○○발전협의회(이하 ‘이 민원 협의회’라 한다)의 기금으로 집행한 ‘○○○ 상수도 인입비 지원사업’ 등의 부적정 집행 건에 대하여 조치 및 이 민원 협의회 정관상 회원자격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

② 사실관계

2004. 4. 30. ○○애향회, ○○○ 향토보존회, ○○○○○○○ 유치 준비위원회를 통합하여 ○○○ 발전협의회가 발족하였고, 2008. 5. 15. 이 민원 협의회 정관을 제정하고 같은 해 5. 25. 울산광역시에서 설치하는 ○○○○시설과 관련한 제반현안 사항의 발전방안모색과 ○○○의 사회복지 정진을 통한 마을간 균형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민원 협의회를 등록하였음.

이 민원 협의회 회장이었던 ○○○가 2015. 7. 10. 마을 숙원사업의 해결을 요구하며 승합차로 시청 기물을 파손하고 분신을 시도했다가 공용건조물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이 민원 협의회는 2015. 9. 23.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5년도 추가 예산승인의 건(보석금 등 포함)을 의결하고 같은 해 9. 24. 보석금 20,000,000원을 지출하였고, 같은 해 10. 30. 20,000,000원을 회수하였음.

이 민원 협의회는 2014. 10. 8. ○○○ 상수도 인입비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울주군에 ○○○○ 시설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자금 중 669,192,000원을 상수도인입사업비로 변경 요청하였고, 울주군은 같은 해 10. 21. 승인하였음. 이 민원 협의회는 2017. 1. 24. 상수도인입사업비 정산자료(641,928천원, △27,264천원)를 ○○○에 제출하였고, 울주군은 같은 해 1. 26. 이 민원 협의회에 집행부적정 부분 조치결과 제출을 요청하여 같은 해 2. 9. 이 민원 협의회는 조치결과를 제출하였음. 그러나 상수도 인입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신청 외 ○○○에게 이 민원 협의회는 3회(2017. 7. 24., 2018. 3. 26., 2019. 2. 18.)에 걸쳐 소명자료를 요청(내용증명)하였으나 위 신청군의 비협조로 현재까지 환수하지 못하고 있음.

○○○ ○○주민회는 2006. 2. 20. ○○○ 산 ○○-○ 임야 4,812㎡를 매입하고, 피신청인은 보조금(주민숙원사업비)으로 2006. 3. 2. 202,104,000원(임야매입비), 2006. 4. 14. 1,559,960원(등기이전수수료) 2011. 8. 23. 6,336,040원(마을회관 전자제품 구입)을 ○○주민회에 교부하였다. ○○주민회는 2009. 6. 11. 210,000,000원에 위 임야를 매각한 후 매각대금 중 203,800,000원은 마을명의통장에 예탁하고 나머지 6,200,000원 중 4,500,000원은 설계비로, 400,000원은 매각양도세로 각각 지출하고, 잔액 1,300,000원을 마을주민들을 위해 지출하였으며 다른 지출 내역은 찾을 수 없음.

3 피신청인 의견

○ 울산광역시장

- 이 민원 협의회 정관상 회원자격 규정 변경에 대해서는 이 민원 협의회 정관 제5조에 회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이 민원 협의회 정관 개정에 관하여는 사단법인의 일반원칙에 따라 총회를 거쳐 개정해야 하므로 우리시에서 회원자격에 대한 정관 조항 개정을 요구할 근거는 없음. 다만, 그동안 이 민원 협의회에 주민화합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으며, 2018. 12. 24. 기존회원자격을 10년 이상 거주에서 5년 이상 거주로 정관을 개정하는 등 회원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있음.

- 이 민원 협의회장의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이 민원 협의회에서 매입한 사항은 토지 구입 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입하였으며, 이 민원 협의회장 시청 방화로 구속 시 보석금 등의 공금 사용에 대해서는 이 민원 협의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5. 9. 24. 석방 보석금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석방 후 2015. 10. 30. 2,000만원 회수 조치하였음.

- 기금으로 상품권 등을 회원들에게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기금은 2013년부터 울주군의 질권 설정으로 목적 외 사업에는 사용 할 수 없으며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시 울주군의 승인 후 집행할 수 있음. 반면 기금 이자수입은 법인 기본재산과는 성격이 다르며 이 민원 협의회 총회에서 수립된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하여 회원에게 지급하고 있음.

○ 울주군수

- ○○○ 유치로 울산광역시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자금은 이 민원 협의회 의 기본재산으로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울주군이 질권자가 되어 금융자산 활용사업비로 예치되어 기본재산의 변경사

용은 정관의 목적에 맞게 사업추진 신청 시 변경 승인 후 집행되고 있으며, 상수도인입사업은 2014. 10. 사업승인 후 2017. 1. 사업정산 결과 부적정 집행 3건에 대하여는 2017. 2. 조치 완료되었음.

-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원금은 마을명의통장에 예탁하여 보전하고 있으며, 재산 매각 차액은 마을공동 통장으로 입금되어 전체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하였음.

④ 판 단

○ ○ ○ ○ 발전협의회 회원자격 완화 등

- 「민법」제45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한다.(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민법」제42조에 따른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 또한 법률상 ‘인가’의 의미로 별도의 법적 규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이 적극적으로 정관변경 사항을 수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이 민원 협의회의 회원자격 규정은 자치법규인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그 변경에 관하여는 사단법인의 일반원칙에 따라 총회를 거쳐 자발적으로 개정하거나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회원자격 규정을 개정할 문제이므로 피신청인이 개입하여 규정 개정을 강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피신청인은 그동안 주민화합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이 민원 협의회에 권고하여 왔으며, 이 민원 협의회는 2018. 12. 24. 기존회원자격을 10년 이상 거주에서 5년 이상 거주로 정관을 개정하여 현재 삼동면으로 이사하여 거주하게 되는 세대주는 5년 후에 회원의 자격이 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회원이 될 수 있는 기간과 일치한다고 판단됨.

- 이 민원 협의회의 재산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으로 구분되며, 기본재산의 경우 이 민원 협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새로운 사업이 확정될 때까지 울주군이 질권을 설정하여 횡령 등의 금융 사고를 예방하고 있음. 신청인이 제기한 이 민원 협의회 전회장의 토지 매입, 이 민원 협의회 전회장의 보석금 지급 등은 이 민원 협의회의 보통재산을 총회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음.

- ○ ○ ○ 상수도 인입비 지원사업은 이 민원 협의회 회원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회원들 간 형평성을 고려해 인입이 불가하거나 이미 인입된 회원에게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울주군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신청인은 현금을 지급 받은 회원 중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는 회원 ○ ○ ○에 대해서 조치하여 달라고 하는바, 위 사실 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민원 협의회는 회원 ○ ○ ○에게 상수도 인입비 1,136,000원의 수령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도록 3회(2017. 7. 24., 2018. 3. 26., 2019. 2. 18.)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면서 소명자료 미제출 시 수령한 상수도 인입비가 환수 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렸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상수도 인입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타 부적정 집행 건과 같이 이 건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위와 같은 문제점은 「사단법인 ○○○발전협의회 정관」 제5조제1항에서 회원의 자격을 ‘○○○○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으로 규정함에 따라 위 ‘거주’가 실제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위 정관 제5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임.

○ 보조금(주민숙원사업비) 부적정 집행

- 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주민회는 보조금 202,104,000원으로 2006. 2. 20. ○○리 산 ○○-○ 임야 4,812㎡를 매입한 후, 2009. 6. 11. 위 임야를 21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매각대금 210,000,000원 중 203,800,000원은 마을명의통장에 예탁하고 나머지 6,200,000원 중 4,500,000원은 설계비, 400,000원은 매각 양도세로 각각 지출하고, 잔액 1,300,000원은 마을주민들을 위해 지출하였다. 피신청인 및 둔기주민회는 203,800,000원을 보조금의 원금이라 주장하지만 재산매각에 따른 차액 6,200,000원은 토지가액의 자연 상승분으로 이를 수익금이라 볼 수 없으며, 수익금이라 하더라도 보조금의 교부 목적(표고버섯 재배사업)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피신청인은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로 사용된 1,300,000원은 환수 조치하여야 하나,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보조금 환수에 관한 청구권은 5년의 시효를 적용받아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주민회로 하여금 1,300,000원을 마을명의 통장으로 환수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5 결 론

○ 울산광역시 어르신복지과

- 「사단법인 ○○○발전협의회 정관」제5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으로 변경하도록 행정지도

○ 울주군 노인장애인과

- 회원 ○○○에게 지급된 상수도 인입비 1,136,000원을 환수 조치
- 보조금(주민숙원사업비) 1,300,000원을 마을명의 통장으로 환수 조치

부서 조치결과 ▶ 수용

○ **어르신복지과** : 8459(2019. 11. 22.) 하반기 자체 점검결과 제출

- 2019. 8. 27. 정관 개정 협조 요청 공문발송
- 2019. 9. 6. ○○마을 주민숙원사업비 수익금 마을통장으로 환수 완료
- 2019. 9. 17. 상수도 인입비 환수계획 제출(○○○발전협의회⇒울주군)



6

경관 조례 폐지 등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19-고-0140(2019. 6. 11.) / 2019. 7. 24.
- **신청인/피신청인** : ○○○(남구 ○○○) / 울주군(시설지원과)
- **결정결과** : 권고(주심위원 : 임용균)

① 민원취지

등억온천단지 내 울산 울주군 등억알프스리 ○○○-○ 상 숙박시설(3층) 신축 건축물(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 기존의 다른 건축물의 리모델링 공사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의 취지에 맞게 경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하거나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 조례」를 폐지하여 줄 것을 요청

② 사실관계

피신청인은 체계적인 경관관리 방안과 지역의 소중한 경관자원 보호를 위한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경관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 12.경 경관계획을 수립하였고, 경관계획의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중점적인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등억온천단지, 진하해수욕장, 서생해안, 언양읍성, 구영로, 울산역 역세권지구, 봉계한우불고기특구 등 7개 구역을 지정하였음. 이 중 울주군을 대표하는 산악관광지인 등억온천단지는 숙박시설이 집산화되고 건축물의 형태, 색채 등으로 인하여 신불산의 자연경관이 저해되고 있어 신불산 산림을 향한 조망경관 확보와 산림과 조화로운 건축경관을 관리하여 신불산에 순응하는 건축물의 형태, 간판, 색채경관을 유도하고 건축용도가 관광휴양, 숙박시설에 대하여 건축물의 규모, 배치, 형태, 옥외광고물(간판), 야간경관, 색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음.

경관 조례 제24조,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 심의대상과 자문대상을 정하고 같은 조례 별표 3의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의 심의 대상으로 4층 이상의 건축물, 4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외벽 면적의 20% 이상을 리모델링하는 건축물로 정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등억온천단지 중점경관관리구역의 4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외벽 면적의 20% 이상을 리모델링한 건축물이 있었음에도 2015. 4. 9. 경관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경관위원회 심의를 개최한 사례가 없었음. 또한 3층 이하의 건축물인 이 민원 건축물의 경우, 경관 관련 부서는 경

관계회 연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경관 조례 제25조 제4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사전협의 없이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서(신축)를 내어 준 데 이어, 2019. 3. 25.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음.

3 피신청인 의견

「경관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주민공청회와 울주군 의회 의견청취, 울주군 경관위원회 심의,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 9. 21. 울주군 제2017-2848호로 ‘울주군 경관계획’ (이하 ‘경관계획’ 이라 한다)을 공고하였고, 경관계획에 따라 선정된 중점경관구역 중 하나인 등억온천단지는 울산의 대표적인 산악경관지역으로 숙박 건축물의 과도한 색채사용으로 신불산의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자연친화적인 가로환경 및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음.

「경관법」제28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 조례」(이하 ‘경관 조례’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중점경관관리구역 4층 이상의 건축물로 외벽 면적이 20%이상 리모델링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 심의대상이며 건축물의 경관 심의의 경우 위법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취지로서, 경관 심의로 인해 신축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 간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건축물 축조 공사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해체공사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착공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건축물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비산먼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4 판 단

「경관법」 제28조 제1항 및 경관 조례 제24조(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 제2항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은 ① 「경관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② 경관계획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③ 총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인 공공조형물 설치 사업, ④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⑤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며, 경관 조례 [별표 3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중 「경관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은 ① 4층 이상의 건축물, ②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③ 4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외벽 면적의 20% 이상을 리모델링하는 건축물로 정하고 있고, 「경관법」 제28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이 민원의 경우, 피신청인이 허가권자임)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할 수 있음. 따라서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신청인은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될 수 있음을 건축 관계자에게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3. 사실관계 나. 항”과 같이 중점경관관리구역 4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외벽 면적 20% 이상을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경관계획 취지와 신축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경관법」 제28조 제3항 따라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기준을 완화한 적용이 가능함을 울산광역시건축사회 등 건축 관계자에게 안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피신청인은 울주군의 경관자원을 보호하고 산림지형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경관관리가 요구되어 경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관조례 제25조 제4항에는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3층 이하의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도 경관위원회와 경관관리부서 간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건축허가(신고)시 마다 경관위원회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게 됨으로 인해 경관관리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건축주에게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부담시키므로,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에 제외되는 3층 이하의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는 경관계획의 “V. 경관가이드라인”에 맞게 경관부서에서 직접 협의하도록 하는 등 경관조례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결 론

중점경관관리구역 4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외벽 면적 20% 이상을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경관계획 취지와 신축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함

「경관법」제28조 제3항 따라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기준을 완화한 적용이 가능함을 울산광역시건축사회 등 건축 관계자에게 안내(홍보)할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함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에 제외되는 3층 이하의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는 경관계획의 “Ⅴ. 경관가이드라인”에 맞게 경관부서에서 직접 협의하도록 하는 등 경관 조례의 개정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함

부서 조치결과 ▶ 수용

- **울주군 기획예산실** : 21986(2019. 11. 29.) 하반기 자체 점검결과 제출
 - 2019. 7. 26. : 고충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 2019. 8. 6. : 기준 완화 적용 등 건축 관계자에게 안내
 - 2019. 9. ~ : 이동식 단속차량을 통한 정기적 교통단속 시행
 - 2020. 1. ~ 3. : 조례 개정 추진(예정)



7

방어진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해제)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19-고-0216, 280(2019. 7. 24.) / 2019. 9. 2.
- 신청인/피신청인 : ○○○(남구 ○○○) / 울산광역시(도시계획과, 녹지공원과)
- 결정결과 : 권고(주심위원 : 임용균)

① 민원취지

신청인 소유의 울산 동구 ○○리 ○○○-○ 답 610㎡(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으니 이 민원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 하여 줄 것을 요청.

② 사실관계

이 민원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1970. 3. 30. 도시관리계획 결정(건설부 고시 제152호)에 의해 동구 화정동 산 ○○일대와 북구 염포동 산 ○○○일대 7,670,652㎡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였고 2012. 2. 16.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울산광역시 고시 제24호) 시 422,230㎡가 감소된 7,248,422㎡로 고시되었다. 이후 2005. 3.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05. 7. 1. 법률 제7470호) 개정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신설되었고, 2005. 3. 3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7476호, 시행 2005. 10. 1. 전부 개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 조치로 2009. 12. 31.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010. 1. 1.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되게 됨으로써 피신청인은 2012. 12. 20.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의 변경 결정(울산광역시 고시 제2012-284호)으로 방어진도시자연공원을 폐지(분리)하여 방어진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방어진공원(근린공원)으로 지정(울산광역시 고시 제2012-284호)하게 되었음.

[방어진공원 결정(변경) 현황]

구분	면적(㎡)	고시일자	비 고
방어진 도시자연공원구역	4,147,323	2012. 12. 20. 울산광역시 고시 제 2012-284호	민원 토지 포함
방어진 근린공원	3,101,099		

‘2025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 보고서’ 6. 도시자연공원구역기본계획 가. 도시자연공원 정비계획
5) 도시자연공원별 정비계획 가) 방어진 도시자연공원 ② 지침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국토환경성평가 검토

- 도시자연공원구역 우선지정 지역: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
- 전체 면적 7,670,352㎡ 중 4,882,086㎡(약 63.64%)가 해당

■ 생태자연도 검토

- 도시자연공원구역 우선 지정 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없음
-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이 약 82%

■ 녹지자연도 검토

- 도시자연공원구역 우선 지정 지역: 녹지자연도 8등급 지역
- 녹지자연도 8등급 지역 없음
- 녹지자연도 7등급 지역이 약 66%

■ 지침 검토 결과

- 국토환경성 평가 1등급: 해당 있음
- 생태자연도 1등급: 해당 없음
- 녹지자연도 8등급: 해당 있음
- 전체 면적 7,670,652㎡ 중 4,882,086㎡(63.64%)가 해당

[그림 IV-6-6] 방어진 지침 검토 결과



3 피신청인 의견

방어진도시자연공원은 2005.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2. 12. 20.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이 변경 결정되면서 이 민원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포함되었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실효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정되었으나,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현재 ‘답’으로 사용되고 있어 식생 등의 보전가치가 낮고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방어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해제를 요청한 사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5년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재정비) 하여 ‘2035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임.

4 판 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의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은 1)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립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2)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성평가지도,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자연도·녹지자연도, 임상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적성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해제) 기준을 정하고 있음.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제2장 제4절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해제) 기준'을 살펴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녹지가 훼손되어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었거나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서의 이용목적 상실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해제) 할 수 있고, 같은 지침 2-2-2.에 의한 지역이 아닌 경우로서 식생 등의 보전가치가 낮고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환경성 평가 결과 3등급~5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임상도 3등급~1등급, 녹지자연도 6등급~0등급을 이용등급으로 하고, 이용등급을 대상으로 변경(해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입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위등급지를 변경(해제) 할 수 있음.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지조사와 위 사실관계 등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은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고 이미 식생 등의 보전가치가 낮아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되고, '2025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 보고서' 6. 도시자연공원구역 기본계획 가. 도시자연공원 정비계획 5) 도시자연공원별 정비계획 가) 방어진 도시자연공원 ② 지침 검토 [그림 IV-6-3] 국토환경성평가 검토 결과(3등급: 개발 보전 완충지, 계획적 개발 수용), [그림 IV-6-4] 생태자연도 검토 결과(3등급: 개발 또는 이용 대상 지역), [그림 IV-6-5] 녹지자연도 검토 결과(2등급: 논, 밭)를 종합한 [그림 IV-6-6] 방어진공원 지침 검토 결과와 같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우선 지정 지역에서 제외된 곳으로 판단됨. 따라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한 '도시

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기준'에 부합되므로 '2035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자연공원구역변경(해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후 이를 '울산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함이 타당함.

5 결 론

이 민원 토지 일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해제)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권고하기로 의결함.

부서 조치결과 ▶ 수용

- 도시계획과 : 9892(2019 11. 26.) 하반기 자체 점검결과 제출
 - 2035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해제) 재검토 선행 후 도시기본계획 반영 검토
 - 녹지공원과 : 2035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시 도시자연공원 변경(해제) 검토
 - 2035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용역 예산 반영



합 / 의 · 조 / 정

1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 보상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19-고-0007(2019. 1. 7.) / 2019. 4. 1.
- 신청인/피신청인 : ○○○(남구 ○○○) / 남구(환경관리과)
- 결정결과 : 합의/조정(주심위원 : 오영은)

① 민원취지

신청인이 입주하여 있는 남구 ○○○ ○-○○ 소재 ○○○○○ 상가와 인접한 남구 ○○동 ○○○ 번지 일원에서 ○○ ○○○○○(주)가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

② 사실관계

- 이 민원 아파트 신축 공사 개요
 - 공 사 명 : 울산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부지위치 : 울산 남구 ○○동 ○○○번지 등
 - 공사기간 : 2016. 12. ~ 2019. 7.
 - 공사규모 : 12개동, 879세대(지하2층, 지상 12~28층)
 - 시 행 사 : ○○ ○○○○○(주)

[그림. 이 민원 관련 현황도]



이 민원 아파트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남구청 환경관리과에 소음·진동 민원은 총 409건이 제기되었으며, 남구청 환경관리과는 소음 등 측정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조치를 취하였음. 한편, 신청인은 남구청 환경관리과에 유선으로 9차례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환경관리과는 시행사에 대한 현장계도 등을 통하여 소음저감을 요구하였으며 피해보상 문의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안내하였음.

3 결 론

우리 위원회는 2019. 2. 12. 현지조사 과정에서 시행사 ○○○○○○○(주)과 신청인 양측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의 중재를 희망하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2019. 2. 14. 중재를 개시하였으며, 그 결과, 합의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아파트와 상가 간 통행로 설치에 대한 쌍방의 이견을 해소하였으며, 2019. 3. 27.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하여 별지 1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합 의 서

“갑” ○○○(울산 남구 ○○동 ○○-○번지)

“을” ○○○○○○○(주)울산 남구 ○○○로 ○○번길 ○)

상기 “을”이 수행하는 울산 남구 ○○동 ○○○○아파트 주택재건축
신축공사(이하 ‘본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갑”, “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제 1 조 (합의대상 및 범위)

본 합의는 본 공사로 인하여 공사완료시까지 발생하는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를 포함한 시공성 민원에 대하여 “갑” [이하 “갑” 및/또는 “갑”의 구성원 (한라웨이리상가의 소유자 및 입주자를 의미함)]에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재산적, 정신적, 신체적 제반 일상생활에 대한 피해보상 일체에 관한 합의이다.

제 2 조 (합의범위)

1. 제1조와 관련하여, “을”은 “갑”이 제3조 제2항의 취하증명원 교부시 아래와 같이 보상 및 지원하기로 합의 한다.
 - 1) 일금 ○○○○○○ (₩ 0,000,000) 상당의 물품

제 3 조 (“갑”의 협조 의무)

1. “갑”은 본 공사를 방해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한다.
2. “갑”은 “을”을 상대방으로 하는 민 · 형사상 민원(유관기관 신고 및 제보, 민원제기, 주변 선동, 고소, 고발, 소제기, 보전처분 등을 포함)을 제기하지 아니하며, 기 제기한 민원의 있을 경우, 본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취하하고 그 취하 증명원을 “을”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3. “갑”은 본 합의서 날인 후 “을”에게 본 건으로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4. “갑”의 입주자대표는 본 합의서 날인 후 본 건으로 “갑”의 구성원(세입자 포함)의 별도 민원 제기 및 보상 요구가 발생할 경우 입주자대표 책임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제 4 조 (비밀유지)

1. “갑”은 본 합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2. 위 1항에도 불구하고, “갑”의 입주자대표는 “갑”, “을”이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갑”의 구성원에게 안내하고, 추후 관련 법령 및 정책 등에 의해 공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과 공개 방법 및 범위 협의 후 공개하기로 한다.

제 5 조 (권리의무 양도금지)

“갑”, “을”은 본 합의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6 조 (손해배상)

“갑”, “을”이 본 합의 사항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1. 본 합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2. “갑”은 상기 합의된 범위를 초과한 추가적 요구를 할 수 없다.
3. “갑”, “을” 쌍방간 결정권자의 직책 변동 및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본 합의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2019년 3 월 27 일

울산광역시 남구 ○○○○○○-○

울산 남구 ○○○ 번길

108 89 91

(위)

2

아파트 사용승인 관련 입주민 중재 요청

조 정 서									
민원 표시	2019-고-0017 ○○ 동 ○○○○ 사용승인 관련 입주민 중재요청								
조정 일시	2019. 2. 7.(목), 11:00								
조정 장소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회의실								
조정 내용 신청인과 (주)○○○○은 신청인의 '○○ 동 ○○○○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입주민간 중재를 해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아래의 조정내용을 수용한다. (주)○○○○은 신청인과 ○○ 동 ○○○○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아래사항에 대해 조치협조하기로 한다. 가. 현재 지하주차장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를 빠른시일 내 완료하기로 한다. 나. 2호라인(202호~2002호) 19세대 공용구(BIT공간)에 슬라브 또는 방화관련 안전 시설물 설치공사를 시행하기로 한다.(단, 해당 19세대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 ○○○○ 진입도로와 인도 경계구분이 불분명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동식 블라드를 빠른시일 내 설치하기로 한다. 라. 복도 등 공용부분에 대하여 준공청소를 실시한다.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19. 2. 7. <table style="width: 100%; margin-top: 20px;"> <tr> <td style="width: 50%;">신 청 인</td> <td style="width: 50%;">성명 ○ ○ ○ (서명)</td> </tr> <tr> <td>입주자대표</td> <td>성명 ○ ○ ○ (서명)</td> </tr> <tr> <td>(주)○○○○은 ○○동 ○○○○ 현장소장 상무</td> <td>성명 ○ ○ ○ (서명)</td> </tr> <tr> <td>시민신문고위원회 주심위원</td> <td>성명 김 승 호 (서명)</td> </tr> </table>		신 청 인	성명 ○ ○ ○ (서명)	입주자대표	성명 ○ ○ ○ (서명)	(주)○○○○은 ○○동 ○○○○ 현장소장 상무	성명 ○ ○ ○ (서명)	시민신문고위원회 주심위원	성명 김 승 호 (서명)
신 청 인	성명 ○ ○ ○ (서명)								
입주자대표	성명 ○ ○ ○ (서명)								
(주)○○○○은 ○○동 ○○○○ 현장소장 상무	성명 ○ ○ ○ (서명)								
시민신문고위원회 주심위원	성명 김 승 호 (서명)								

장검터널 차량 통행제한 요청

민원 표시	2019-고-0069 장검터널(장검길↔대학로1번길) 차량 통행제한 요청
조정 일시	2019. 4. 9.(화), 14:10
조정 장소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회의실

신청인의 '장검터널 개통 후 우신고교 앞 이면도로로 하루 수천대의 차량이
통행하여 교통소음, 차량정체 등이 심각하므로 경유차 운행을 제한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신청인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건설과)은 아래의 조정내용을
수용한다.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19. 4. 9.

성명 ○○○ 

성명 손태환 손태환

성명 김 승 호 (서명)

4

삼호3교 일원 폭우 시, 침수예방 대책 강구

조 정 서

민원표시	2019-고-0095 삼호3교 일원 폭우 시, 침수예방 대책 강구
조정일시	2019. 5. 9.(목), 17:00
조정장소	시민신문고위원회 회의실

조 정 내 용

무거동 삼호3교 일원은 폭우 시, 우수가 무거천 진출입로 보도에 의해 하천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우수받이 용량한계로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 바, 신청인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위 삼호3교 일원 침수예방을 위한 아래의 조정내용을 수용한다.

가. 남구청 도시창조과는 2019. 6월 착공예정인 ‘궁거랑 마실길 조성사업’ 추진 시, 기존 보행로 보도를 낮추고 배수로(U자형)를 설치하도록 한다.

나. 신청인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여 적극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남구청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협조한다.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19. 5. 9.

신 청 인

성명 ○ ○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 도시창조과 도시경관주무관

성명 이태환 (서명)

시민신문고위원회 주심위원

성명 김승호 (金承浩)

5

농지 내 석괴 정리

조 정 서

민원 표시	2019-고-0098 농지 내 석괴(石塊) 정리
조정 일시	2019. 5. 15.(수) 17:00
조정 장소	울산 북구청 건설과 사무실
조정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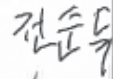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농지 내 석괴를 정리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아래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조정내용을 수용하기로 합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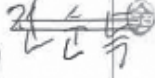
가. 피신청인은 2017년 ○○○ 하천 내 퇴적토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북구 ○○동 ○○○ 번지에 혼입되어 영농에 지장을 주고 있는 석괴를 굴삭기(백호, backhoe) 채 바가지로 돌을 걸러낸 후 농경지 가장자리에 적치하여 정리한다.

나. 신청인은 ○○동 ○○○ 번지 및 ○○동○○○번지에 대한 피신청인의 2017년 '○○○ 하천 내 퇴적토 정비 사업' 관련 행위에 대하여, 기 신청한 민원은 위 조치로써 해결된 것으로 같음하며 향후 민원을 추가로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19. 5. 15.

신 청 인 울산 북구 ○○○ (신현동) 성명 ○○○ (서명·인) 

피 신 청 인 울산 북구 건설과 성명 손종웅 (서명·인) 

시민신문고위원회 주 심 위 원 성명 김승호 (서명·인) 

6

행정재산의 도로점용 허가요청

조 정 서	
민원표시	2019-고-0109 행정재산(남구 여천동 〇〇〇 도로)의 도로점용허가
조정일시	2019. 6. 11.(화), 16:30
조정장소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설과 사무실
조정 내용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국유지인 남구 여천동 〇〇〇 (도로)의 도로점용허가를 승인해 달라'는 신청인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아래의 조정내용을 수용한다. 가. 신청인이 남구 여천동 〇〇〇 일원의 건축허가 신청 시, 진출입로 개설목적으로 국유지(여천동 〇〇〇)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면, 피신청인은 위 국유지가 도로 및 도로구역인지의 여부와 도로점용허가 면적의 폭을 도로관리기관인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의견조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나. 신청인은 위 국유지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시, 더 이상의 형·민사상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19. 6. 11. 신청인 피신청인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설과 건설행정주무관 시민신문고위원회 주심위원 성명 〇〇〇 (서명)  성명 조대웅 (서명)  성명 김승호 (서명) 	

7

축사 건축허가

조 정 서

민원표시	2019-고-0132 축사 건축허가
조정일시	2019. 7. 26(금), 09:20
조정장소	울주군청 도시과

조정내용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축사 건축허가' 고충민원에 대하여 아래의 조정내용을 수용한다.

- 가. 신청인은 현황도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도로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건축허가 신청시 설계도서 등과 함께 제출한다.
-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도로관리대장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하여 적합할 시 건축허가 처리한다.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19. 7. 26.

신 청 인

울주군 도시과

시민신문고위원회 주심위원

성명 ○ ○ ○

성명 임병리

성명 김승호

(인)

8

응급환자이송업 운영

조 정 서											
민 원 표 시	2019-고-0134 응급환자이송업 운영										
조 정 일 시	2019. 8. 14.(수), 15:00										
조 정 장 소	시민신문고위원회 회의실										
조정내용 ○○○○ 이송센터, ○○○○ 환자이송단, ○○○○ 환자이송단은 응급환자 이송과 관련하여 아래의 조정내용을 수용한다. 가. 위 세 업체는 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나. 위 세 업체는 이 시간부터 과거의 사실은 일체 거론하거나 문제삼지 않는다. 다. 위 세 업체는 법령에 근거한 운영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주무부서는 필요한 세부지침을 만들고 그 세부지침은 반드시 이행하도록 한다. 라. 위 세 업체는 법령에 근거한 시설 및 장비를 철저히 갖추고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며 주무부서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시 위반사항은 반드시 처벌한다. 마. 위 세 업체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시청의 적법한 행정지도에 대해 충실히 따르며, 상호업체에 대한 비방 및 불법조사행위 등을 일체 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19. 8. 14. <table border="0"> <tr> <td>(주) ○○○ 이송센터 대표</td> <td>성명 ○ ○ ○</td> </tr> <tr> <td>(주) ○○○ 환자이송단 대표</td> <td>성명 ○ ○ ○</td> </tr> <tr> <td>(주) ○○○ 환자이송단 대표</td> <td>성명 ○ ○ ○</td> </tr> <tr> <td>식의약안전과</td> <td>성명 김준기</td> </tr> <tr> <td>시민신문고위원회 주심위원</td> <td>성명 김 승 호</td> </tr> </table>		(주) ○○○ 이송센터 대표	성명 ○ ○ ○	(주) ○○○ 환자이송단 대표	성명 ○ ○ ○	(주) ○○○ 환자이송단 대표	성명 ○ ○ ○	식의약안전과	성명 김준기	시민신문고위원회 주심위원	성명 김 승 호
(주) ○○○ 이송센터 대표	성명 ○ ○ ○										
(주) ○○○ 환자이송단 대표	성명 ○ ○ ○										
(주) ○○○ 환자이송단 대표	성명 ○ ○ ○										
식의약안전과	성명 김준기										
시민신문고위원회 주심위원	성명 김 승 호										

조 정 서

민원표시	2019-고-0158 야간 식품접객업소 영업 소음으로 인한 피해 호소
조정일시	2019. 7. 12.(금), 14:00
조정장소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회의실

조정내용

신청인과 피신청인(식품접객업소 ○○○○ 대표, 이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추억상회 영업 소음으로 인한 피해 호소' 고충민원에 대하여 아래의 조정 내용을 수용한다.

가. 우선, 신청인과 피신청인 ○○○○ 은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주어진 여건을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합의하고 지켜 나간다.

나-1) 영업 확성기 불륨은 21시부터는 중간단계로 적정 조정하여 유지하도록 한다.

나-2) 영업일 22시30분부터는 영업장 내에서만 영업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주택과 가까운 테라스 쪽 여닫이문은 닫도록 한다.

다. 위 조정사항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소하도록 한다.

라. 신청인과 피신청인(○○○○ 대표)은 위 조정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항상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19. 7. 12.

신 청 인

성명 ○ ○ ○ (성명)

식품접객업소 ○○○○ 대표

성명 ○ ○ ○ (성명)

시민신문고위원회 주심위원

성명 권 준 우 (성명)

10

북구 어물동 농로 개설 요청

조 정 서

민원 표시	2019-고-0198 북구 어물동 ○○번지 도로(농로) 개설 요청
조정 일시	2019. 7. 26.(금), 14:00
조정 장소	울산광역시 북구청 농수산과 사무실

조 정 내 용

신청인의 '북구 어물동 ○○번지 일원에 도로(농로)를 개설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신청인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농수산과)은 아래의 조정내용을 수용한다.

가. 북구청 농수산과는 2019. 10월까지 북구 어물동 ○○번지 일원에 농로를 개설하도록 한다.

나. 신청인은 북구청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협조하며, 이후 전기 인입과 관련해서는 신청인이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토록 한다.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19. 7. 26.

신 청 인

성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 농수산과 농업정책주무관

성명 정연태 

시민신문고위원회 주심위원

성명 김승호 

조 사 중 해 결

1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19-고-0085(2019. 3. 29.) / 2019. 4. 15.
- 신청인/피신청인 : ○○○(부산시 ○○○) / 중구(회계과)
- 결정결과 : 조사중 해결(주심위원 : 임용균)

1 민원취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으로 사실상 맹지가 된 울산 중구 ○○동 463-5 답 88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공유재산인 같은 동 463-47 답 73㎡, 같은 동 463-48 6㎡(이하 ‘이 민원 공유재산’이라 한다)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게 해 달라.

2 사실관계

- 이 민원 관련 그간 추진 경위
 - 2004. 5. 21. : 이 민원 토지 취득
 - 2007. 5. 31. : 이 민원 토지 건축허가
 - 2007. 7. 12.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소2-8호선 선형 변경)
 - 2015. 4. 21. : 향교일원 구시가지 기반시설 확충사업(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 착공
 - 2015. 10. 28. : 공사중지가처분 소송
 - 2016. 1. 14. : 공사중지가처분 소송 기각
 - 2016. 1. 30. : 향교일원 구시가지 기반시설 확충사업 준공
 - 2016. 9. 21. : 중구 ○○동 463-41을 같은 동 463-47, 같은 동 463-48로 분할
 - 2019. 4. 8. : 이 민원 공유재산 매수 신청 접수(신청인→피신청인)

신청인이 2007. 5. 31. 피신청인으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이 민원 토지는 도시계획도로인 소2-8호선을 주출입로로 계획하였으나 2007. 7. 12.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 주출입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민원 공사를 진행중 피신청인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이후 2016. 9. 5. 이 민원 공유재산을 피신청인으로 부터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기 위해 신청인이 직접

울산 중구 ○○동 463-41를 토지분할 신청하였고 2016. 9. 21. 이 민원 공유재산으로분할되어 2016. 10. 28. 이 민원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이 건설과에서 총무과(현재 회계정보과)로 변경되어 일반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음.

3 판 단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2004. 5. 21. 취득하였고 2007. 5. 31. 피신청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이후 2012. 7. 12. 피신청인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도시계획도로인 소28호선이 동편으로 이동(변경)하면서 이 민원 토지의 건축허가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건축허가시 계획된 주출입로가 변경되어 신청인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피신청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 제38조 제1항 제23호 및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9조 제1항제8호에 따라 이 민원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절차로 신청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임.

4 결 론

피신청인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인에게 수의계약 절차로 매각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안내회신하고 이 민원을 종결함.



2

상수도 급수공사 요청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19-고-0099(2019. 4. 15.) / 2019. 5. 13.
- 신청인/피신청인 : ○○○(남구 ○○○) /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 결정결과 : 조사중 해결(주심위원 : 임용균)

① 민원취지

울산광역시 남구 ○○동 ○○○-○ 1442.2㎡상(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건축물에 대하여 급수공사 시행 요청

②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6. 1. 5. ○○○○(주)을 소유자로 한 이 민원 토지와 이 민원 토지내 건축물 5개동 456.2㎡를 취득하였고 용연저수지에서 생활용수를 공급받아 오던 중 용연저수지의 수량 부족으로 인해 급수가 중단되어 급수선을 이용한 월 20~25톤을 공급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수도급수를 받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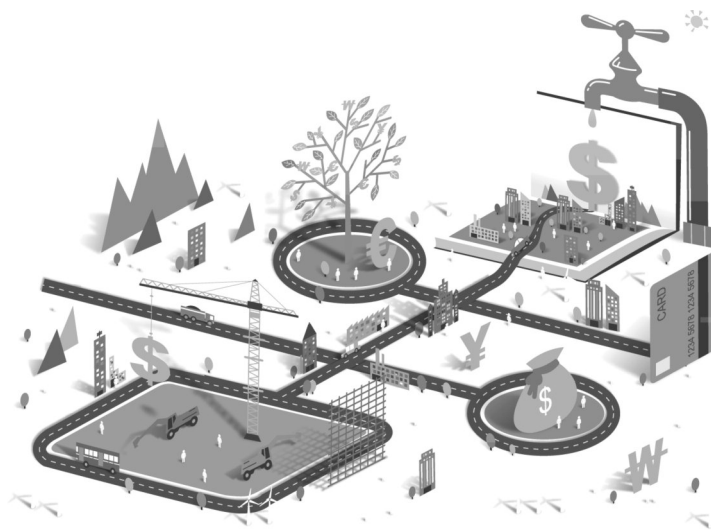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은 2017. 8. 8. ○○○○(주)과 접해있는 용연중계3펌프장의 급수시설 설치를 위해 「울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상수도 인입 급수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를 2017. 8. ~ 2017. 12. 기간 시행하여 급수관로(직경 50~20mm) 800m를 매설하였음.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은 이 민원 급수공사 신청에 앞서 용연중계3펌프장의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주)○○○○(이하 ‘토지 소유자’라 한다) 소유 토지인 울산 남구 ○○동 1-9와 같은 동 484-11중 20.6㎡(연장 206m)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한 토지사용승락을 득하였고 이 민원 공사에 소요되는 급수공사비 약 80백만 원 중 일부인 4천만 원 정도를 신청인이 부담할 것을 협의하였으나 신청인은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부담하지 않은 채 이 민원 토지 인근 약 65미터 지점인 용연중계3펌프장 정문까지 급수시설이 매설된 것을 확인하였음.

3 판 단

이 조례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는 같은 조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급·배수관으로부터 계량기까지 매설된 배관시설과 계량기 및 보호통에 대하여는 시(피신청인)의 소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의 동의 없이도 피신청인은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인으로 부터 급수공사의 신청을 받아 이에 소요되는 급수 공사비를 부담하게 하여 급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고, 타인의 토지 및 건물을 경유하여 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때에는 해당 급수공사 신청인은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함. 이 민원 직접조사 관련 피신청인과의 협의결과 이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 있을시 급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므로 조사 중 종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결 론

신청인에게 이 조례에 따라 급수공사신청이 있을시 급수공사를 시행할 계획임을 안내 회신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급수공사 신청이 있을시 이 민원 급수공사로 인해 급수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조사를 통한 급수공사 설계서를 작성한 후 급수공사를 시행할 것을 협조 요청하기로 함.



3

오수받이 이설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19-고-0223(2019. 8. 12.) / 2019. 9. 23.
- 신청인/피신청인 : ○○○(북구 ○○○) / 울산광역시(종합건설본부)
- 결정결과 : 조사중 해결(주심위원 : 임용균)

① 민원취지

울산광역시 북구 ○○동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건축 공사 시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공사(이하 ‘이 민원 도로공사’라 한다) 관계자가 알려준 도로계획고에 맞게 오수받이를 설치하였으나, 현재 차량의 진출입이 불가함.

② 사실관계

○ 이 민원 관련 그간 추진 경위

- 2017. 10. 19. : 건축허가 접수(건축규모 3층/1동, 연면적 162.35㎡)
- 2017. 12. 29. : 건축 허가(신고)
- 2018. 1. 26. : 착공 신고 처리
- 2018. 7. 3. : 건축 신고사항 변경 (1차) 접수
- 2018. 7. 13. : 건축신고사항 변경 처리
- 2018. 11. 9. : 신고사항 변경 (2차) 접수
- 2018. 10. 31. : 배수설비 준공
- 2018. 11. 13. : 건축 신고사항 변경 처리
- 2018. 11. 19. : 건축 사용 승인 처리

신청인은 2018. 6. 30. 이 민원 토지 내 건축 허가 변경 설계 당시 건축사(설계자)가 이 민원 도로공사 시공사인 ○○건설(주) 건설관계자(이하 ‘이 민원 도로공사 관계자’라 한다)로부터 도로계획고를 확인을 받은 후 2018. 8. 19. 건축공사를 시행하였고 2018. 11. 19. 사용 승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공사 관계자가 도로계획고에 맞게 높이를 알려주었으나 이 민원 건축공사 관계자가 도로계획고에 맞지 않게 주차장 부지를 조성함으로써 도로(인도) 계획고와 약 50cm의 단차가 발생된 것이므로 신청인이 먼저 오수받이를 이설하면 주차장 진입부 토공(절토) 작업을 협조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음.

3 피신청인 의견

2018. 11. 울산 북구 ○○○동 ○○○ 상 건축물(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 허가.시공 시 도로의 계획고를 건축사(건축 시공사)에게 기초 자료로 제공 및 현장에서 도로공사 시공사 소속 ○○○ 부장이 2개 지점에 높이를 표시해 주었으나, 건축 관계자는 도로계획고(인도)와 50cm의 단차가 발생 되도록 시공하였음.

이 민원 건축물 주차장으로 차량이 원활히 진입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진입부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한 토공(절토) 작업이 필요하므로 신청인이 먼저 오수받이를 이설하여야 함.

4 판 단

신청인의 경우 건축 변경 설계 당시 이 민원 도로공사 관계자가 알려준 도로계획고에 맞게 배수설비 등의 공사를 시행하여 2018. 11. 19. 정상적으로 건축공사를 하였으므로 이 민원 도로공사를 담당하는 피신청인이 주차장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오수받이 이설 등의 조치를 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2018. 11. 이 민원 건축 관계자에게 도로 계획고를 제공하고 이 민원 건축 현장에 높이를 표시해 주었으나 이를 이 민원 건축 관계자가 제대로 시공하지 않아 주차장 진입이 불가하게 발생된 것이라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음.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 8. 28.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조사와 2019. 9. 6.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고, 신청인에게는 오수받이 이설, 피신청인에게는 신청인의 오수받이가 이설된 이후 주차장 진입부분의 토공 작업 지원에 대하여 의견 협의를 보았음.

5 결 론

신청인에게는 오수받이에 대한 이설 작업을 시행하고 피신청인은 주차장 진입부 토공 작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안내 회신하기로 함.

4

공공하수도 누수에 따른 지하상가 피해 구제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19-고-0239(2019. 8. 23.) / 2019. 9. 30.
- 신청인/피신청인 : ○○○(남구 ○○○) / 남구(건설과)
- 결정결과 : 조사중 해결(주심위원 : 오영은)

① 민원취지

인근 공공하수도(이하 ‘오수관로’ 이라 한다) 누수 및 역류로 인하여 남구 ○○동 ○○○, 지하 1층에 소재한 신청인의 영업장(이하 ‘이 민원 영업장’ 이라 한다)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으니 그 대책을 강구하고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

② 사실관계

○ 이 민원 진행 경과

[1차 민원 발생]

- 2018. 11. 8. 민원 사항 발생 (지하층 균열로 인한 건축물 내 지하수유입)
- 2018. 11. 14. 하수도 파손구관 확인 후 보수작업 완료
- 2018. 11. 20. 국가배상신청 (신청인 → 울산지방검찰청)
- 2019. 9. 2. 사실조회 요청 회신 (피신청인 → 울산지방검찰청)

[2차 민원 발생]

- 2019. 8. 19. 민원 사항 발생
- 2019. 8. 20. ~ 21. 민원 발생지 현장 조사 및 공사계획 수립
- 2019. 8. 23. 고충민원 접수(신청인 → 우리 위원회)
- 2019. 8. 30. ~ 번개시장 우회 공사, 상인회 반대로 공사 중단
- 2019. 9. 09. 현장 재조사 후, 공사 계획 재수립
- 2019. 9. 10. 도로굴착 준비(경찰서 신고)
- 2019. 9. 20. 공사 시작(09/20, 21:00) ~ 공사 종료(09/21, 03:00)
- 2019. 9. 22.~23. 공사 종료 후 민원인 안내

2018. 11월 이 민원 영업장에 침수피해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피신청인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우수측구 파손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40~50m 떨어진 지점에 오수관로 파손구간이 확인되어 긴급으로 보수작업을 완료하였음. 피신청인에 따르면 당시 파손구간의 오수관로는 1995년 매설된 폴리에틸렌(PE) 재질의 시설물(Φ250)로 관로 주변 도로굴착공사 시 일부가 파손된 후 상당기간 존치된 것으로 추정될 뿐이며 직접적인 파손원인 및 정확한 시점은 확인할 수가 없었음.

신청인은 해당민원 배상을 위해서 2018. 11. 20. 휴업배상 3,000,000원 및 재산손해 2,550,000원을 포함한 국가배상신청서를 울산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음.

2019. 8월 재차 침수 피해(2차 침수)가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되었고 피신청인은 2019 9. 20. ~ 21. 수암로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저지대에 있는 이 민원 영업장 일원(번개시장)으로 오수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수량을 분산하고 오수관 내 수위를 저하시키는 하수도 긴급정비공사를 실시 완료하였음.



3 피신청인 의견

지하층에는 확인불가능한 지하수의 흐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오수관로 파손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피해보상은 불가하며, 다만 해당 지역 일원의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연간 단가계약 업체를 통하여 유지 보수 및 준설 등 하수도긴급공사를 실시할 예정임.

4 결 론

이 민원 영업장에서 2018. 11월 발생한 1차 침수 피해는 현재 국가배상심의제도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가 조사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2차 침수에 따른 피신청인의 오수관로 공사 완료 후, 제17호 태풍 타파의 영향권에 있었던 2019. 9. 22, 23. 양일간 우리 위원회가 신청인과 유선 통화로 확인한 결과 영업장 내 침수 피해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고 신청인 또한 피신청인의 조치에 대하여 만족하였으므로 이 민원은 조사 중 해결된 것으로 종결하기로 함.



5

건축법 위반사항 행정처분 부당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19-고-0270(2019. 9. 19.) / 2019. 10. 28.
- 신청인/피신청인 : ○○○(남구 ○○○) / 남구(건축허가과)
- 결정결과 : 조사중 해결(주심위원 : 김승호)

① 민원취지

울산광역시 남구 ○○동 ○○○○일반산업단지 30B 23L 상 건축물 중 제3동 교육연구시설(창고)의 내부에 설치된 시설물(이하 ‘이 민원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무단증축)으로 판단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 통지한 것은 부당하니 시정 요청

② 사실관계

피신청인은 2019. 7. 22. 산업단지 내 사용승인 건축물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2019. 8. 9. ~ 2019. 8. 30. 22일간 지도점검 실시하였으며, 지도점검 중 이 민원 시설물을 건축물로 보고 건축법을 위반(무단증축) 하였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피신청인은 2019. 9. 9. 신청인에게 「건축법」위반사항 시정명령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음.

2019. 10. 14. 실시한 현지조사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물을 적층식 랙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민원 시설물의 선반(2~3층 바닥)이 층을 구획하여 선반 위에 설치된 랙에는 지게차를 이용한 물품적재 등이 불가능하였음. 또한, 이 민원 시설물의 일부가 기존 건축물과 용접에 의해 연결되어 있었음.

○ 위반사항

종 별	용 도	구 조	면 적	위반내용	위반규정	행위년도
지상2층	교육연구시설(창고)	경량철골조	502.32㎡	무단증축	건축법 제11조	2019
지상3층	교육연구시설(창고)	경량철골조	491.28㎡			

3 피신청인 의견

「건축법」 제2조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 정의하고 있고,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또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수선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신청인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적층식 랙이 KS T 2027(품질, 강도, 안전, 구조, 치수 및 재료기준) 및 관련 지침(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2216, 2008. 7. 3.)에 적합할 경우 바닥면적의 산업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시설물이 적층식 랙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

해당 시설물은 기존 건축물 내 1층 바닥에 철골구조의 기둥을 정착하고 그 상부에 또다시 구조물을 추가 설치하여 2개 층을 증축하여 일부 선반이 설치되어 있고, KS T 2027에서도 적층 랙의 층 선반 상부에 추가로 적층 랙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국토교통부의 질의 회신에서 기재하고 있는 적층식 랙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제2조 및 1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증축한 것으로 판단됨.

4 판 단

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물은 적층식 랙이며, 적층식 랙이 KS T 2027(품질, 강도, 안전, 구조, 치수 및 재료기준) 및 관련 지침(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2216, 2008. 7. 3.)에 적합할 경우 바닥면적의 산업에서 제외되므로 건축법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 민원 시설물이 KS T 2027 및 관련 지침에 적합한지를 살펴보면, 우선 KS T 2027 산업용 랙의 적용 범위는 산업용으로 제공되는 랙 중, 주로 지게차를 사용하여 팔레트에 적재된 물품을 보관하는 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적층식 랙의 선반에 난간 설치 시 화물의 하역을 위해 슬라이드식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적층식 랙이 지게차를 이용한 화물의 하역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함을 나타낸다고 보여짐. 그러나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민원 시설물의 선반이 층

을 구획하여 건축물의 슬라브 형태를 갖추고 있어 선반 위에 설치된 랙은 지게차를 이용한 물품적재 등이 불가능하였으며,

또한, 관련 지침에서는 적층식 랙은 필요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구조적 영향 없이 설치·해체·이전 등이 가능하며, 적층식 랙 자체만으로 토지에 정착하거나 구조적으로 기존 건축물에 영속적으로 일체화되는 구조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창고 내부 등에 설치하였다 하여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사실관계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민원 시설물은 기존 건축물과 용접에 의해 연결되어 있어 위 관련 지침 적용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5 결 론

2019. 10. 14. 현지조사 후 우리위원회는 이 민원 시설물을 적층식 랙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신청인에게 설명하였고, 신청인은 이를 수용하였음. 이에 피신청인은 2가지 조치방안(①이 민원 시설물 전체 철거, ②위 지침 등에 적합하게 이 민원 시설물 조치)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였고, 신청인은 ②방안으로 이 민원 시설물을 조치하기로 하였기에 본 민원은 “조사 중 해결”된 것으로 종결하기로 함.



기 / 각

1

양돈업허가(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양돈보상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19-고-0008(2019. 1. 7.) / 2019. 4. 1.
- 신청인/피신청인 : ○○○(울주군 ○○○) / 울산광역시(도시계획과), 울주군(축수산과, 생태환경과)
- 결정결과 : 기각(주심위원 : 오영은)

1 민원취지

신청인이 운영 중인 울주군 ○○면 ○○리 ○○○-○번지에서 1,074㎡ 양돈 축사(이하 '이 민원 축사'라 한다)에 대하여 허가규모 외 추가시설을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을 해제하거나 해제 불가시 양돈보상을 하여 줄 것을 요청.

2 사실관계

이 민원 축사는 1983. 11. 4. 건축허가를 받았고 신청인은 2009. 12. 30.부터 이 민원 축사를 임대하여 1,074㎡ 부지에 돼지 800~9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축사 전체 면적 1,074㎡ 중 건축물대장상 허가 받은 면적은 434㎡이고 640㎡는 불법 건축물로 증축되어 있으며 일 1.5t에 대한 가축분뇨가 위탁 처리되고 있음.

이 민원 축사가 위치한 울주군 ○○면 ○○리 ○○○-○번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초지법」에 따른 초지 지역·지구로 지정되어 있음.

그간 이 민원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은 다음과 같으며, 피신청인은 분뇨 배출 및 처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사건송치 및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졌음.

- 2010. 6. 10.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벌금 300만원
- 2012. 10. 12. :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과태료 50만원
- 2012. 11. 23. : 공공수역 가축분뇨 유출 사건송치 벌금 500만원

- 2017. 9. 14. : 가축분뇨 야외적치 개선명령 과태료 30만원
- 2017. 11. 7. : 악취측정 복합악취 3배 배출허용기준(15배) 이내
- 2018. 8. 13. :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관리기준 미준수 과태료 50만원
- 2018. 9. 14. : 농장주 요구사항 및 향후 조치사항에 대한 간담회 실시

신청인은 울주군 축수산과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을 위하여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민원 축사가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 있어 적법화 신청이 반려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3 피신청인 의견

울산시 도시계획과

이 민원 축사는 ○○리 산○○-○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1989. 12. 21. 고시)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음. 이 지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여 2020. 7. 1. 일몰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계획 공고가 없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 예정이나,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상 1단계에 포함되어 있어 도시계획시설 해제입안 신청에 따른 수용은 불가함.

울주군 축수산과, 생태환경과

이 민원 축사는 「축산법」 제22조에 의거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피신청인은 축사 환경개선제 지원을 통한 악취 저감 노력을 하고 있으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우선되어야 하며, 적법화 기간 이후에는 관련법에 따라 사용중지, 폐쇄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며, 신청인으로 하여금 사육두수 조정, 악취저감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예정임.

4 판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이 민원 축사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되고 같은 법 부칙 제8조에 따른 허가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가축분뇨법 외 다른 법률에 적합하여야 하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에 저촉되어 허가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적법화를 위하여 이에 대한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이 민원 축사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국토계획법 제85조에 따른 제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입안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의 실효시점인 2020년 7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계획 공고가 없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을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근거한 피신청인의 답변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음.

신청인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및 가축분뇨 야외적치,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등으로 인한 벌금 및 과태료를 5차례 부과 받는 등 해당 시설로 인한 악취 및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KTX 울산역에 인접한 이 민원 축사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관리 및 행정적 조치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무허가 축사시설에서의 양돈에 대한 보상은 향후 관련 행정청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상 규정 등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아직 구체적 행정행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당장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 판단됨.

5 결 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함.



2

과오납 수도 요금 환급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19-고-0047(2019. 2. 12.) / 2019. 3. 18.
- 신청인/피신청인 : ○○○(북구 ○○○) /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 결정결과 : 기각(주심위원 : 오영은)

① 민원취지

신청인은 2015. 5. 11.부터 본인 소유의 북구 ○○○○○○(○○동) 소재 건물(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에서 찜질방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법규에 대한 무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신청인이 영업시작일로부터 2018. 9.까지 수도 요금을 목욕탕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적용함은 부당하니 과오납된 수도 요금에 대하여 환급 요청.

② 사실관계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민원 건물은 2007. 8. 27. 지상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된 이후, 지상2층 제1.2종근린생활시설로 2015. 12. 2. 증축되었고 1층은 찜질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층은 식당으로 운영 중임.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사용 실태카드를 확인한 결과 2007. 8. 13.부터 2018. 8. 31.까지 이 민원 건물에는 1개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신청인의 증축, 영업허가 신청 등 과정에서 급수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별도로 신청한 사항은 없었음이 확인됨.

신청인이 찜질방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5. 5. 11.부터 수도 계량기를 분리한 2018. 8. 31. 사이 이 민원 건물의 수도 사용량은 최저 2톤에서 최대 1,528톤 사이를 오가는 등 일정하지 않으며, 증축에 대한 사용승인 시점인 2015. 12. 2.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저 467톤, 최대 1,528톤으로 월별 사용량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신청인은 이 민원과 같은 취지의 민원을 2019. 1. 23. 피신청인에게 신청한 바 있으며, 피신청인은 업종변경 신고의무가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신고 이전까지 부과한 요금 반환이 불가하다고 2019. 1. 31. 회신하였음.

3 피신청인 의견

요금 적용을 일반용에서 목욕탕용으로 변경하는 업종변경은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이 민원 조례'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수용가에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신고 이전의 사용량을 과오납으로 주장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우며,

이 민원 건물의 1층은 찜질방이, 2층은 식당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 민원 조례 제31조 제2항은 2 이상의 업종이 1개의 계량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요금이 높은 업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조례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한 요금으로 이는 과오납에 해당하지 아니함.

또한, 이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신청인이 제기한 다른 민원과 관련하여 급수전을 별도 설치하여 목욕탕용 요금을 적용할 수 있음을 2018. 3. 고지하였으나, 신청인은 2018. 8. 7.에 이르러서야 급수전 분리를 신청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4 판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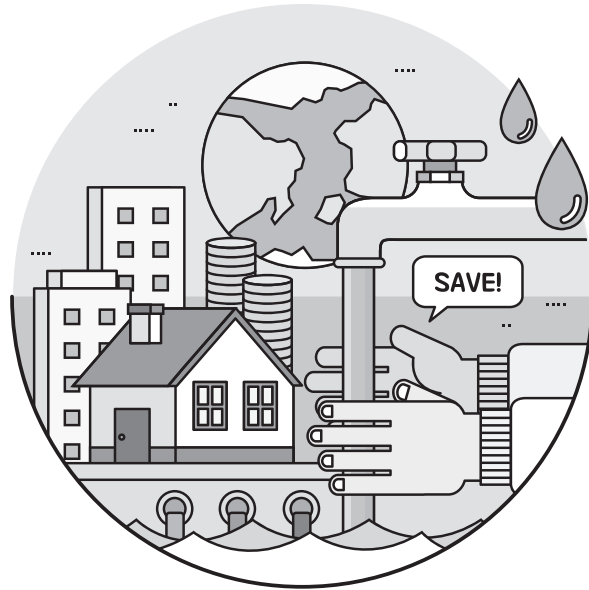
목욕탕용 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3조에 따른 업종변경 신고가 필요하고 이는 수용가에서 부담하여야 할 의무사항이나, 신청인은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은 이 민원 신청서에서 신청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툼이 없는 사실임.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업종변경 신고의무를 고지하여야 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조문 해석을 통해서도 이러한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민원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신고가 필요하다고 고지하여야 했다고 보아야 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의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음.

한편, 이 민원 건물의 1층은 식당이, 2층은 찜질방이 각각 영업 중으로 이 민원 조례 별표 5에 따르면 식당은 일반용 요금이 적용되고 찜질방은 목욕탕용 요금이 적용될 수 있으나, 2018. 9. 계량기가 분리되기 전까지 이 민원 건물은 단일 계량기로 사용량을 검침하여 왔으며 이 민원 조례 제31조 제2항은 2개 이상의 업종에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 높은 요금의 업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용 요금 적용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신청인의 업종변경 신고 불이행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였어야 할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업종에 따라 수도요금 적용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계량기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 높은 요금을 적용하도록 이 민원 조례가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2015. 5. 11.부터 2018. 8. 31.까지 이 민원 건물에 대하여 일반용 요금을 적용 및 부과하여 신청인이 납부한 금액은 과오납에 해당하지 아니함.

5 결 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함.



3

누락된 보상청구(상개~매암간 혼잡도로공사)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19-고-0050(2019. 2. 13.) / 2019. 3. 11.
- 신청인/피신청인 : ○○○(남구 ○○○) / 울산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
- 결정결과 : 기각(주심위원 : 임용균)

① 민원취지

피신청인이 시행 중인 '상개~매암간 혼잡도로공사' 2구간(상개저수지~명동삼거리)에 편입된 울산 남구 ○○동 ○○-○번지내 공장이전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청

② 사실관계

○ 이 민원 관련 그간 추진 경위

- 2015. 10. 14. : 실용신안출원(복합정보 표시장치)
- 공개일자 : 2017. 4. 24.(공개번호 20-2017-0001435)
- 출원인 : ○○○(울산광역시 북구 ○○○, 101동 908호)
- 2016. 8. 11. : 보상계획 공고(공고 제2016-935호)
- 2016. 8. 18. ~ 9. 13. : 보상계획 열람
- 2016. 12. 12. : 보상 협의 요청(종합건설본부 건설부-11288호)
- 2017. 1. 23. : 손실보상금 지급(토지 127,672,120원지장물 62,499,550원)
- 2017. 3. 14. : (주)○ 회사 설립(울산광역시 북구 ○○○ 18, 908호)
- 2017. 3. 30. :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17-58호)
- 2017. 12. 1. : 민원 접수(1차)
- 2017. 12. 13. : 민원 회신(1차)
- 2018. 2. 28. : 민원 신청(2차)
- 2018. 3. 8. : 민원 회신(2차)
- 2018. 3. 28. : 중앙행정심판 청구(중앙행심 2018-05465)
- 2018. 5. 18. : 감정평가사 의견조회 결과 회신
- 2018. 10. 16. : 중앙행정심판 재결(각하)

피신청인은 2016. 8. 11. '상개~매암간 혼잡도로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 2구간(상개저수지~명동삼거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이 민원 토지내 지장물 포함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여 2016. 8. 18. ~ 2016. 9. 13. 기간 동안 토지 및 물건조서, 용지도면 등 관련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피신청인 사무실에서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2. 12. 12. 이 민원 공사 2구간(상개저수지~명동삼거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 소유자에게 「토지보상법」 제16조(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여 2016. 11. 4. 신청인 입회하에 (주)중앙감정평가법인의 1개사에서 감정평가를 위한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음.

신청인은 2017. 3. 14. 일 울산 북구 ○○○ 18,908호(○○동, ○○○○아파트)에 9주○를 설립 등기하였고, 2017. 5. 18. 본점 주소를 울산광역시 남구 ○○○ ○○○번길 ○○(○○동 산○-○○번지)로 변경하였다. 이후 2017. 5. 12. 울산광역시 남구 ○○○ 동 ○○-○번지상에 울산세무서장으로 부터 (주)○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았음.

3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은 특허청에 2015. 10. 14. 출원한 '복합정보표시장치' 실용실안(출원번호 20-2015-0006700)과 2017. 3. 13. 출원한 '디지털 정보 표시기' 3건(등록 제30-0928634호, 제30-0928635호, 제30-0928636호)은 출원일 당시 신청인의 주소는 울산 북구 ○○○ 18,101동 908호(○○동, ○○○○아파트)로 등록되어 있었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2016. 8. 11.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손실보상금으로 산정하였음.

울산광역시 남구 ○○○ 동 ○○-○번지상의 지장물(창고, 컨테이너 등)에 대하여 2016. 11. 4.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현장 답사 시 신청인이 참여하여 물건항목에 대한 평가를 하였고, 평가 당시 신청인은 아무런 이의나 추가적인 감정요구가 없었으며, 이후 2016. 12. 20. 신청인에게 보상협의 요청하여 2017. 1. 23.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음. 감정평가사의 물건조서 및 제반 여건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공장운영 중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차 공장 이전 비용 보상금 청구건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4 판 단

신청인은 2015년 초 이 민원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고 2015. 10. 14. 특허청에 ‘복합 정보 표시 장치’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을 출원하여 2017. 4. 24. 공개실용신안공보에 공개되었고 2017. 3. 13. ‘디지털 정보 표시기’에 대한 디자인 등록을 출원하고 2017. 10. 24. 디자인 등록(제30-0928634호, 제30-0928635호, 제30-0928636호)을 받아 본격적인 제품 생산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7. 3. 14. 울산 북구 ○○○ 18,908호(○○동, ○○○○아파트)에 (주)○를 설립登記하여 2017. 5. 18. 본점 주소를 울산 남구 ○○○ ○○○번길 ○○(○○동 산○-○○번지)로 변경하였고, 피신청인이 2016. 8. 11. 이 민원 공사의 보상계획 공고 이후 2017. 5. 12. (주)○의 사업자 등록을 울산세무서장으로 부터 울산 남구 ○○○ 동 ○○-○번지상에 최초 등록되었음을 알 수 있음.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민원 공사와 관련한 보상계획 공고 및 손실보상 협의시 까지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상에 (주)○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보상계획공고 이전 2015. 10. 14. 실용신안출원 사실은 (주)○의 공장 운영과는 관계가 없다할 것이며, 2016. 11. 4. 이 민원 토지의 감정 평가를 위한 현장조사시 감정평가사인 (주)중앙감정평가법인 외 1개사의 의견 조회 결과에 의하면 물건조서 및 제반 사항상 공장을 운영 중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신청인은 공장영업 보상 및 이전에 관한 추가 감정요구는 없었으므로 피신청인의 이 민원 공사와 관련한 공장이전비용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5 결 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함.

4

북구 국민체육센터 진입 우회도로 개설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19-고-0084(2019. 3 27.) / 2019. 6. 3.
- 신청인/피신청인 : ○○○(북구 ○○○) / 북구(문화체육과)
- 결정결과 : 기각(주심위원 : 김승호)

① 민원취지

국민체육센터 진입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가 좁아 소방차 등 대형차량 진입 시 교행이 어려운 등 불편함이 있으니 국민체육센터 진입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줄 것을 요청.

② 사실관계

국민체육센터 및 이 민원 도로는 2008. 3.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받아 2008. 8. 공사 착공하였고 2009. 11. 공사완료하였다. 2009. 12. 8. 개관하여 현재 월평균 2,000명이 이용하고 있음.

③ 피신청인 의견

신천공원내 국민체육센터 진입로는 호계성당 입구로 진·출입이 가능하고 신천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접한 도로)에 맞추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소에 공원 진·출입로를 개설 중에 있어 신청인이 요청한 진입로 개설을 불가함.

이 민원 도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포함하여 개설되었으며, 공원 조성 계획 당시 이미 협의된 사항이며, 현장확인 결과 주말 호계성당과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차량으로 교행의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이 민원 도로는 폭 7~8m로서 차량 교행이 충분하며, 아울러 이 민원 도로는 국민체육센터 진입 용도 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도로개설하기에는 사업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④ 판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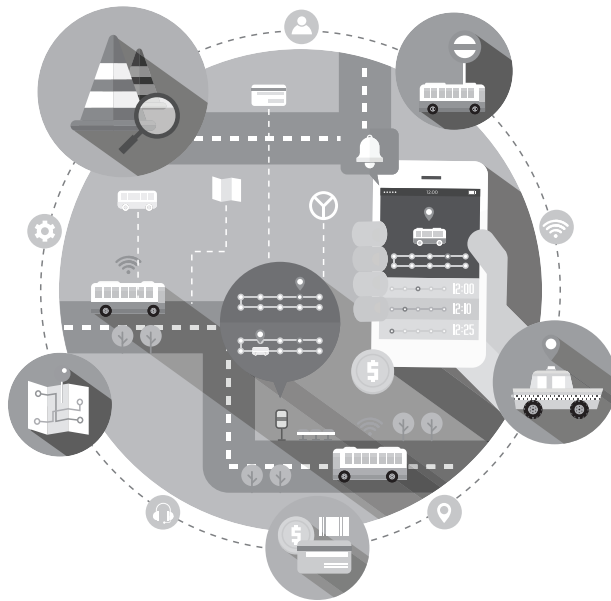
사실관계 및 현지조사 결과 이 민원 도로의 폭은 5m~8m이다. 이는 소방차(중형펌프차량 폭 2.5m 기준, 별지 1참조) 진입 가능 폭 3m이상으로 차량 교행 또한 가능하다 판단됨. 따라서 차량 교행이 충분하며 이 민원 도로는 국민체육센터 진입 용도 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도로개설

은 사업의 필요성이 낮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부당함을 발견할 수 없었음. 다만 일부 커브구간에 대해서는 시야 미확보 등 불편함이 있어 반사경 설치 등 안전조치가 필요해 보임.

또한 신청인이 요구하는 우회도로 개설 시에는 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경관녹지 해제는 가능하나 녹지면적이 감소, ②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신청 동 585-1 임야 6,158㎡는 2000. 3. 10.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재산권 행사 못하고 있음. 2020년 해제예정), ③차량 진출입에 따른 인접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발생(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해야함) 등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어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5 결 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함.



5

농로 확장 요청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19-고-0127(2019. 5. 22.) / 2019. 7. 1.
- 신청인/피신청인 : ○○○(울주군 ○○○) / 울주군(농업정책과)
- 결정결과 : 기각(주심위원 : 임용균)

① 민원취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면 ○○○ 1099-6 답 3683㎡(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로 진출입하고 있는 기존 농로의 폭이 2.0~2.5m로 좁아 영농에 어려움이 있으니 위 농로의 폭을 4m이상으로 확장 요청.

② 사실관계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로 진입하기 위한 기존의 농로가 폭 2.0~2.5m로 협소하여 2019. 4. 1. 피신청인에게 농로확장을 요구하는 민원 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농어촌정비법」 제6조에 따라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서 제출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하며 사회적·공익적 목적에 부합한 사업 중 사업비 투자대비 주민들의 호응도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예산편성 건의 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임.

피신청인은 농로의 경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9. 2. 14. ‘울주군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계획’에 따라 2020. 5. 2.까지 도로기본계획을 재수립 할 계획임.

피신청인은 총사업비(군비) 3,212백만 원을 투입하여 이 민원 토지 인근 울산 울주군 ○○면 ○○마을에서 같은 군 ○○면 ○○○ 구간의 도로확장공사(연장 1.4km 도로폭 8.0m)를 2018. 4. 7. 완료하였음.

[삼남군도5호선(상천~암리) 확포장공사]

- 위 치: 삼남면 상천리, 삼동면 조일리일원
- 공사규모: 도로개설 L=1.4km, B=8m
- 공사기간: 2017. 1. 3. ~ 2018. 4. 7.
- 소요예산: 3,212백만원(군비 3,212백만원)
 - 설계 61, 공사 2,300, 보상 800, 기타 51

3 피신청인 의견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당초예산 수립 시기에 읍.면으로부터 공공사업신청을 받아 사업의 공공성, 시급성, 타당성, 토지사용 동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예산확보의 절차를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바, 현장조사 결과 이 민원 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기존의 현황 농로와 국유지의 지적이 일부 불부합하는 지역으로 판단되며, 추후에 예산사업신청 시 일부 구간의 용수로 복개 검토 및 사유지 동의가능 여부 등을 통하여 교행지 확보를 적극 검토할 계획임.

도시계획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장 제1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 같은 법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에 따라 계획 수립 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의 경우도 예산확보 등의 사유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신청인의 농로확장 요구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며,

신규 도시관리계획(도로) 수립 시 주민수혜도 및 교통량 분산 효과 등 사업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바, 이 민원 토지가 속한 지역은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향후 주변 개발 등으로 인하여 신규 교통량이 증가할 경우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임.

4 판 단

피신청인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법」 제6조에 의한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에 따른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개설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도로를 건설하고 있으며, 총사업비(군비) 3,212,000,000원을 투입하여 이 민원 토지 인근 울산 울주군 삼남면 상천마을에서 같은 군 삼동면 조일리 구간의 도로확장공사(연장 1.4km 도로폭 8.0m)를 2018. 4. 7. 완료하였으므로, 이 민원 토지 옆을 지나는 새로운 도로의 개설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농어촌정비법」 제6조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 수혜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한 인근 농경지는 약 3.2헥타르로 집단화된 지역으로 현재 도로(농로)는 콘크리트 포장되어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나 그 폭이 2.0~2.5m로 협소하여 영농을 위한 농기계 및 차량이 통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기존 농로를 확장하여 최소 4.0~5.0m의 도로 폭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이에 따른 사업비 확보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단시일 내에 공사를 진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 임시방편적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농로 옆 배수로와 하천부지를 활용한 교행지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5 결 론

이 민원 토지의 경우 기존의 도로(농로)폭이 협소하여 농기계 및 차량 통행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기존 농로 옆 배수로와 국·공유지를 활용한 교행지를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이 민원을 종결하기로 함.

6

건축물 사용승인 부적정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19-고-0144(2019. 6. 11.) / 2019. 8. 5.
- 신청인/피신청인 : ○○○(중구 ○○○) / 중구(건축과)
- 결정결과 : 기각(주심위원 : 권준우)

① 민원취지

울산광역시 중구 ○○동 ○○-○○ 소재 건축물(지상 4층, 연면적 328.68㎡)(이하 '이 민원 건축물' 이라 한다)의 사용승인 처리가 위법하므로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

② 사실관계

2018. 5. 4. 이 민원 건축물의 건축주는 지상 4층, 연면적 338.31㎡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8. 5. 18. 착공한 후 2018. 6. 21. 허가사항 변경(연면적 감소(338.31㎡→328.68㎡), 가구 수 감소(5가구→4가구))하여 2019. 1. 29. 지상 4층, 연면적 328.68㎡로 사용승인 받았음.

○ 이 민원 건축물 개요

- 규 모 : 대지면적 194.5㎡, 연면적 328.68㎡, 지상 4층, 1동
- 용 도 : 단독(다가구)주택(4가구)

③ 피신청인 의견

이 민원 건축물은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에 적합하도록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되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되었으며, 설계변경 또한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적합하게 변경허가 처리된 사항임.

④ 판 단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할 건축사는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니어야 하며, 또한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함.

- 2019. 1. 7. 이 민원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신청되어 이 민원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사무소 권○○ 건축사가 2019. 1. 14.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를 실시하고 종합의견을 적합함으로 표시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타 부서 의견조치를 거쳐 2019. 1. 29. 사용승인 처리하였기에 이 민원 건축물의 사용승인 절차상 피신청인의 위법·부당함을 발견할 수 없었음.

「민법」 제242조 제1항에 따르면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半)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건축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북(正北)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어야 함.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된 도면을 살펴보면 이 민원 건축물(외벽마감선)과 인접대지경계선의 이격거리는 0.772m이고, 이 이격거리에 따라 계산된 정북(正北)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는 6.082m로 법적허용 높이는 12.164m($6.082\text{m} \times 2$) 이고 계획된 높이는 11.050m으로 적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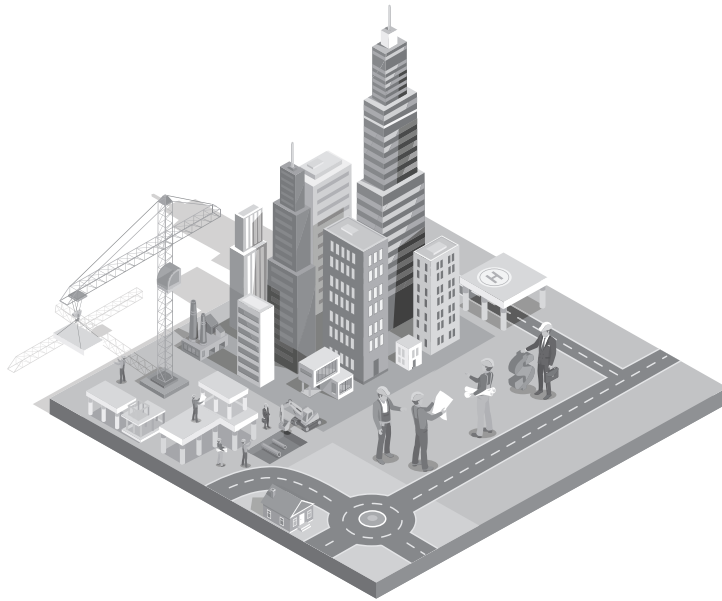
한편 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외벽마감선)과 인접대지경계선의 이격거리가 도면보다 짧게 이 민원 건축물이 시공되었다고 주장하나 2019. 7. 4.과 2019. 7. 16. 두 차례의 현지조사 결과 신청인 및 이 민원 건축물의 건축주가 주장하는 대지경계가 상이 하였으며, 측량 기준점 또한 불명확하였음. 현재 서로 간의 다툼이 있는 이격거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는 2018. 8. 31.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산지사에서 실시한 측량 성과도이지만, 피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측량성과도를 살펴보면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건물 외벽선까지의 정확한 이격거리가 표기되어있지 않아 성과도상 축척 1/500을 감안하여 측정한 결과 0.7~0.8m정도였음.

이를 근거로 「민법」 제242조에 따른 대지경계로부터 건물의 이격거리인 반(半)미터 이상은 확보가 된 것으로 판단되며, 인접대지경계선과 이 민원 건축물의 실제 이격된 거리가 도면상 표시된 0.772m 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불가능함. 다만, 이 민원 건축물의 설계자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한 도면을 살펴보면 「건축법」 제61조에 적합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격거리는 0.7m로, 이는 측량성과도에 근거하여 측정한 수치인 0.7m 이상의 이격거리로 이 민원 건축물이 「건축법」 제61조를 위반하

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향후 신청인 및 이 민원 건축물의 건축주가 측량(경계복원)을 실시한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짐.

5 결 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7

장애인보호작업장 채용 탈락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19-고-0204(2019. 7. 12.) / 2019. 8. 19.
- 신청인/피신청인 : ○○○(울주군 ○○○) / 남구(노인장애인과)
- 결정결과 : 기각(주심위원 : 오영은)

① 민원취지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장 채용공고에 응시하였으나 최종면접 후 탈락하였는데 그 채용과정과 결과의 공정성 여부 확인 요청.

② 사실관계

사단법인 울산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2001. 8. 30. 부터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이 민원 시설’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4]에서 정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서,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과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 및 임금을 제공하며, 향후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며 피신청인은 관련법령 및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사)울산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지회
 - 설립일자 : 1998. 3. 18 (대표 ○○○, 회원 1,438명)
 - 목적 및 기능 : 지체장애인 재활 및 자립도모, 사회참여확대 등
 - 직원현황 : 3명 (지회장 1명, 사무국장 1명, 과장 1명)
 - 예산지원 : 57,800,천원(운영비 30,800천원 / 사업비 27,000천원)
- 장애인보호작업장
 - 설립일자 : 2001. 8. 30.
 - 직원현황 : 18명 (시설장 1, 교사 2, 사무원 1, 근로자 18)
 - 생산품 및 매출액 : 현수막 · 인쇄물 등 홍보물, 908백만원/연
 - 예산지원 : 394,749천원 (시비 59%, 구비 41%)

○○지회는 이 민원 시설의 시설장인 신청인과 2015. 7. 8. 최초 근로계약을 맺고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왔음.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직전 근로계약 기간은 2018. 7. 8. ~ 2019. 7. 7.까지이고 ○○지회는 신청인과의 근로계약 만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2019. 6. 5. 해당사실을 ‘○○○ 시설장 근로계약기간 만료 안내’ 공문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이후 2019. 6. 20. ~ 7. 4.까지 (사)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uappd.or.kr),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wel4u.or.kr), 워크넷(work.go.kr) 사이트에 15일간 공개채용 공지를 하였음.

○○지회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채용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1차 서류전형 응시자 9명 중 신청인을 포함한 합격자 2명에 대하여 2019. 7. 8. 면접을 실시하였고, 인사위원회 구성원은 ○○지회 운영위원 4명(지회장 1, 운영위원3)이며, 면접평가는 ①시설장 자세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의사발표의 논리성 ④사회복지사로서 가치관 ⑤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등 5개 분야 각 20점, 전체 100점을 만점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면접관 중 A, B 2명은 응시자 2명에게 동점을 주었으나 면접관 C는 ‘④’분야에서 5점, 면접관 D는 ‘②, ⑤’분야에서 각 1점씩 신청인을 낮게 평가하였고 최종합격자가 받은 점수는 342점, 신청인은 335점으로 신청인은 7점 차이로 불합격하였음.

○ 이 민원 진행 경과

- 2004. 2. 20. ~ 2007. 12. 31. 직업훈련교사 근무
- 2008. 12. 1. ~ 2010. 12. 3. 직업훈련교사 근무
- 2011. 3. 2. ~ 2019. 7. 11. 시설장 근무(근로계약서 작성 : 2015년~)
- 2019. 6. 5. 시설장 근로계약기간 만료 안내 통보
- 2019. 6. 20. ~ 7. 4. 시설장 채용 공고
- 2019. 7. 8. 면접 실시 및 최종합격자 통보(신청인 재임용 탈락)
- 2019. 7. 11. 신청인 근로계약 종료
- 2019. 7. 12. 고충민원 접수

③ 피신청인 의견

「장애인복지법」 제61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 및 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상황·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할 수는 있으나 시설장 등 종사자 채용에 관하여는 공개모집 실시 및 시설 내부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 할 뿐 그 이상의 지도·감독 권한은 없음.

4 판 단

이 민원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에 근거하여 운영하되, 세부사항은 관련 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따라서 피신청인은 해당 시설장의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제출 및 운영실적 보고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해당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

다만 피신청인의 지도·감독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서 정하는 행정처분 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2006. 12.)인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점검항목은 회계(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계약(공사, 구매), 자산관리(부동산, 장비)에 한정되어 있어 시설장 채용은 지도감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볼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지침」에 의하면 법인 또는 시설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시 내규에 따른 공개모집, 종사자 경력사유 확인, 근로기준법 준수에 한하여 적시하고 있는바, 이 민원 시설의 시설장을 채용하는 과정에 대한 피신청인의 직접적인 지도 감독 권한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음.

한편, 이 민원시설 시설장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 구성 및 합격자 결정과정을 살펴보면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의 인사규정」 제5조에는 지회의 인사위원회 구성을 지회운영위원 중 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지회장이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사위원회를 ○○지회 운영위원 4명으로 구성하였고,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공개채용 사항을 관련 3곳의 사이트에 공고한 후,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하였음. 이 과정에서 합격자 결정은 이 민원 시설 운영 법인인 ○○지회의 인사행정상 행위로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인사위원회가 채용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한 것을 달리 재량권의 남용·일탈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신청인의 책임용 탈락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5 결 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함.

8

용도폐지 요청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19-고-0234(2019. 8. 20.) / 2019. 9. 30.
- 신청인/피신청인 : ○○○(중구 ○○○) / 울산광역시(종합건설본부)
- 결정결과 : 기각(주심위원 : 김승호)

① 민원취지

○○동 ○○○ 소재 LPG 충전소(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의 영업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토지(○○동 310 도 135㎡, ○○동 946-6 도 72㎡, ○○동 947-2 답 20㎡,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용도폐지하여 줄 것을 요청.

② 사실관계

이 민원 사업장은 2014. 1. 27. 건축 허가를 받고 2016. 8. 10. 사용승인 후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LPG 충전소를 운영하여 왔으며, 신청인은 2019. 7. 1.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이 민원 사업장의 내부 차량 통행 불편 및 매년 납부하는 도로점용료의 부담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용도폐지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같은 해 7. 11. 이 민원 토지는 향후 도로 확장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용도폐지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음. 이에 신청인은 2019. 7. 23. 이의 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 해 7. 26. 신청인의 개인적 사유로 용도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장래 사용 목적 및 활용계획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산 관리청이 결정하는 사항임을 회신하였음.

그 간의 경위

- 2019. 7. 1. : 공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신청인⇒피신청인)
- 2019. 7. 10. : 공유재산 용도폐지 검토 보고
- 2019. 7. 11. : 공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에 대한 회신(피신청인⇒신청인)
- 2019. 7. 23. : 용도폐지 불가 이의신청서 제출(신청인⇒피신청인)
- 2019. 7. 26. : 공유재산 용도폐지 이의신청 검토 보고
- 2019. 7. 26. : 용도폐지 불가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피신청인⇒신청인)

3 피신청인 의견

공유재산의 용도폐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목적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공용 및 공공용재산 등 행정재산에 대하여 기존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할 경우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장래 사용목적 또는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용 목적을 상실하여 더 이상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현재 재산의 상태에 맞게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관리청의 내부적인 의사 결정 행위이며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장래 사용목적 또는 활용계획 및 명확한 사유, 도로 및 도로의 용지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 제3조의 2에 따라 복부순환도로 편입 토지는 처분(용도폐지 및 매각)하지 아니하고 기본 원칙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관리함이 타당함.

4 판 단

공유재산법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용도폐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부여하고 있을 뿐 신청인에게 용도폐지를 요구할 법률상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음.

또한 사실관계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개인의 사유 등으로 이 민원 토지의 용도폐지를 요청하였으나, 이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용도폐지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울러 도로의 기능, 장래 사용목적 및 활용계획, 도로 용지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용도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기본 원칙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겠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달리 위법·부당함을 발견할 수 없었음.

5 결 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9

오수중계펌프장 설치 부지 수용 취소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19-고-0253(2019. 9. 2.) / 2019. 11. 25.
- 신청인/피신청인 : ○○○(울주군 ○○○) / 울주군(지역경제과)
- 결정결과 : 기각(주심위원 : 권준우)

① 민원취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이하 ‘이 민원 산단’) 오폐수 및 공업용수 관로 부설사업을 위해 신청인 소유 토지*(서생면 ○○리 ○○○-○번지, 1,744㎡, 답, ‘이하 이 민원 토지’)를 수용하여 오수중계펌프장(이하 ‘이 민원 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취소 요청

② 사실관계

피신청인은 산단절차간소화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18. 8. 7. ~ 8. 27.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를 거쳐 이 민원 시설이 포함된 이 민원 산단 계획(2차 변경) 승인을 울산광역시에 신청하였고, 2018. 9. 20. 아래와 같이 최종 결정 및 고시되었음.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8-217호, 2018. 9. 20.)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명산리 일원

다. 면 적(변경)

- 구역 내 : (기정) 1,017,125㎡ → (변경) 1,022,141㎡ (증5,016㎡)

- 구역 외 : 진입도로 53,157㎡(변경없음), 공업용수가압장(1개소) 718㎡(신설)
오·폐수중계펌프장(4개소) 3,333㎡(신설)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中 발체

다.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9) 하수도(산업단지 외 사업) (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증)3,334	3,334	
신설	64	하수도	오·폐수 중계펌프장	서생면 화정리 765-6일원	-	증)999	999	
	-	이하생략				-		

14. 산업단지 외 사업(변경) 中 발체

나. 오·폐수처리시설(변경)

1) 사업의 목적(변경)

에너지 융합 산업단지에 원활한 오·폐수 처리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하수도 : 오수 중계펌프장) 개설사업 등을
산업단지 외 준용사업으로 시행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명칭 :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오·폐수처리시설 조성사업

이후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오·폐수처리시설 조성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는
이 민원 토지의 측량 및 물건조사 등을 위해 ① 2018. 10. 23. 토지출입 공고, ② 2019. 5. 14. 보상계획*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으며, ③ 2019. 7. 9. 감정평가 실시, ④ 보상 협의(1차 8. 16., 2차 9. 9., 3차 9.
26.)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안내한 바가 있음. * 서생면 화정리 ○○○-○번지(1,744㎡) 중 999㎡ 편입

[보 상 계 획 공 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19-1200호, 2018. 5. 14.)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에너지산업 오폐수 및 공업용수관로 부설사업

나.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다. 사 업 구 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 817번지 일원

라. 사 업 규 모 : 오폐수관로 L=10.9km, 중계펌프장 5개소
공업용수관로 L=11.1km, 중계펌프장 2개소

2. 편입 물건

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 817번지 등 28필지 토지 및 지장물 일체

3. 보상의 시기

가. 2019. 7. ~ 8.경(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

4. 토지 및 지장물 조서 열람/ 5. 보상방법 및 절차/ 6. 감정평가업자 선정 < 내용생략 >

7. 기타 사항

< 중 략 >

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송달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①, ②은 신청인에게 토지등기부등본 상 주소지(온양읍 발리 577번지)로, ③, ④의 경우 실제 주소지로 각각 등기우편 발송하였고, 2019. 6. 26. 신청인과 최초로 통화를 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과 신청인이 2019. 7. 16. 최초 민원 제기한 사실을 고려할 때, 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 결정의 최초 인지 시점은 ②, ③사이로 볼 수 있음.

○ 이 민원 진행 경과

- 2018. 8. 7. : 이 민원 산단 조성 산업단지계획(2차변경) 의견청취 통지* 및 주민열람공고**
* 일반우편(등기부등본상 주소지) ** 인터넷 및 일간신문(울산매일)
- 2018. 9. 11. : 산단 조성 산업단지계획(2차 변경) 협의 의견 제출
- 2018. 9. 20. : 이 민원 산단 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18-217호) ⇨ 이 민원 시설 결정
- 2018. 10. 22. ~ 23. : 토지출입 통지* 및 공고(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18-2349호) * 등기우편(등기부등본상 주소지)
- 2019. 5. 14. : 보상계획 공고* 열람 통지**(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19-1200호)
* 인터넷 및 일간신문(경향신문) ** 등기우편(등기부등본상 주소지)
- 2019. 7. 15. : 감정평가 실시*(이 민원 토지 322천원/m²)
- 2019. 7. 16. : 진정서1 접수 (하수도시설 설치 및 보상 추진 관련)
- 2019. 7. 18. :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1
- 2019. 8. 16. ~ 8. 30. : 1차 보상협의
- 2019. 8. 28. : 진정서2 접수(보상 추진 관련)
- 2019. 9. 2. :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2(지역경제과-39823호)
- 2019. 9. 2. : 우리 위원회 민원 접수
- 2019. 9. 9. ~ 9. 23./9.26~ 10. 10. : 2차 보상협의/ 3차 보상협의
- 2019. 11. 4. : 재결신청(피신청인 →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3 피신청인 의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 민원 시설을 결정하였으며 의무사항이 아닌 토지소유자 개별통지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당 결정을 변경(또는 취소)를 할 수는 없으며, 또한 현재 신청인에게 안내한 사항은 이 민원 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아니라 토지보상 협의와 관련된 사항이고,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를 통해 통지를 갈음하였으므로 통지 방법 또한 적법한 절차임.

4 판 단

이 민원 산단 계획(변경)은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 및 제15조의 2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결정되었으며, 같은 법 제9조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방법을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소유자에 대한 사전통지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민원 시설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피신청인은 보상계획을 신청인의 실제 주소지로 통지하지 못하였으나, 토지보상법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은 토지조서 내용 및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안내를 위한 단계로 ① 등기부등본 및 지적공부 상 신청인을 특정할 수가 없었다는 점, ② 일간신문 공고 등 주민열람 할 수 있도록 조치 된 점, ③ 이후 감정평가 및 협의 안내 통지가 적절하게 이뤄졌고 협의 완료 전까지 서면으로 보상계획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점, ④ 같은 법 제16조 협의 통지 시 소유자나 그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 등 상기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신청인의 행정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음.

5 결 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함.

10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19-고-0268(2019. 9. 16.) / 2019. 10. 28.
- 신청인/피신청인 : ○○○(울주군 ○○○) / 울주군(산림공원과)
- 결정결과 : 기각(주심위원 : 김승호)

① 민원취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면 ○○○○리 산 ○○○-○ 임야 6,658㎡와 같은 리 산 ○○○-○ 임야 2,986㎡ 총 9,644㎡(이하 '이 민원 임야'라 한다)가 1989. 7. 25.부터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으니 이 민원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

② 사실관계

이 민원 임야는 풍치 보존을 목적으로 1989. 7. 25.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경남 울주군 고시 제145호)되었다. 2008. 6. 24. 당시 이 민원 임야의 소유자인 ○○○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를 건의하였으나, 산림청은 「산지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불가함을 회신하였으며, 2011. 11. 25.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요구) 신청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민원 임야가 간월산 자락 계곡 하단부 및 참나무 등이 우량하게 자라고 있는 간월산 자연휴양림 입구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은 신불산 군립 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산지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 해제 요건에 포함되지 않음을 회신하였음.

이 민원 임야의 소유자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4차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를 피신청인에게 건의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산림청과 사전협의하였으나 2008년 산림청 및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민원 임야에 대하여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요청과 관련 불가 회신 받은 이후로 토지이용 상태의 변화가 없으며, 산림청 및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결 처분 받은 민원 건은 특별한 사유 및 해제 요건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에서 재상정을 건의하여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상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았음.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산림청에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에 관하여 재신청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이 민원 임야 소유자

들에게 회신하였음.

2019. 10. 10. 실시한 현지조사에 따르면 이 민원 임야와 접해있는 토지상에 지상 3층, 연면적 433.55㎡ 규모의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으나, 이 민원 임야 및 주변 임야의 수목 상태는 양호하였으며, 또한 한국임업진흥원의 이 민원 임야 정보를 살펴보면 주요 수종은 참나무류로 울폐도가 71% 이상이고 임야 경사도는 20~25°임.

3 피신청인 의견

이 민원 임야는 2007년 ○○면 ○○○○○리 산 ○○○번지에서 분할되었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이 민원 임야 소유자들은 수차례 동일한 목적으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2008년, 2011년 사회적·지역적·주변 여건의 변화 등의 사유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산림청 및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불가 통보받았음.

1989. 7. 25.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 이후 이를 해제할 만한 주변 여건의 변화 등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점과 주변지역에 영남 알프스라 불리 우는 신불산군립공원, 간월산 등이 위치하고 있어 자연경관을 고려할 때 지정목적이 상실되지 않았으므로 해제를 재건의 하여도 상정대상에 포함되기 힘들어 반려 될 가능성이 크며, 「산지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해제는 허용되지 않음.

4 판 단

「산지관리법」 제9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민원 임야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목적은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에 있다고 판단됨.

신청인은 주변 여건의 변화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고 지정 해제를 요청하나, 사실관계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및 2011년 당시 이 민원 임야 소

유자가 사회적·지역적·주변 여건의 변화 등의 사유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산림청 및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불가 통보받은 바 있으며, 사실관계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민원 임야 및 주변 임야의 울폐도가 71% 이상일 정도로 수목 상태가 양호하여 지정목적인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이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지정 당시와 지금 현재 주변지역의 변화 요인을 살펴볼 때 해제할 만큼의 커다란 변화 요인을 찾을 수 없음.

또한 이 민원 임야는 사실관계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임업진흥원의 이 민원 임야 정보상 임야 경사도가 20~25°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해제되어 개발될 경우 대규모 산림훼손이 우려되는 경사도가 급한 지역이며, 또한 이 민원 임야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해제할 경우 형평성에 따라 이 민원 임야 외 이미 지정되어 있는 지역의 추가 해제를 고려해야 되며, 이에 따라 해제될 경우 산발적인 민간 위주의 난개발이 우려됨. 따라서 해제로 인하여 얻게 되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됨.

5 결 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각 / 하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수리 취소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19-고-0070(2019. 3. 11.) / 2019. 4. 15.
- 신청인/피신청인 : ○○○(부산시 ○○○) / 울주군(건축과)
- 결정결과 : 각하(주심위원 : 오영은)

① 민원취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면 소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민원 아파트 입대’라 한다) 구성신고에 범죄경력 조회 누락 등 하자가 있으므로 수리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

② 사실관계

이 민원 아파트는 울주군 ○○면 ○○○길 ○○에 위치하고 1,540세대가 입주하여 있으며, 신청인은 이 민원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로 선정되어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부산 ○○○○ ○○○○3로 1, 428호 소재)의 대표이사임.

피신청인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과 함께 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구비할 것을 안내한 바 있으며, 그 목록은 다음과 같음.

- 선거관리위원 구성 현황 및 결격사유 조회 내역, 공고문
 - 동별 대표자 구성 현황 및 결격사유 조회 내역
 - 동별 대표자 선출 및 개표 현황 공고문
 - 동별 대표자 선출결과(당선) 공고문
 - 범죄경력 조회 이력
 - 동별 대표자가 당해 동의 주택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5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인 경우, 회장 · 감사 선출 및 개표 결과 공고문 · 선출결과(당선) 공고문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감사 선출 회의록, 동별 대표자 선출 · 임기 · 선거구 등이 기재된 관리규약 사본
- 이 민원 발생 및 처리 경과는 다음과 같음.

- 2018. 7. 2. : 입대의 회장 투표 개표 결과 공고 및 구성(변경)신고
- 2018. 7. 6. : 제3기 선관위 위원 공개모집 공고(보궐선거)
- 2018. 7. 12. : 입대의 구성(변경)신고에 따른 보완 요청(2018. 7. 31.까지)
- 2018. 7. 26. : 선관위 신입위원(보궐) 공고
- 2018. 8. 1. : 입대의 구성(변경)신고 보완 요청(2차, 2018. 8. 14.까지), 입대의 구성(변경)신고 보완기간 연장 요청
- 2018. 8. 2. : 보완기간 연장 통보(2018. 10. 31.까지)
- 2018. 10. 25. : 입대의 구성(변경)신고 보완
- 2018. 11. 12. : 입대의 구성(변경)신고 반려
- 2018. 11. 19. : 입대의 구성(변경)신고 재접수
- 2018. 12. 11. : 반려처분 관련 미비서류 및 증빙자료 접수
- 2018. 12. 17. : 입대의 구성(변경)신고 수리 통지
- 2018. 12. 26. : 입대의 구성(변경)신고 취소원 접수에 따른 취소 통지
- 2019. 1. 14. : 이 민원 아파트 입대의 구성(변경)신고
- 2019. 1. 16. : 구성(변경) 신고에 대한 보완 통지
- 2019. 1. 28. : 보완 완료
- 2019. 1. 30. : 구성(변경) 신고 수리 통지
- 2019. 2. 11. : 진정민원 회신
- 구성(변경)신고 시 방문투표 규정이 있는 선관위 운영규정을 확인하였음
- 2019. 2. 18. : 선관위 서류 인계 등 진정민원 제기(주식회사 우일서브)
- 2019. 2. 27. : 진정민원 회신
- 2019. 3. 21. : 입대의 자료제출
- 2019. 3. 25. : 진정민원 회신
-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에는 해당되지 않음
- 사실관계 확인 결과, 입대의에서 도급비를 지급하였음

③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은 ○○○○아파트 이 민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민원 아파트 선관위’라 한다) 위원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된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신고 당시 범

죄경력 조회 이력은 물론 제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르며 신고에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었음.

4 판 단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자치 의결기구이고,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법」 제7조 및 제52조에 따라 위탁 또는 위임에 따른 수탁인·수임인의 지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을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집행기관에 해당하며,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간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 또는 위탁에 따른 계약관계로 보아야 할 것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쟁송은 별론으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변경에 따른 신고 수리 행위가 주택관리업자의 수탁 또는 수임 관계 등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피신청인의 수리 행위에 대하여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민원의 신청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신청인은 이 민원 아파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선관위 위원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 등 규정에 따라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결격사유 존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신고하여 하자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수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을 통하여 제출된 자료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민원 아파트 선관위 위원장은 2018. 9. 18. 범죄경력 조회 의뢰를 위해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게 동의서를 징구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해당 경찰관서에서 2018. 9. 27. 조회 결과를 회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근거하였을 때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함.

한편, 신청인은 이 민원 아파트 입대의 2018. 10. 25. 구성신고 보완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2018. 11. 12. 반려 처분을 하였고, 2018. 11. 19. 재접수된 신고를 2018. 12. 17.에 수리한 후 2018. 12. 26. 이를 취소하였음을 근거로 동별 대표자를 다시 선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반려 처분 등은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입대의 임원수 미달에 대한 보완 필요 등에 따른 조치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

5 결 론

신청인의 신청은 당사자 적격을 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각하함.

2

지역주택조합 토지매매 계약 채무불이행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19-고-0125(2019. 3. 11.) / 2019. 6. 11.
- 신청인/피신청인 : ○○○(중구 ○○○) / 주식회사 대협이앤)
- 결정결과 : 각하(주심위원 : 김승호)

① 민원취지

울산광역시 북구 ○○동 ○○-○ 전 827㎡(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대한 신청인의 공유지분 1/2을 피신청인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으로써 채무를 확정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이행하지 않으므로 이행하여 줄것을 요청.

② 사실관계

신청인이 제출한 판결문(울산지법 2016. 4. 22. 선고 2015가단21904 판결 및 2016. 12. 21. 선고 2016나2017 판결)을 통하여 이 민원 토지의 매매계약은 2014. 6. 23. 성립한 사실과, 피신청인 법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매매잔대금 등 45백만원의 채무가 확정된 사실이 확인됨.

③ 판 단

이 민원은 소송을 통해 확정된 사인 간의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직무관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례 제17조 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다만, 소송 등 다른 권리구제 방안에 대하여 2019. 5. 30. 상담 및 안내하였음.

④ 결 론

이 민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기에 부적합하므로 각하하기로 함.

3

사유지 내 수도계량기 등 이설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19-고-0212(2019. 7. 20.) / 2019. 8. 5.
- 신청인/피신청인 : ○○○(남구 ○○○) /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 결정결과 : 각하(주심위원 : 임용균)

① 민원취지

신청인 소유 토지인 울산광역시 남구 ○○동 ○○○-○ 내 위치한 수도계량기 및 통신 맨홀을 이설하여 줄 것을 요청.

② 사실관계

신청인의 소유 토지인 울산광역시 남구 ○○동 ○○○-○ 대 146.8㎡(이하 ‘신청인 토지’라 한다) 중 일부를 인근 토지 울산광역시 남구 ○○동 ○○○-○ ○○아파트(이하 ‘○○아파트 토지’라 한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인은 울산지방법원에 토지 인도를 요청하는 소송(2015가단59060)을 제기하였음. 이에 재판부는 측량 감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별지]의 감정서와 같이 ○○아파트 토지 내에 수도계량기와 통신 맨홀, 신청인 소유 담장이 위치하고 있어 2016. 5. 27. 원고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이후 울산지방법원 2016나21681로 항소하여 2016. 10. 5.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6다261359로 상고하여 기각되었음.

③ 결 론

신청인의 고충민원을 각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민사3단독)
감 정 서

사건번호: 0000가단 0000 토지인도

원 고: 000

피 고: 000 외 7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감정한 결과는 아래 및 별지 감정도와 같음.

감 정 사 항

울산광역시 남구 00 동000-0(415.2㎡), 000-0(146.8㎡)번지에 대하여 원고(000)와 피고(000 외7)간 토지에 대하여 토지인도 등 측량감정함.

감 정 결 과

1. 울산광역시 남구 00 동000-0번지(146.8㎡)에 대하여 측량감정결과 별지 감정도 부호1,8,2,3,4,1의 각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부분은 원고 소유토지임.

2. 울산광역시 남구 00 동000-0번지(415.2㎡)에 대하여 측량감정결과 별지 감정도 부호5,6,10,2,8,1,7,5의 각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부분은 피고 소유토지임.

3. 부호8,9,10은 원고 소유 담장임.

4. 부호 가 부분은 피고 소유 수도 계량기로 000-0 번지에 위치함.

5. 부호 나 부분은 피고 소유토지 000-0번지에 위치한 통신맨홀임.

위와 같이 감정하였음

2015년 12월 일

감정인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10길(성안동 852-4)

주민등록번호

지적기사

4

도시가스 인입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19-고-0276(2019. 9. 26.) / 2019. 10. 28.
- 신청인/피신청인 : ○○○(중구 ○○○) / 도시가스배관 시공자
- 결정결과 : 각하(주심위원 : 김승호)

① 민원취지

울산광역시 중구 ○○동 394-17 대지와 도로 사이에 사유지(같은 동 939-2 도)가 있어 이 사유지에 대한 동의서를 받지 못해 현재 도시가스 인입을 못하고 있으니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

② 사실관계

위 사유지의 소유자를 파악하여 신청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미 위 사유지에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하였으며 이에 도시가스의 인입신청을 위해 공사도면이 필요한데, 도시가스배관 시공자에게 도면을 받지 못하였고 연락처도 없으니 배관시공자를 찾아서 해결하여 달라고 우리 위원회에 요청.

③ 판 단

따라서 본 고충민원은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7호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해당하여 우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에서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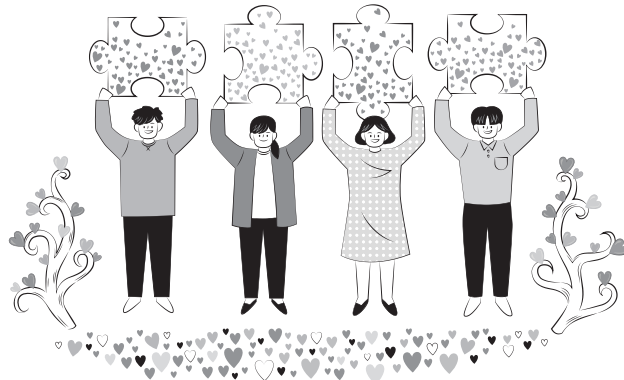
④ 결 론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운영 규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본 고충민원을 각하하기로 함.

2. 공공사업의 청렴계약 감사·평가 활동 결과

주 / 요 / 사 / 례

연번	내 용	관계기관	조치의견	주심위원
1	옥동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총괄과)	시정권고	김승호
2	용연하수처리구역 중계5펌프장 일원 차집 관로 정비사업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	권고	임용균
3	화봉제1공원 공영주차장조성사업	울산광역시 (교통기획과)	권고	임용균
4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공사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권고	임용균
5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1차)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	권고	김승호
6	덕하공영차고지 조성 공사	울산광역시 (버스타픽과)	권고	오영은
7	일산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디자인과)	권고	오영은
8	무기응집제 구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권고	권준우



활 / 동 / 결 / 과

1

옥동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시정권고)

① 사업목적

여천천과 상여천천 일원의 침수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휴식 및 여가 공간 활용 등 복지증진을 도모

②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일원

- 위 치 : 남구 옥동 596-2번지 일원
- 기 간 : 2016. 2 ~ 2019. 3.
- 규 모 : 40,816㎡(저류용량 136,000㎥)
- 사 업 비 : 7,500백만원(공사비 3,563백만원)
- 공사업체 : (주)태현건설

○ 추진현황

- 2016. 3. 9. :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7. 6. 12. : 사전설계 심사 완료(행정안전부)
- 2017. 8. 16. :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 2017. 12. 12. : 공사 착공
- 2018. 7. 24. : 문화재 시·발굴조사용역 완료
- 2018. 10. 18. : 지반조사 및 시험발파 완료
- 2018. 10. 31. : 발파공사 시행
- 2019. 3. 31. : 공사준공

③ 감시·평가 활동사항

○ 추진일정

- 2019. 3. 25. : 2019년 청렴계약 감시·평가활동 계획 수립(위원회 의결)
- 2019. 3. 27. : 청렴 감시·평가활동 계획 알림해당기관(부서)
- 2019. 7. 23. : 자료 제출 요청
- 2019. 7. 30. : 현장조사
- 2019. 7. 31. ~ 8. 30. : 자료 검토

○ 현장활동 사진



④ 감시·평가 결과

○ 설계용역 감독 부실로 인한 설계변경

-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현장여건이나 민원발생에 따라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사업의 설계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벌목 및 벌개제근 실물량 반영’ ‘흙깎기 건설기계 변경’ ‘수목 실물량 반영’이 있었음. 우선 ‘벌목 및 벌개제근 실물량 반영’을 살펴보면 당초 설계상의 벌개제근 물량은 4,820m³로 일부구간만 산정한 것으로 최종 변경된 물량은 7,418m³(증 2,598m³)로 약 54%가 증가하였음. 그리고 ‘흙깎기 건설기계 변경’의 경우 당초 설계상 토사를 깎으며 적재하는 장비로 도우저가 반영되어 있었으나, 도우저는 토사를 적재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라 토사를 깎으며 적재할 수 있는 백호우로 변경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수목 식물량 반영'은 수목 이식 수량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현장 내 이식' 공정의 상수리나무는 111주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은 81주만 식재되어있었음. 또한 '타지역 반출 이식' 공정의 상수리나무 외 4종이 28,760주, 꽃댕강나무 2,050주로 설계되어있으나, 상수리나무 외 4종은 식재되어 있지 않으며 꽃댕강나무는 1,578주만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설계변경하였음. 위 사항은 설계용역 시 현장 확인 등 용역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설계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특히 수목 이식 수량의 과다 계상은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항이었음.

○ 우수저류시설의 활용

- 옥동 우수저류시설은 배수구역 내에 홍수방어능력을 초과하는 우수유출량을 경감시켜 침수피해 최소화 및 저류된 빗물을 하천의 유지용수로 활용, 상시 빗물이 저류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 등 우수유출저감 외 문화·환경적 측면으로 이용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저류용량 136,000m³(부지면적 40,816m²)으로 울산 최대 규모임. 그러나 현재 저류량의 부족, 기온 상승, 우수의 정체 등으로 부유물 생성 및 악취로 주민들의 여가공간으로의 활용이 어려워 보이므로 남구청에서는 부유물 제거작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현재 남구는 담수화된 물을 이용하여 수질을 유지하고 하천유지수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5 조치사항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설계용역의 오류로 인하여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용역감독의 부실로 인한 것으로 이는 행정력 낭비와 경우에 따라 예산의 낭비까지 초래하므로 향후 설계용역 시행 시 용역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시정권고 함.

울산 최대 규모의 저류시설로 조성된 만큼 저류시설의 다양한 활용방안(친수 및 교육공간 등) 및 준공 후 발생하는 악취 등 문제의 해결방안(수질개선제 투입, 수생식물 식재 등)을 모색할 것을 시정권고 함.

2

용연하수처리구역 중계5펌프장 일원 차집관로 정비사업(권고)

① 사업목적

용연 중계5펌프장 시설물 노후와 삼산동 일원 하수관로 노후.역구배로오수가 역류되는 5펌프장 일원 차집관로 정비를 통한 시민 주거환경 개선

②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위 치 : 남구 여천천 일원
- 사업규모
 - 펌프장(135,000m³/일)
 - 관로부설(D1,200~1,500mm, L=1.93km)
- 사업기간 : 2016년 ~ 2019년(90%)
- 사업비 : 29,188백만 원(국비 5,838, 시비 23,350)
 - 설계비 1,023, 건설사업관리 1,451, 공사비 26,051, 부지매입 663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8 이전	2019	2020	2020 이후
계	29,188	20,301	8,887	-	-
국 비	5,838	3,536	2,302	-	-
시 비	23,350	16,765	6,585	-	-

○ 추진현황

- 2016. 4. 26.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완료 : '17. 2. 19.)
- 2017. 3. 28. : 지방건설기술심의
- 2017. 8. 22. : 공사 착공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018. 4. 20. : 설계변경(1차)
 - 총공사비: 22,833백만 원(도급 16,324, 관급 6,509)
 - 사 유: 시공물량 정산, 성능개선, 현장사무실 설치계획 변경 등
- 2018. 11. 28. : 설계변경(2차)

- 총공사비: 23,557백만 원(도급 17,273, 관급 6,284)
- 사 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폐기물 선별처리 등

○ 향후 추진계획

- 2019. 7월 : 시운전 착수
- 2019. 8월 : 공사 준공

3 감시·평가 활동사항

○ 추진경과

- '19. 3. 25. : 2019년 청렴계약 감시·평가활동 계획 수립(위원회 결)
- '19. 3. 27. : 청렴 감시·평가활동 계획 알림(해당 기관(부서))
- '19. 5. 8. : 현지 조사 및 현황 설명
- '19. 5. 8~5. 16. : 설계도서(설계변경 1, 2회)자료 검토
- '19. 5. 14. ~5. 16. : 설계변경 검토보고서 등 관련 자료 요구

○ 활동내용

- 입찰공고 등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
-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에 관한사항
-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설계 예산서 및 설계 변경(1차, 2차)에 관한 사항 등



○ 공사현장 현황사진



여천천 건설자재



여천천내 터파기 및 시설물



여천천내 임시가도



여천천내 각종 건설자재

④ 감시·평가 결과

○ 우수기전 여천천내 토사 및 공사용 자재 등 각종 지장물 정비

- 여천천내 각종 우수지장물(토사, 각종 건설자재, 임시 가도 등)로 인해 유로가 차단되고 공사용 임시가도로 인해 우수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우수기 집중호우로 인한 현재 건축중인 중계5펌프장과 여천천 내 설치된 산책로 등의 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각종 우수지장물에 대하여 2019. 5월중으로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긴급 공고의 부적정

- 본 사업은 추정가격 19,087백만 원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5조제3항 제3호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전에 공고하여야 하나 발주부서인 하수관리과에서는 ①기존의 차집관로가 노후화 되고 역구배로 오수가 역류되어 여천배수장 유입과 삼산지역 배수 불량과 집중 호우시 기존 펌프장 침수 문제 해소를 통한 수질오염 방지 및 안정적 하수처리체계 구축 시급 ②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기존 펌프장 일원에 건설중인 「울산시립도서관」개관(2018. 3.) 전 준공코자 계획하였으나, 공사 발주전 행정절차(설계경제성검토, 지방건설기술심의, 계약심의, 일상감사 등) 이행으로 2019년 준공 불가피 ③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긴급입찰을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 등을 이유로 2016. 6. 16. 조달청에 긴급 입찰을 의뢰하여 17일간 공고(기간: 20'17. 7. 4. ~ 2017. 7. 21.)하였음.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3항 :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0일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40일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긴급입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①「지방계약법」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 ③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의 불가피 ④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발주부서인 하수관리과의 긴급입찰 사유는 사업 착공후 공정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에도 긴급 입찰로 인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제한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실시설계 부적정

- 발주부서인 하수관리과는 2016. 4. 20. 도화엔지니어링(주)와 3개사와 계약체결하여 2016. 4. 26. ~ 2017. 5. 18.기간 '용연하수처리구역 중계5펌프장 이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고, 2017. 6.경 공사발주 방안을 검토후 부산지방조달청에게 의뢰하여 2017. 7. 4. 본 공사 입찰공고를 하였음. 이와 같이 2017. 5.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음에도 스테인리스 난간설치

(h=0.9m)의 단가 적용을 2017년도 변경된 건설공사 표준품셈 단가가 아닌 2016년도 공설공사 표준품셈 단가를 적용하므로써 잡철물 제작단가가 이중으로 계상되어 당초 총공사비 대비 3,300,000원의 예산을 초과 계상하여 예산을 낭비하였음.

⑤ 조치사항

우수기 집중호우시 대비한 여천천내 각종 유수지장물(토사, 각종 건설자재, 임시 가도 등)에 대하여 2019. 5월중으로 정비할 것과, 향후 각종 공사 발주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긴급 입찰공고를 행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공사시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실시설계시 건설표준품셈의 변경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장은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이후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함.



3

화봉 제1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권고)

① 사업목적

화봉 제1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 편의 제공 및 화봉 제1공원 주변지역의 주차난 해소

②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위 치 : 북구 화봉동 445-1번지(화봉제1공원 지하)
- 기 간 : 2018. 3. ~ 2020. 3.
- 규 모 : 주차장 조성 130면(A=4,361㎡)
- 예산액 : 8,000백만 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비 고
계	8,000	2,000	1,620	4,380	
국 비	3,500	2,000	1,500		
시 비	4,500	-	120	4,380	

○ 추진현황

- 2017. 6. :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완료
- 2018. 3. : 실시설계 용역 착수(' 18. 10월 완료)
- 2018. 8. : 도시관리계획(화봉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2018. 12. : 주차장 조성공사 착공(1차분, 건축·토목)
- 2019. 2. : 주차장 조성공사 착공(소방, 전기, 통신, 폐기물, 감리)
- 2019. 11. : 전체 공정률(64.0%), 구조물 벽체 및 슬라브 작업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2020. 3. : 공사 준공

3 감시·평가 활동사항

○ 추진경과

- 2019. 3. 25. : 2019년 청렴계약 감시·평가 활동 계획 수립·의결
- 2019. 3. 27. : 청렴계약 감시·평가 활동 계획 알림(해당 기관(부서))
- 2019. 10. 28. : 청렴계약 감시·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요청
- 2019. 10. 31. : 현지 조사 및 공사 추진 현황 점검
- 2019. 1. 25. : 설계도서(설계변경 포함) 등 자료 검토

○ 활동내용

- 연약지반 개량에 관한 사항
-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 공사장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 민원 발생에 따른 처리 사항

○ 활동사진



현장감리, 시공사 공사현황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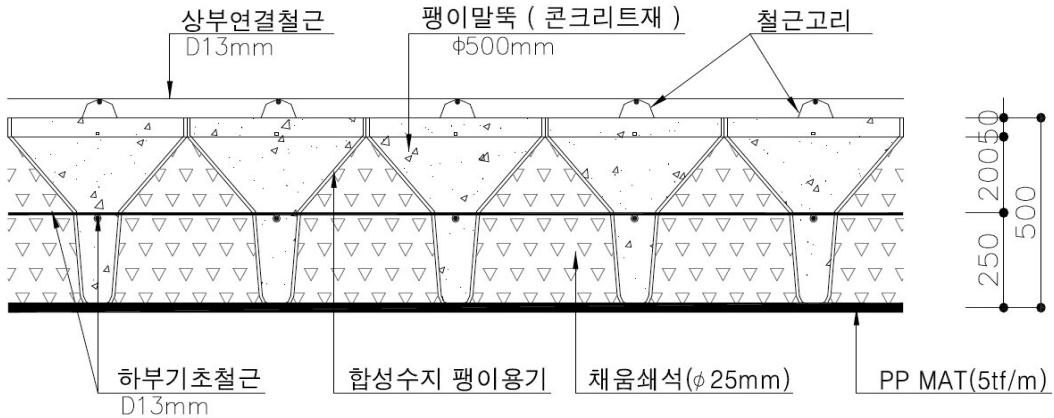
방수공사 시공 현장 확인

4 감시·평가 결과

- 현장 타설 팽이말뚝의 규격(φ 500형) 착오로 인한 지반고(GL) 변경(GL 21.85 → GL21.50, 토공 수량 증가)
 - 본 공사의 지반보강 기초공법으로 PHC 말뚝, 소구경 말뚝방식, 지내력 기초공법을 비교하여

현장여건과 지질(토질)에 맞는 현장타설 팽이말뚝 기초공법(지내력 기초 공법)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되며, 팽이말뚝의 기본적인 시공형태는 그림 1과 같음.

[그림 1] 팽이말뚝의 시공형태



- 그러나 당초 실시 설계 시 팽이말뚝의 형상과 규격, 시공방법에 따른 지반고(GL)를 결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팽이말뚝의 높이인 500mm를 200mm로 잘못 반영하여 터파기 물량을 계상함으로써 350mm의 추가 터파기와 주차장 진입부의 접속 계획 변경으로 인한 토공량의 증가로 약 30,811천 원의 공사비가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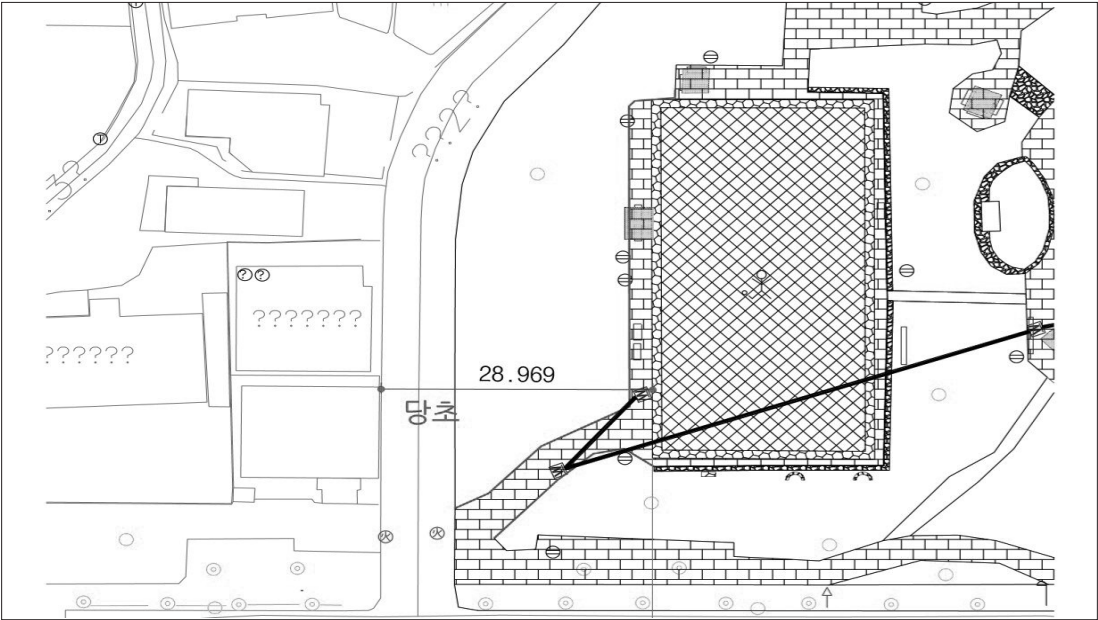
○ 철근 미가공 수량 등에 대한 설계 변경으로 예산 절감

- 당초 설계 시 본 공사에 소요되는 철근 777.767톤을 공장에서 가공하여 현장에서 조립·시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나, 기초 및 슬라브(slab) 부분의 일부 철근(8m 이상)을 미가공 상태에서 시공이 가능한 수량을 조정(△259.942톤)하고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현장 철근 가공(517.825톤)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도금액 기준 약 20,623천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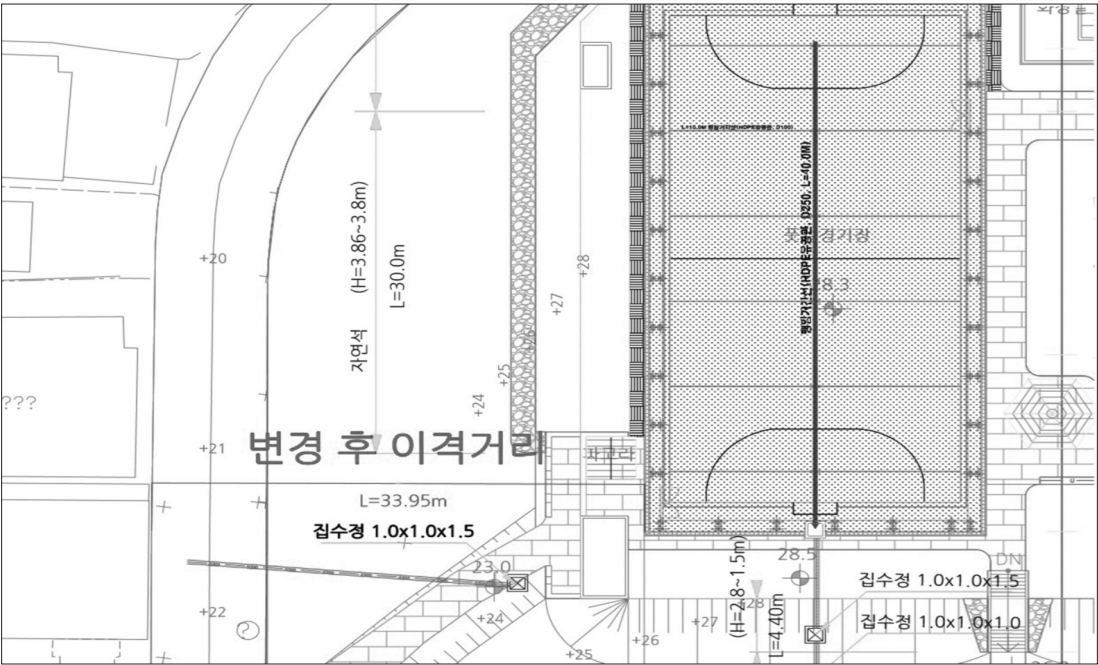
○ 주차장 확보에 따른 화봉 제1공원 주변 소음 민원 발생 예상

- 설계서상에 계획된 풋살경기장과 인근 주택지와의 평면 이격 거리는 33.9m로 당초 거리 28.9m보다 약 5m정도 더 이격될 것으로 보이고, 계획고의 경우 당초 23.9m보다 4.40m가 더 높은 28.30m로써 본 공사에 따른 소음은 대비 증가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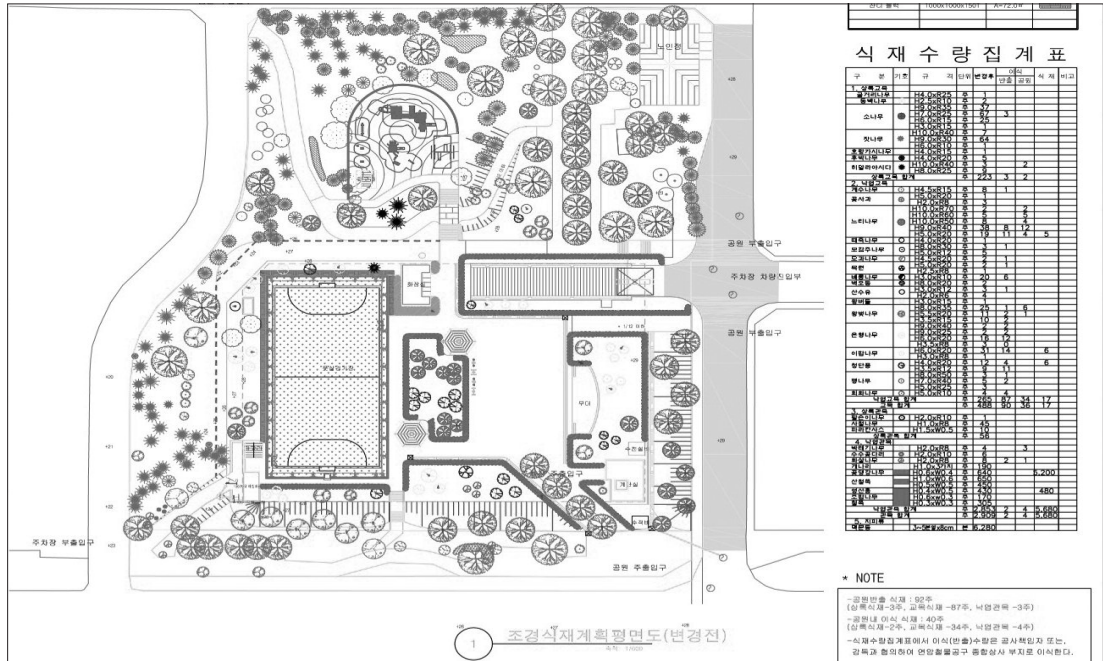
[그림 2] 본 공사 전 풋살경기장 위치



[그림 3] 본 공사 계획평면도상 풋살경기장 위치



[그림 4] 식재계획 평면도



화봉 제1공원(풋살경기장) 인근 주택지 소음 발생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목 식재 계획을 주택지와 연결한 곳으로 수종과 수량을 조정 또는 추가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함

4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공사 (권고)

① 사업목적

산업로(국도7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로 주민 교통편의 제공 및 광역 및 지역 간 산업 물류비용 절감

②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위 치 : 북구 신천동 신답교 ~ 경주시계(국도7호선)
- 사업규모 : 도로확장 L=4.63km, B=20→30m(4→6차로)
- 사업기간 : 2014. ~ 2021. (공정률 27%)
- 사 업 비 : 89,123백만원(국비 44,561, 시비 44,562)
- 공사비 54,555, 보상비 31,153, 기타 3,415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8년 이전	2019년	2020년	2020년 이후
계	89,123	79,102	2,065	7,956	-
국 비	44,561	39,513	2,065	2,983	-
시 비	44,562	39,589	-	4,973	-

○ 추진현황

- 2007. 12. :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광역도로/국비50%)
- 2013. 11. :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 2015. 4. : 업무이관(건설도로과→종합건설본부)
- 2016. 9. : 공사 착공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017. 12. 12. : 설계변경(1차)
 - 총공사비 : 43,974백만원(도급 29,651, 관급 14,323)
 - 사 유 : 지장 상수도 이설 등 실정보고 승인사항 반영
- 2018. 3. 20. : 공사기간 연장

- 공사기간 : 2016. 9. 5. ~ 2019. 9. 4. → 2016. 9. 5. ~ 2021. 3. 4.
- 사 유 : 공사구간 내 지하매설물(가스관, 송유관 등) 이설 지연
- 2018. 12. 19. : 설계변경(2차)
- 총공사비 : 43,846백만원(도급 30,533, 관급 13,313)
- 사 유 : 철도보호지구내 협의사항(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배치) 외 실정보고 승인사항 반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2019. 6. 현재 : 교량(3개소) 확장구간 등 공사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2021. 3. : 공사 준공

3 감시·평가 활동사항

- 추진경과
- 2019. 3. 25. : 2019년 청렴계약 감시·평가활동 계획 수립·의결
- 2019. 3. 27. : 청렴계약 감시·평가활동 계획 알림(해당 기관(부서))
- 2019. 5. 17. : 청렴계약 감시·평가 실시에 따른 자료 요청
- 2019. 5. 22. : 현지 조사 및 현황 설명
- 2019. 6. 14. ~ 7. 1. : 설계도서(설계변경 포함) 등 자료 검토
- 2019. 7. 2. : 현지 조사(2차)
- 활동내용
-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에 관한 사항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의무사용에 관한 사항
- 설계 예산서 및 설계 변경(1차, 2차)예산서에 관한 사항 등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 활동사진



사업 추진현황 설명



약수천내 유수 지장물

④ 감시·평가 결과

○ 공사 착공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미수립에 따른 민원 발생

-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에 의거 도로점용공사는 도로중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거나 보도를 점용하고, 점용기간이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1)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발주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후 울산광역시장(당시 교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교통소통대책을 검토 받아야 함에도 교통소통대책 수립·검토 없이 2016. 9. 5. 본 공사를 착공하였고, 당초 실시설계시 경동그린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한 U턴 차량이 약수초등학교에서부터 약 650m 떨어진 중산교차로(화정마을 입구)에 위치하여 약수마을 주민들로부터 교통 불편 민원이 제기되자 2018. 6. 28. 교통소통대책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8. 7. 26. '울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사기간 단계별 교통관리계획에 따라 교통체계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였음.

○ 실시설계용역의 관리·감독 철저히 설계 변경 최소화

- 본 공사의 설계 변경 사유를 살펴보면 1)기존 수로 이설과 관련하여 현장여건과 당초 설계가 상이하여 수로 연장을 추가(당초 0m(2.5×2.0), 변경 213m(2.5×2.0)) 2)지장 가옥의 누락으로 구조물 깨기 물량 및 건설폐기물 처리물량의 증가(당초 19필지 건물 헐기 2,648㎡, 변경 22필지 건물 헐기 7,172㎡) 3)지장 가로수의 이식 수량 미반영(당초 미반영, 변경 뽕나무, 팡나무 등 7,972주) 등 대부분 실시설계시 현장여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거나 수량 누락으로 설계 변경되어 공사비가 증액되었으므로 건설공사 추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실시설계시 부터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하천내 토사 및 공사용 자재 등 각종 지장물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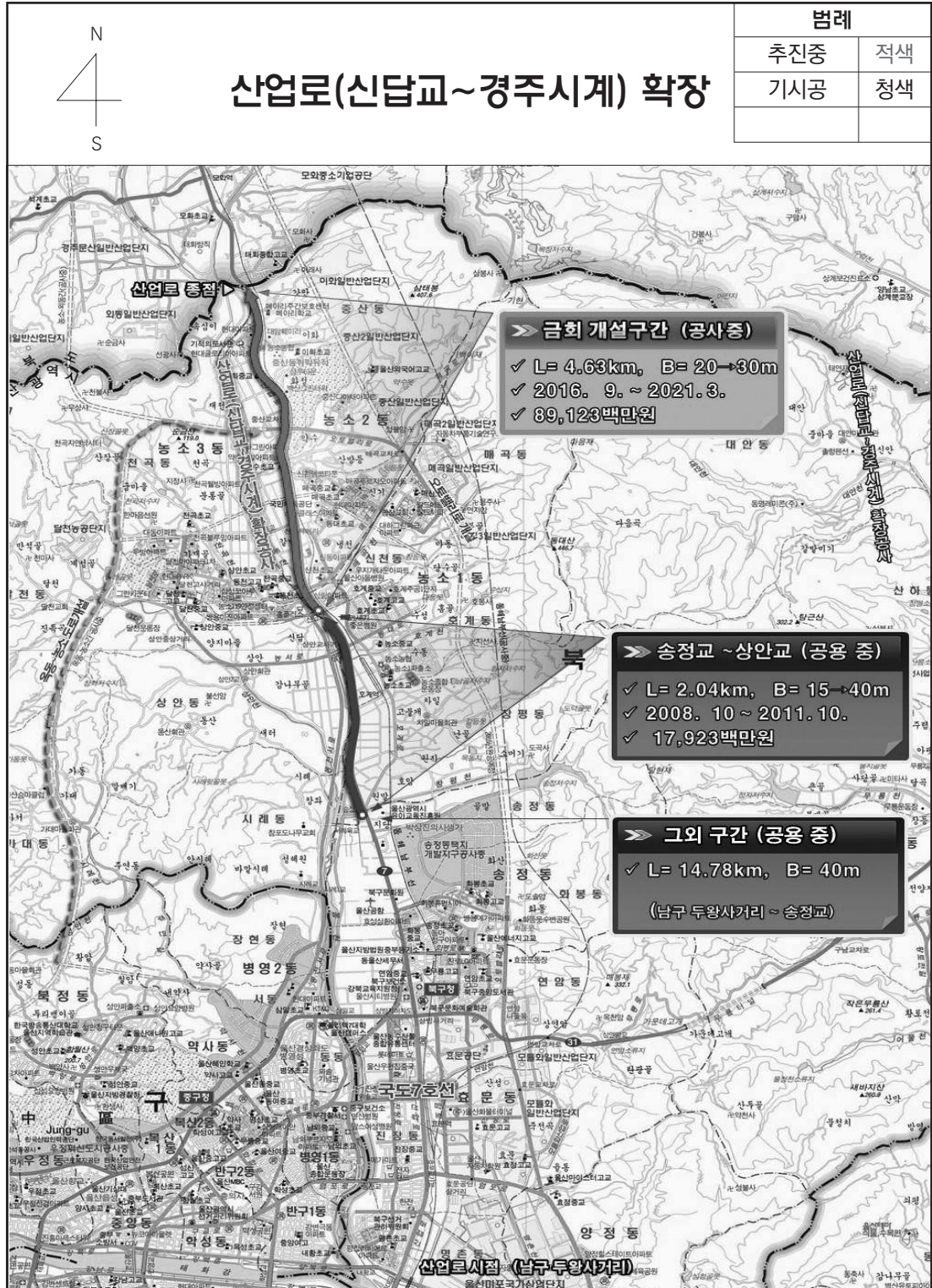
- 약수천내 각종 우수지장물(토사, 각종 건설자재, 작업로 등)로 인해 유로가 차단되고 통수단면 이 축소되어 우수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인근 약수초등학교와 경동그린아파트의 침수 피해가 우려되므로, 우수기 집중호우에 대비한 신속한 철거 방안을 마련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5 조치사항

「울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착공하기 전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것과 공사 착공 후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고 실시설계시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함.

우수기 집중호우 대비 약수천내 각종 우수지장물(토사, 각종 건설자재, 작업로 등)을 신속히 철거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위치도]



5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1차) (권고)

① 사업목적

기 시행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1차)」에서 조사된 불량(이상) 관로에 대하여 정비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예방 및 우·오수의 원활한 처리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 방지 및 침수 문제 해소

②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위 치 : 동구(방어진), 북구(화봉, 농소)일원
- 기 간 : 2016. ~ 2021.
- 규 모 : 관로 정비 26.3km
- 사 업 비 : 14,436백만 원(도급비 10,673백만 원)
- 공사업체 : (유)이레건설

○ 추진현황

- 2015. 6. ~ 2016. 6. : 정밀조사 용역
- 2016. 11. ~ 2017. 12. : 실시설계 용역
- 2018. 3. : 재원협의 및 계약심사
- 2018. 4. : 계약 의뢰
- 2018. 11. : 공사 착공

○ 향후 추진계획

- 2021. 5. : 공사 완료

③ 감시·평가 활동사항

○ 추진일정

- 2019. 3. 25. : 2019년 청렴계약 감시·평가활동 계획 수립(위원회 의결)

- 2019. 3. 27. : 청렴 감시 · 평가활동 계획 알림(해당기관(부서))
- 2019. 11. 26. : 자료 제출 요청
- 2019. 12. 9. : 현장조사
- 2019. 12. 10. ~ : 자료 검토

○ 활동내용

- 사업 추진현황 확인
- 하도급 및 기성지급 현황 확인
-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 확인
 -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관리비 등

○ 활동사진



사업 추진현황 설명



하도급 등 현황 확인

④ 감시·평가 결과

○ 위험성평가 미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 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하는데, 현지조사 결과 본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

○ 안전 · 보건교육 부적정

-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는데, 현지조사 결과 본 사업장의 근로자 실제 교육시간이 매월 1시간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교육시간인 매 분기 6시간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빙자료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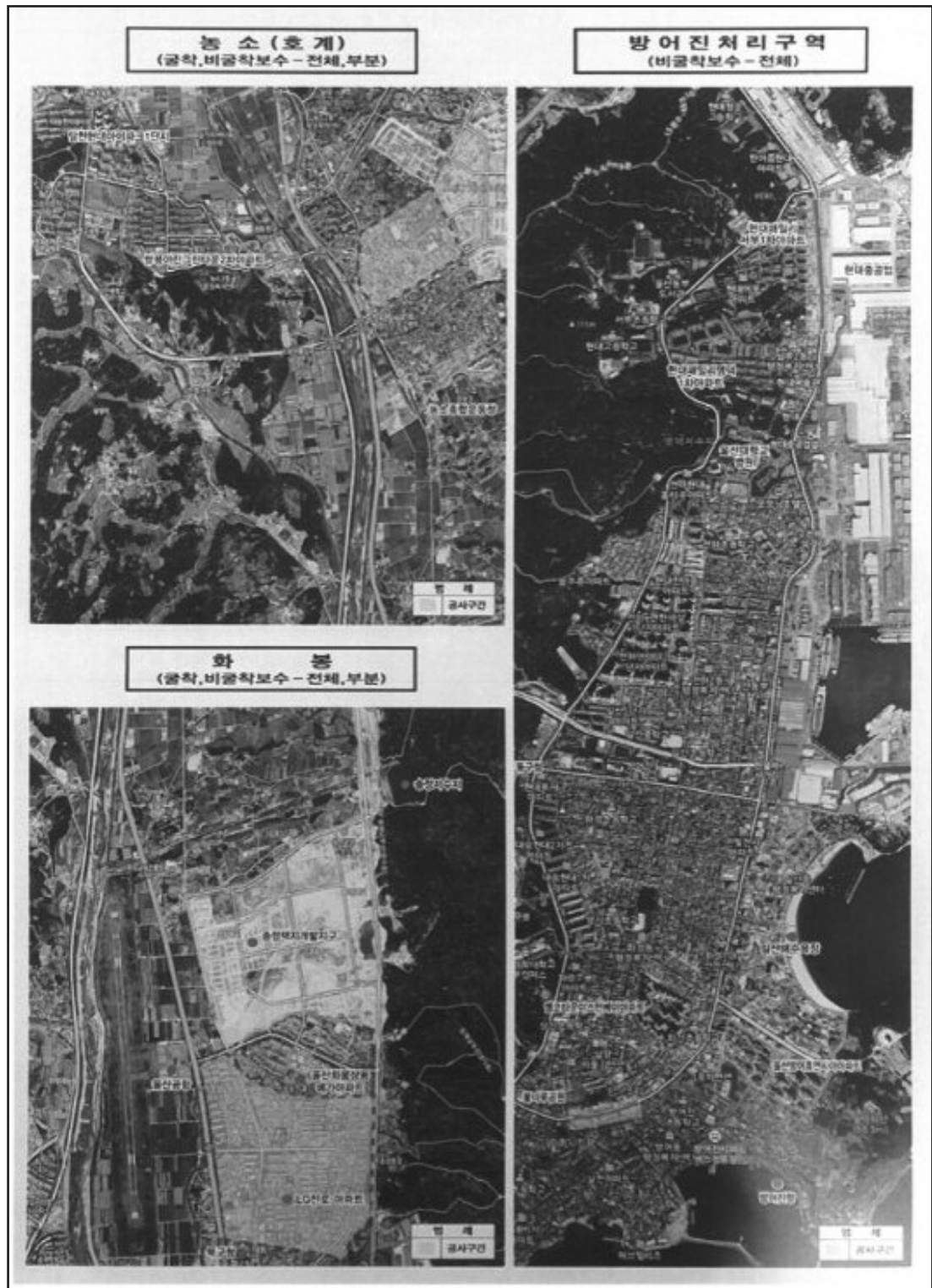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있으며, 같은 기준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있음. 따라서 발주부서는 시공업체가 준공 또는 기성 요청 시 안전관리비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하는데 현지조사 결과 시공업체는 안전관리비 사용의 증빙자료로 구매 및 집행 사진 등만을 작성하고 있을 뿐 지급대장의 작성은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관리비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어려움.

5 조치사항

사업장의 안전조치 강화 차원에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등이 필히 참여하여 위험성 평가 등 실시하고 현장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도록 관리 · 감독할 것과 본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관리 · 감독할 것을 권고함.

안전관리비 사용의 증빙자료를 작성 · 제출하도록 할 것과, 준공 또는 기성 요청 시 안전관리비의 사용을 철저히 확인할 것을 권고함.

[위치도]



6

덕하공영차고지 조성 공사 (권고)

① 사업목적

울산광역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14.12.)에 의거 단계별 공영차고지 확충계획(5권역)에 따라, 율리(‘02년 도심권)·방어진(‘05년 동부권)·농소(‘11년 북부권) 공영차고지에 이어 제4권역(남부권)인 덕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②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위 치 :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1035-6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부지 : 27,906㎡, 주차면수 134면
 - 건축 : 2,686㎡(본관동, 정비동, 세차기동, 경비동 등)
- 사업기간 : 2017. 11. 22. ~ 2020. 4. 21.
- 사 업 비 : 15,967백만 원(공사 11,664 보상 2,946 기타 1,357)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18년까지	2019년	2020년	비 고
계	15,967	11,822	2,500	1,645	
국 비	3,100	3,100	-		
시 비	12,867	8,722	2,500	1,645	

- 시 공 사 : (주)신우개발외 1개사
- 건설사업관리단 : (주)한림이엔씨건축사사무소

○ 추진현황

- 2012. 1.~4.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2016. 5.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결정
- 2016. 10.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16. 12. ~ 2017. 3. : 토지보상 협의
- 2017. 7. ~ 8. :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 협의
- 2017. 11. : 공사착공
- 2018. 7. ~ 2019. 9. : 연약지반개량 완료
- 2019. 12. : 본관동 등 건축물 시공 중 (공정률: 46%)

○ 향후 추진계획

- 2020. 4. : 공사 준공

3 감시·평가 활동사항

- 2019. 3. 25. : 2019년 청렴계약 감시·평가활동 계획 수립
- 2019. 3. 27. : 청렴 감시·평가활동 계획 알림(머스택시파)
- 2019. 11. 21. : 자료 제출 요청
- 2019. 12. 1. ~ 12. 24. : 자료 검토, 현장확인

○ 활동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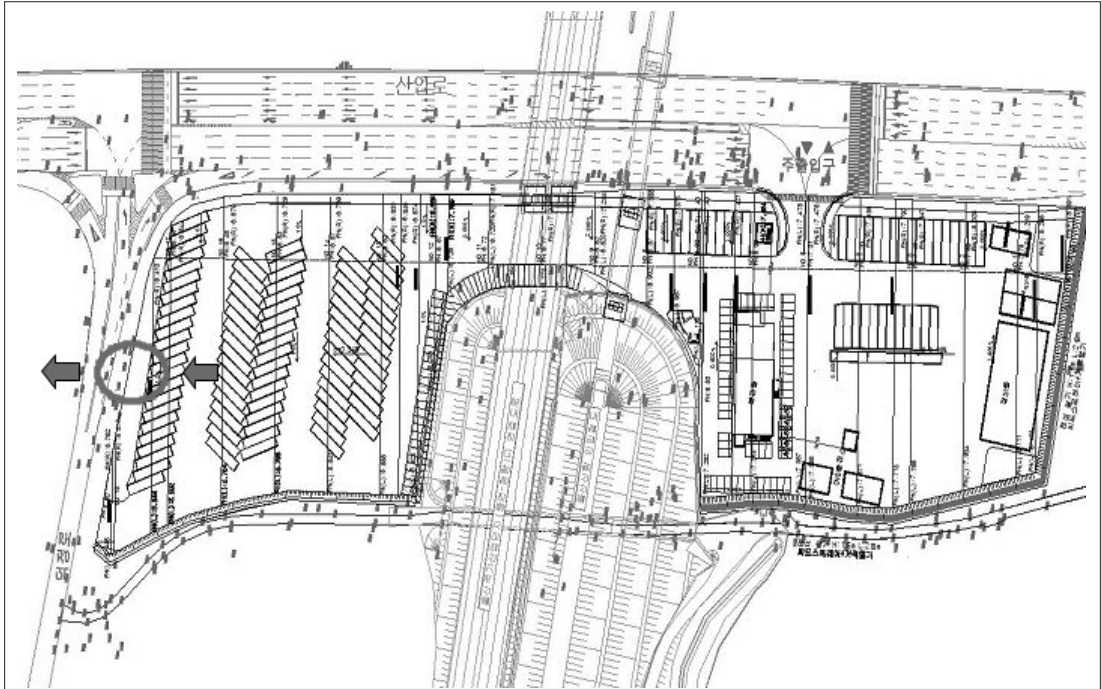
4 감시·평가 결과

○ 사면토사 유출 예방 및 유지관리 현황 검토

- 본 공사 토목공사 부분의 우수처리 계획을 살펴보면 최종 유출부 처리를 토사 사면으로 마감토록 되어 있어 준공 이후에 ① 우기 시 기존 도로부 녹지공간에 사면부 토사가 유입되어 사면부 유실 및 토사 퇴적으로 인한 기존수로 암거 통수량에 문제 발생이 우려가 되며 ② 예전부터

기존 수로 암거가 토사유실, 부유물 등으로 막혀 논 경작지가 자주 침수되는 등 해당 공사 시 사면부의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민원이 제기(상남리 마을이장) 된 적이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공사평면도 (우수관로 최종 유출부 위치)



⑤ 조치사항

우수기 집중호우 시 인근 농경지 토사 퇴적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사 사면 보강 등을 통한 배수로의 통수단면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보완 조치 할 것을 권고함.

7

일산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권고)

① 사업목적

자연취락의 기능과 주거환경이 상실된 일산진마을에 기반시설 설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으로 도심 속 어촌마을의 특성을 간직한 활력 넘치는 정주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사업

②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위 치 : 일산동 155번지 일원
- 기 간 : 2019. 4. ~2020. 6.
- 내 용 : 중1-186호선 외 2개 노선 도로 개설
- 공사금액 : 2,178백만 원(도급 1,506백만 원 관급 672백만 원)

○ 추진현황

- 2004. 4. 2.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2단계) 사업지 확정(건설교통부)
- 2009. 12. 31.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공동주택건설방식)
- 2010. 7. 27.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참여 불가 통보
- 2011. 7. 28. :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현지개량방식)
- 2012. 2. 16. : 사업 시행 계획 고시(동구 제2012-18호)
- 2014. 11. 20. : 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기간연장 2020. 12. 31.까지)
- 2012. 2. ~ 2016. 2. : 도로 4개 노선 개설
- 2016. 2. 3. : 새뜰마을사업 선정(지역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 2018. 12. 31. : 도로개설공사 시공사 부도에 따른 계약 해지
- 2019. 2. 12. :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보완) 용역 착수
- 2019. 2. 25. : 문화재 시굴 및 표본조사 착수(준공 : '19. 5. 15.)
- 2019. 3. 13. :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보완) 용역 준공
- 2019. 4. 25. : 도로개설공사 착공
- 2019. 7. 2. : 중로 확장구간 중1-186(A) 구간 일부 개통

- 2019. 10. 24. : 중1-186외 2개 노선 구간 지장물 이설 관련 협의

○ 향후 추진계획

- 2004. 4. 2.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2단계) 사업지 확정(건설교통부)

③ 감시·평가 활동사항

○ 추진일정

- 2019. 3. 25. : 2019년 청렴계약 감시·평가활동 계획 수립(위원회 의결)

- 2019. 3. 27. : 청렴 감시·평가활동 계획 알림(동구 도시디자인과)

- 2019. 12. 10. : 자료 제출 요청

- 2019. 12. 11. ~ 12. 20. : 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

- 2019. 12. 20. : 현장조사

○ 현장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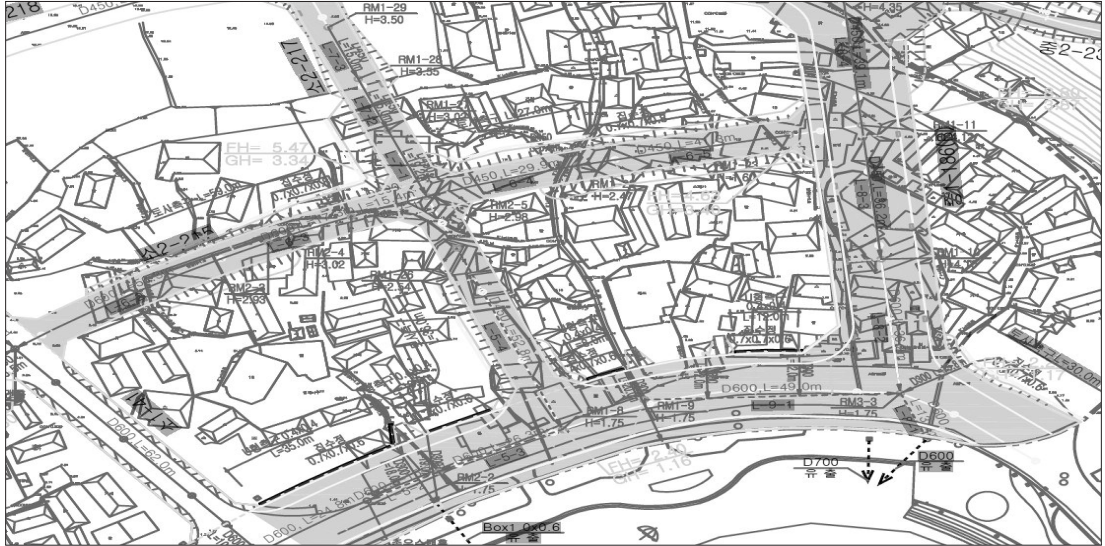
④ 감시·평가 결과

○ 사업 지구 내 배수계획 및 기타 안전 조치사항 검토

- 본 사업 지구 내 해안지역과 인접한 주거지역은 개설예정인 도로계획고보다 약 3~4m 낮은 저지대이므로, 향후 우수기 집중호우와 만조 시 배수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하여 현지 여건에 맞는 우수처리계획 검토 후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현재 확장 중인 일산진11길 일부구간 내 시공된 맨홀과 해당 도로 간 발생한 단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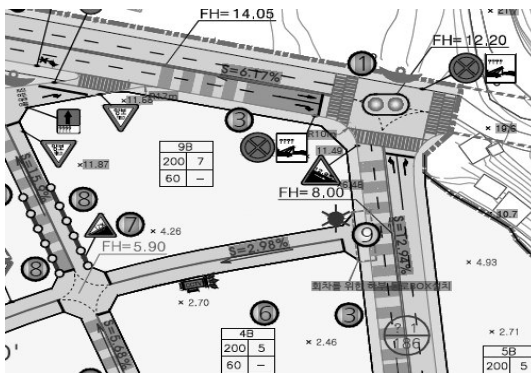
로 인해 야간에 안전 및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1] 우수계획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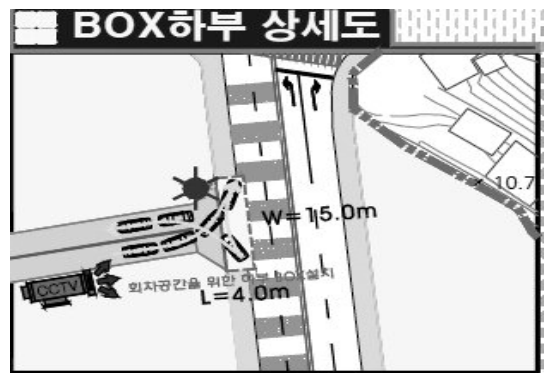


○ 주요 민원사항 검토

-사업부서인 동구 도시디자인과는 본 사업 구간 내 중로1-186호선(이하 'A') 및 소로2-215호선(이하 'B') 기존 접속 방안(A·B 도로 접속부 단절)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 불편을 우려하여 주민 의견 수렴,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향후 공기 지연 및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A 소2-186호선, B 중-186호선】



접속부 도로 단절에 따른 종점부회차용 하부BOX

⑤ 조치사항

사업지구 내 배수처리 계획을 검토하고, 도로확장(일산진11길) 공사 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맨홀 주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조치 할 것을 권고함.

‘중로1-186(B)호선과 소로2-215호선의 도로접속’ 민원 관련하여 우리 시 교통영향평가 부서와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8

무기응집제 구입 (권고)

① 사업목적

원수 수질상황과 정수생산에 안정적 대응을 위한 무기응집제 구입

②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 1. 1. ~ 12. 31.
- 사업규모 : 무기응집제(PAC 1종, 산화알루미늄 10~12%) 2,000톤 (160,380원/톤)
- 무기응집제 역할 : 응집지에서 유기물들을 응집시켜 침전 유도
- 위 치 : 회야정수사업소
- 사업비 : 320,760천원(시비)
- 구입방법 : 2단계경쟁 입찰 및 계약(조달 의뢰)

○ 추진현황

- 2018. 10. 4. : 2019년 정수약품 구입계획 검토
- 2019. 1. 23. : 2019년 정수약품(무기응집제) 구입 일상감사 의뢰
- 2019. 1. 28. : 일상감사 결과통보(‘별도 의견 없음’)
- 2019. 1. 31. : 2019년 정수약품(무기응집제) 구입계획 보고
- 2019. 2. 1. : 2019년 정수약품(무기응집제) 구입 건의
- 2019. 2. 15. : 2019년 정수약품(무기응집제) 물품조달구입
- 2019. 4. 3. ~ 2019. 11. 15. : 물품검수(6회)

③ 감시·평가 활동사항

○ 추진일정

- 2019. 3. 25. : 2019년 청렴계약 감시·평가활동 계획 수립(위원회 의결)
- 2019. 3. 27. : 청렴 감시·평가활동 계획 알림(해당기관(부서))
- 2019. 6. 10. : 자료 제출 요청

- 2019. 11. 20. ~ 11. 22.(3일간) : 현장조사
- 2019. 11. 18. ~ 11. 27. : 자료 검토

○ 활동사진



청렴계약감시평가 서류 검토



회야정수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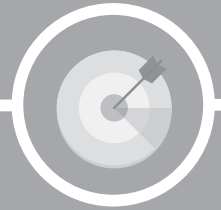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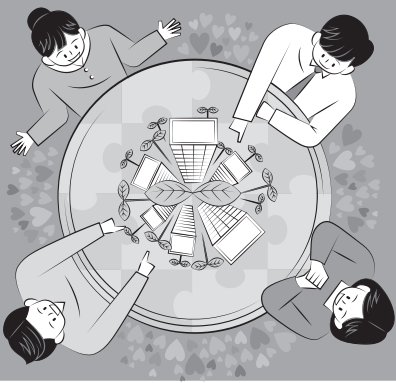
④ 감시·평가 결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 구매 의뢰하여 계약하였고 물품검수 시 물품량과 금액을 점검해봤을 때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음.

현재 응집제로 사용하지 않는 황산알루미늄 Tank 내 황산알루미늄은 잔여분 제거 후 무기응집제 PACS(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의 Tank로 활용하여 고탁도(高濁度)나 조류과다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⑤ 조치사항

상수도사업본부 회야정수장 황산알루미늄 Tank 내 황산알루미늄은 현재 응집제로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잔여분을 처리(제거)하고 향후 홍수 등으로 인한 고탁도나 조류과다 등 비상사태 대비하여, 무기응집제 PACS(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의 Tank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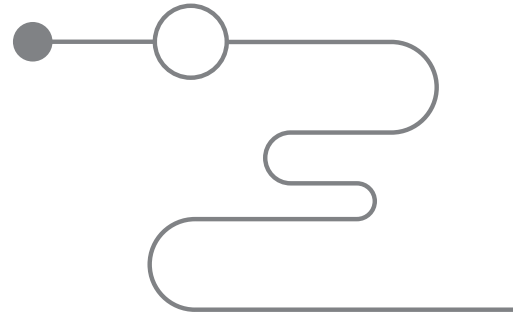
2019 시민신문고위원회

운영보고서



제4편

참고



1. 주요 언론 보도 사례
2. 고충민원 해결에 대한 민원인 소감
3.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운영규정」





주요 언론 보도 사례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언론보도1

경상일보

2019년 2월 28일 목요일 012면 사람



이동재 울산시 시민신문고 위원회 신문고 담당 사무관이 '제7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 사무관은 관련 규정 제정, 위원과 조사관의 전문 역량 강화,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운영 등을 통해 시민 권익을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창환기자



언론보도2

울산제일일보

2019년 3월 27일 수요일 007면 사회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26일 북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북구지역 주민편의를 위해 '2019년 제1회 찾아가는 시민신문고'를 개최한 가운데 북구 주민들이 전문 상담위원들에게 만원 상담을 받고 있다. 윤일지 기자



언론보도3

경상일보

2019년 4월 16일 화요일 008면 사회

울산신문고위 “환경해설사 운영 규정 제정해야”

해설사 일부 기록 허위작성 근무수당 부정수급행위 적발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가 울산시의 자연환경해설사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운영 규정을 제정·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신문고위원회는 최근 제31차 시민신문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15일 위원회에 따르면 민원인은 “태화강생태관광해설사회 해설사 일부가 허위로 활동 현황을 작성하고 근무수당을 받아 챙기고 있다”며 시민신문고에 조사를 의뢰했다. 태화

강생태관광해설사회는 2010년 설립돼 태화강과 십리대숲 등 생태관광 자원 해설·홍보와 탐방 안내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조사에 들어간 위원회는 2018년도 해설사 활동 현황에서 허위 작성의 의심되는 근무기록을 찾았다. 또 2018년 이전 3년간의 현황에도 부정수급을 행위를 밝혀냈다. 위원회는 울산시에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요청했다. 특히 부정수급 차단하고 해설인력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근무시간, 수당 지급 기준, 해설사 배치 및 관리, 부정행위에 대한 벌칙 등을 포함한 운영 규정을 제정해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최창환기자



언론보도4

경상일보

2019년 3월 5일 화요일 002면 종합

신문고위 “키즈카페 놀이시설 불법 증축 아냐”

관청의 원상복구 명령에 A씨, 규제개선 민원 요청

“외형만 보고 복층 판단 부당” 위원회, 시정명령 취소 권고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키즈카페 놀이시설에 대한 불법 증축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제2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민원인 A씨는 키즈카페 일부에 놀이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던 중 관청으로부터 원상 복구 등 시정명령을 받았다.

해당 관청은 이 시설이 복층 구조라는 이유로 불법 증축 행위로 본 것이다.

위원회는 이 시설이 키즈카페 전체가 아닌 귀퉁이 일부에 설치돼 있

고, 2층 구조이지만 아래층 높이가 1.5m에 불과해 거실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외형상 복층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를 불법 증축행위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1.5m 이하의 시설물을 다락으로 분류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다락이 건물 위층 외에도 설치될 수 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울산의 다수 기초지자체로부터 이런 시설물은 필요에 따라 설치와 해제, 이전이 용이한 단순 놀이시설로서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으로 확인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의결로 건축법 적용에 따른 행정처분의 일관된 기준을 제시했다”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에 대해선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언론보도5

한국일보

2019년 3월 11일 월요일 A14면 지방

신문고 부활... “둥둥” 치니 울산이 대답했다



〈35〉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

“둥-둥-둥-”

지난해 9월 10일 낮 12시 울산시의회 1층에선 우렁찬 북소리가 울렸다. 조선 태종 원년(1401년) 한양에서 울렸던 신문고와 600년이 넘는 세월을 훌쩍 넘어 울산에서 울린 것이다. 민선 7기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인 울산 시민신문고위원회(위원장 차태환) 출범식 자리였다. 시민 고충을 구제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울산 신문고는 출범 6개월 만에 비관 성향이 강한 시민단체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등 권익 구제 맞춤형구이자 공정한 민원해소 기구로 뿌리를 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문고는 지난해까지 모두 250여건의 고충 민원을 접수해 70%가 넘는 180여건을 직접 조사, 그중 160건을 처리했다. 시정권고 및 권고 19건, 의견표명 5건, 합의 및 조정 7건, 이행촉구 1건, 제도개선 1건, 안내 회신 77건, 기각·각하 45건 등 인용률이 22%에 이른다.

현장 소통을 통한 능동적 고충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울산 동구청에서 열린 제 1회 이동신문고에는 총 50건을 상담해 40건을 현장 해결했다. 이동신문고는 올해도 분기별로 구군을 돌며 한 번씩 개최할 계획이다.

신문고는 또 권익구제 전문성 강화를 위



지난해 9월 울산시의회 1층 로비에서 열린 울산 시민신문고위원회 출범식 모습.

울산시 제공

지난해 9월 출범해 6개월간 운영 접수된 250건 중 180건 직접조사 시정권고 19건 등 인용률 22%에 분기별 구군 찾는 ‘이동신문고’도

해 도시계획(도시교통), 도시안전, 산업경제, 생활환경, 교육문화, 여성복지 6개 분야에 전문가를 위촉, 지문위원회를 통해 남구의 ‘충고 제한 해제’, 중구의 ‘오수관매설 관련 건물진동 해소’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민원처리로 신뢰성을 높이기도 했다.

아울러 시민소통 강화란 송 시장의 시정 방침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주민자치위 등 민의 반영기구와의 교류도 나서고 있다. 지난해 10, 12월 두 차례

에 걸쳐 울산시민연대, 울산YWCA 등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지난해 12월 19일 출범 100일 대시민보고회에는 시민단체·주민대표 120여명을 초청하는 등 접점을 넓히고 있다. 또 고충민원과 빈발민원에 대한 근원적 요인을 발굴,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7월 말까지 8개월간 일정으로 행정제도 개선 제언 시민공모전도 열고 있다. 이 같은 성과로 울산시 이동제 신문고 담당 사무관은 지난해 27일 지방음부즈맨 제도 선진화에 기여한 공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신문고는 ‘주마가편’으로 역량을 높여나가고 있다. 위원회 내부 민원 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해 빈발 분야에 대한 해결 방법과 관례를 공유하고, 도시업무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분야 업무편람집 운영, 법률도서관

과의 온라인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민원에 대한 최종 결정 전에 토론회를 통한 집단지성 공유는 물론 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을 통해 업무 처리 절차의 신속성과 공정성 제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 소통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기관에 대한 상호교류를 강화하고, 읍부즈맨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별 순회 간담회와 고충 민원 빈발기관에 대한 방문 컨설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차태환 위원장은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꾸준히 개선해 전국 최고의 모범 읍부즈맨 기구로 정착화시켜 나가는 한편 공공사업의 청렴계약 감시 및 평가활동 등 영역을 계속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산=김창에 기자



www.iusm.co.kr

1의 2페이지

『울산매일』

HOME 사회 자치단체

시민신문고위원회, 18일부터 금융민원 상담서비스 운영

강태아 승인 2019.04.11 22:30

시민신문고위원회(위원장 차태환)는 금융전문가를 시민신문고위원회 금융상담 위원으로 위촉해 오는 18일부터 전문상담을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간의 분쟁조정과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분야와 관련된 피해 및 불만 등에 관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전문상담이 힘들었고, 금융감독원에 온라인이나 전화상담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 접수처리 과정에서 금융과 관련된 민원은 지자체의 소관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데 제약이 있어 금융민원 상담 서비스를 운영키로 했다.

시민신문고위원회의 금융민원 상담 서비스 운영으로 지역주민이나 기업은 금융민원을 보기위해 부산 또는 서울로 갈 필요없이 지역에서 최적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상담위원으로 위촉되는 위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울산시에 파견 근무중인 팀장급 이상의 전문가이며, 금융민원 상담을 원하는 시민 또는 기업은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시민신문고위원회 상담실(울산광역시 시의회 건물 1층)을 방문,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229-3961~2)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 문의



강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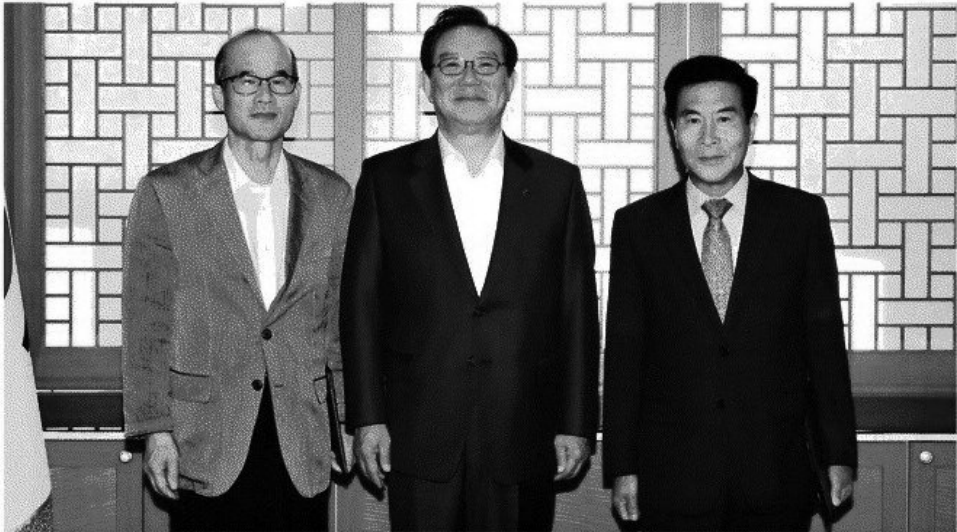
kt25@iusm.co.kr



언론보도7

울산신문

2019년 5월 29일 수요일 002면 종합



28일 울산시장 집무실에서 송철호 시장(가운데)이 시민의 다양한 민원에 대한 원스톱 상담을 위해 명예 민원상담관을 위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 시민신문고 명예 민원상담관 위촉

행정 경험 많은 퇴직 공무원 대상 하루 4시간씩 격일제 근무 시행

울산시는 28일 시장 집무실에서 시민의 다양한 민원에 대한 원스톱 상담을 위해 '명예 민원상담관' 위촉식을 가졌다.

'명예민원상담관제'는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관리자급의 퇴직 공무원을 민원상담관으로 위촉해 시민신문고위원회를 방문하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사항에 대한 원스톱 상담 역할을 맡는다.

이번에 위촉된 명예 민원상담관(2명)은 하루 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게 되며,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 민원상담 창구에서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단순 문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소방법을 안내하게 된다.

송철호 시장은 "우리 울산 시민들이 시민신문고위원회를 방문하게 되면, 원스톱으로 민원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동안 30여년간 소중한 행정 경험을 울산 시민들을 위해 봉사해주시는 명예 민원상담관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ih@



언론보도8

울산신문

2019년 6월 24일 월요일 002면 종합

25일 남구청서 찾아가는 울산 시민신문고

위법·부당 행정처분 등 민원 해결

울산시시민신문고위원회(위원장 차태환)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시민의 생활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간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남구지역의 주민편의를 위해 오는 25일 오전 10시 남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제2회 찾아가는 시민신문고'를 개최한다.

지역주민의 불편과 고충을 직접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현장중심의 민원해결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동

구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구·군을 순회하며 운영되는 '찾아가는 시민신문고'는 올해 3월 복구에 이어 오는 25일 남구를 방문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한 고충민원 해결은 물론 생활법률이나, 노무, 금융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 상담위원이 상담서비스를 진행한다. 남구 주민뿐만 아니라,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현장을 방문해 참여 가능하며, 전화(052-229-3960-3)나 홈페이지(www.ulsan.go.kr)로 사전예약을 신청을 받고 있다. 김지혁기자 uskjh@

216

2019 시민신문고위원회 운영보고서



언론보도9

경상일보

2019년 5월 28일 화요일 012면 사람



울산 동구는 27일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시민권익보호를 위한 시민신문고위원회 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언론보도10

울산제일일보

2019년 6월 17일 월요일 006면 사회

신문고위, 건축분야 고충민원 권익구제 세미나

건축직 공무원 역량 강화·위원회와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1박2일 동안 경주 블루원리조트에서 시·군·구 건축직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건축 분야 고충 민원 권익구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건축 분야 고충 민원과 관련해 원활한 해결 방안, 행정제도 개선을 논의하며 시민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반복적이거나 고질적

인 특별 민원 관리 방안, 건축 분야 고충 민원 처리방안, 우수사례 소개, 참 좋은 세상, 건강한 삶 등을 주제로 한 특강이 마련됐다. 또 참석자들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가설 건축물 처리, 이해관계가 없는 민원인의 불법 건축물 신고 처리,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비주거 분리애 따른 민원 발생,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 확인 등을 주제로 한 분임토의도 했다. 이상길 기자



언론보도11

울산신문

2019년 8월 1일 목요일 007면 사회

울산신문고위, 고충 민원 수용률 95%

출범 6개월간 41건 이행실태 점검
시정권고 14건 등 39건 수용 처리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가 의결한 고충 민원 결정사항에 대한 시·구·군의 수용률이 95%에 이르고 있다.

앞서 신문고위는 2018년 9월 10일 신문고 출범부터 올해 3월까지 의결한 41건에 대해 이행실태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39건은 관련 부서가 수용하기로 했으며, 불수용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수용 한 건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신고 취소 관련으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임기만료로 종결됐으며, 나머지 한 건은 진장디플렉스 수분양자 권

리보장 요구 건으로 특별 점검팀을 구성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 대상 41건을 유형별로 보면 시정권고 14건, 권고 16건, 제도개선 1건, 합의·조정 10건으로, 점검대상 41건 중 31건은 조치 후 종결됐으며, 현재 계속관리 대상은 추진 중인 사업은 10건이다.

신문고위는 계속관리 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종결되도록 해당 부서에 독려하고, 하반기에 추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민원 유공 공무원과 우수 부서를 선정해 오는 9월 10일 제1회 시민신문고의 날에 표창할 계획이다. 김지혁기자 uskh@



언론보도12

『울산매일』

2019년 7월 12일 금요일 002면 종합



신문고위원회 ‘금융복지 클리닉’ 복직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주최한 금융복지 클리닉이 11일 시의사당 1층 로비에서 금융감독원, BNK경남은행,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시민금융지원센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려 시민들이 대출, 재무, 신용회복, 재무 상담 및 금융교육을 받고 있다. 우성만 기자 smwoo@tjssm.co.kr



언론보도13

울산신문

2019년 8월 5일 월요일 002면 종합

울산시, 9월 10일 ‘시민신문고의 날’ 선포

출범 1년 맞아 매년 기념식 개최
고충해결 유공 직원·부서 표창도
의결 민원 41건 부서 수용률 95%
시민-행정기관 소통 매개체 평가

울산시는 9월 10일을 시민신문고의 날로 지정·선포한다.

시민신문고의 날은 지난해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가 출범한 날 1년을 맞아 기념해 지정한 것이다. 앞으로 매년 이날 기념식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울산처럼 행정기관 조직에서 시민신문고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시민 고충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조직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시민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5명으로 구성됐고, 위원 임기는 4년이다.

위원회를 대표하고 소관 사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에는 차태환 전국지방음부즈연합회 회장이 임명돼 활동 중이다.

위원은 임용균 전 북구 건설도시국장, 조민중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장, 김승호전 울산과학대학교 공동훈련센터장, 오영은 전 시민연대 사무국장 등이다.

시민신문고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의결한 고충 민원 결정사항에 대한 관계부서 수용률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과 행정기관 간 소통과 협력 매개체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자체 평가가 나왔다.

그동안 의결한 41건을 처리 유형별로 보면 시정 권고 14건, 권고 16건, 제도개선 1건, 합의·조정 10건이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시민 고충민원 해결과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민원 유공 공무원과 우수 부서를 선정해 시민신문고의 날에 표창하기로 했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이날 선포식과 함

께 시민에게 성과 보고와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시민신문고위원회 관계자는 4일 “1997년 울산광역시 출범 이후 시민 고충 민원율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행정기구인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처음은 생긴 것”이라며 “그동안 시와 구·군에서 모두 협조도 잘 해줬고 성과 좋아 시민과 행정의 가교, 연결 고리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시민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시민과 시정을 위한 조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혁기자 uskjh@



언론보도14

울산신문

울산시민신문고 출범 1년 '제 역할 다했다'

2019년 9월 11일 수요일 002면 종합

울산시 유공자 시상 등 기념식
500건 고충 민원 등 접수 처리
청렴계약 감사·금융 클리닉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이하 신문고위)가 출범 후 지난 1년 동안 시민권익 보호와 시청 감시라는 본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고위는 10일 오후 의상당 1층 시민홀에서 송철호 시장, 시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시민신문고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행정제도 개선 우수 제안자 등 유공자 시상, 제1회 시민신문고의 날 선포, 고충민원 처리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시민신문고의 날(9월 10일) 선포는 자치단체에서는 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신문고위가 출범한 9월 10일을 기억하고 앞으로 신문고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취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실시했다.

유공자 시상에서는 시 종합건설본부 이상기 시설사무관, 중구 교통과 정해권 주무관, 동구 환경위생과 류영진 주무관이 우수공무원을 수상했다.

우수부서에는 남구 감사관, 북구 주민소통실, 국민신문고 분야는 울주군 생태환경과가 선정됐다.

신문고위는 '시민과 함께 다시 쓰는 울산'이라는 민선7기 정책 비전을 반영해

송철호 시장 취임 후, 제1호 결재로 실시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청을 감시하고 시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특히 울산시정에 있어 처음으로 독립된 부서가 고충민원을 전문적·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지방 읍부즈만 기구로서 자리매김해 왔다.

주요 기능은 △고충 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청렴계약에 관한 감사·평가 △시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이다.

신문고위는 지난 1년간 총 506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직접조사 338건, 이첩 106건, 단순안내 37건, 취하 등 23건을 처리했다.

또 50건의 청렴계약 감사평가활동, 1건의 시민감사청구, 3회에 걸친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소상공인·시민 등을 위한 금융복지클리닉 등을 실시했다.

주요 고충민원 처리 사례를 보면, 울산 울주군 반송리 일원 일반산업단지 예정 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개발이 되고 있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조속히 해제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위원회 조사 결과 신청인의 이유가 타당한 것으로 조사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권고한 결과 지난 6월 27일 지정 해제가 완료됐다.

한편 시는 지난 1년간 시민신문고위에 접수된 고충민원과는 별도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2018년도 1년 동안 제기된 광역지자체의 민원에 대한 만족도·속도·답변 충실도·민원처리 실태 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한 민원 평가에서 17개 광역시도 중 4위를 차지했다.

김지희기자 usk@ulsanpress.net



10일 울산시장 시의회 시민홀에서 열린 '제1회 시민신문고의 날 기념식'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이 시민신문고 북을 치며 시민신문고의 날을 선포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k@



언론보도15

울산매일

출범 1주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읍부즈만 기구 안착

2019년 9월 11일 수요일 002면 종합

1년간 고충민원 506건 접수...직접조사 338건·이첩 105건

청렴계약 감사·평가·시민감사 청구·금융복지 클리닉도
시, 신문고 정신 계승·발전 위해 '시민신문고의 날' 선포
이상기·정해권·류영진씨 등 우수공무원·부서 시상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가 고충민원 처리 전문성을 갖춘 '지방 읍부즈만 기구'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울산시는 울산이 전국 최초로 신문고 위를 출범한 9월 10일을 기억하고 신문고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이날을 시민신문고의 날 선포했다.

신문고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송철호 울산시장 취임 후 제1호 결재로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청을 감시하고 시민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설치했다.

주요 기능으로는 고충 민원 조사·처

리, 청렴계약 감사·평가, 시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이다.

신문고위는 지난 1년간 총 506건의 고충 민원을 접수해 직접 조사 338건, 이첩 105건, 단순 안내 37건, 취하 등 23건을 처리했다. 또 청렴계약 감사·평가 활동 50건, 시민감사 청구 1건,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3건, 소상공인·시민 등을 위한 금융 복지 클리닉도 시행했다.

울산시는 주요 고충 민원 처리 사례로 울주군 반송리 일반산업단지 예정 부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해제한 것을 꼽았다.

신문고위는 "산단 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개발이 되고 있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 받고 있다"는 민원 신청인의 이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완료했다.

울산시는 이날 '제1회 시민신문고의 날 기념식'을 열고 행정제도 개선 우수 제안자 등 유공자 표창, 시민신문고의 날 선포, 고충 민원 처리 우수사례 발표 등도 했다.

유공자 시상에서는 시 종합건설본부 이상기 시설사무관, 중구 교통과 정해권 주무관, 동구 환경위생과 류영진 주무관이 우수공무원을 받았다.

우수부서에는 남구 감사관, 북구 주민소통실, 울주군 생태환경과(국민신문고 분야)가 선정됐다.

신문고위 차태환 위원장은 "우리 시 최초로 도입된 합의제 행정기관이자 지방 읍부즈만 기구로서 위원회의 독립성·



송철호 울산시장이 10일 시의회 시민홀에서 열린 '제1회 시민신문고의 날 기념식'에서 시민신문고의 날을 선포하는 북을 쳤다. 우성만 기자 smwo@usm.co.kr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청을 감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태아 기자 kt25@usm.co.kr



언론보도16

U울산매일

2019년 9월 11일 수요일 010면 사람



시민신문고의 날 기념 고충민원처리 우수 공무원·부서 시상 10일 울산시의 회 시민홀에서 열린 '제1회 시민신문고의 날 기념식'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이 고충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및 부서에 시상한 후 황세영 시의장, 박태완 중구청장, 김진규 남구청장, 정천석 동구청장, 이동권 북구청장, 이선호 울주군수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220

2019 시민신문고위원회 운영보고서



언론보도17

울산신문

2019년 9월 23일 월요일 003면 종합

25일 중구서 제3회 찾아가는 시민신문고위

25일 구청 2층 컨벤션 개최
전화·인터넷 사전예약 가능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위원장 차태환, 이하 신문고위)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시민의 생활 현장 속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시민신문고'가 잇따라 마련된다.

신문고위는 중구지역의 주민 편의를 위해 오는 25일 오전 10시 중구청 2층 컨벤션에서 '2019년 제3회 찾아가는 시민신문고'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시민신문고'는 지역주민의 불편과 고충을 직접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현장중심의 민원해결 서비스로, 지난 3월 복구를 시작으로 남구(6월)에 이어 세 번째 행사로 중구 구민

을 찾아 나서고, 오는 12월에는 울주군 현장을 찾아갈 예정이다.

'제3회 찾아가는 시민신문고'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한 고충민원 해결은 물론 생활 법률, 노무, 금융, 세무분야, 소상공인 창업·환경개선 등에 대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날 시민신문고는 중구 주민뿐만 아니라,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당일 현장을 방문해 참여 가능하며, 전화(052-229-3960-3)나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으로 사전예약 신청도 받는다.

차태환 위원장은 "찾아가는 시민신문고가 시민들이 생활 가까이에서 쉽게 방문해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로 점차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각종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신문고는 지난 1년간 총 506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직접조사 338건, 이첩 105건, 단속안내 37건, 취하 등 23건을 처리했으며, 또 50건의 청렴계약 감시평가 활동, 1건의 시민감사청구, 3회에 걸친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소상공인·서민 등을 위한 금융복지클리닉 등을 실시했다.

울산시는 지난 1년간 시민신문고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과 별도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2018년 한 해 동안 제기된 광역지자체의 민원에 대한 만족도·속도·답변충실도·민원처리 실태 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한 민원 평가에서 17개 광역시도 중 4위를 차지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10일 오후 시민홀에서 시민신문고 1주년을 맞아 '제1회 시민신문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바 있다. 전우수기자 usjws@



언론보도18

울산제일일보

2019년 10월 28일 월요일 001면 중합

울산수목원 조성과정 위법사항 드러나

울산시 울주군 대운산 일대 환경훼손 논란이 이는 가운데 울산수목원과 대운천 등 관련 사업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울산수목원 조성사업 관련 토지형질 변경 축소 의혹 등과 관련, 일부 위법사항을 적발해 울산시와 울주군에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신문고위는 지난 7월 24일 울산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감사 청구를 접수해 같은 달 29일부터 지난 21일까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항목은 △울산수목원 조성면적 축소 △대운천 정비사업 분할시행 △울산수목원 조성공사 시공업체 선정 △울산수목원 부지내 자연석 반출 등 4개 의혹이다.

신문고위 감사 결과 울산수목원에서는 토지형질 변경 면적 축소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수립 등이 적발됐으며, 대운산 일대 산림유역관리사업에서도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신문고위에 따르면 울산시는 수목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인 수목원 사업지 중 6천656㎡에 대해서만

■시민신문고위 감사 결과 발표

수목원 토지형질 변경 면적 축소
대운산 산림유역개선 절차 미이행
대운천 내 협의 없이 제방 설치돼
“시·군 해당부서에 시정권고”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뒤 추가 토지형질 변경을 진행했고, 변경행위가 1만㎡ 이상일 경우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하나 9천803㎡로 축소해 허가를 받지 않았다.

아울러 울산시 자체 감사에서도 시정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으며, 울주군 역시 인·허가와 관련한 검토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에서 신문고위가 재산정한 토지형질 변경 면적은 6만4천918㎡로 1만㎡를 훌쩍 넘어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추가 허가 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수립에 해당돼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와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명백히 위배된다.

또한 울산시는 대운산 일대 산림유역관리사업에서도 사업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대운천의 하천관리청인 울산시 및 울주군의 하천관리 부서와 하천기본계획 관련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대운천의 하천구역 내 하천(사방)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울주군 하천관리부서와 아무런 협의 없이 석축 제방 등을 설치했고, 제방(자연석 쌓기)이 설치된 구간은 대운천 하천기본계획상 제방이 없는 구간임에도 제방을 1천534m(3천101m)에 걸쳐 설치해 자연경관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울주군 역시 대운산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산림유역개선사업과 관련한 토지형질 변경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8호에 따른 대상 행위에 대한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울산수목원 조성공사 시공업체와 관련해서는 지난 7월 이미 지방계약법 시행령 엄격 준수, 사전 공사시

행계획 철저 수립 등 시정권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소규모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지만 실제 토지형질 변경 면적이 6만4천918㎡로 늘어남에 따라 사업 전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자연석 무단 반출 여부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이 자체 감시 활동 등으로 자연석 반출 사례가 없었다고 진술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없다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문고위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울산시와 울주군 해당 부서에 전달하고 시정권고를 내렸다”며 “시정권고에 따라 해당 부서들은 30일 이내에 이행계획 등 답변을 제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시정 요구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울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후속조치를 강구토록 하겠다”며 “울산시와 울주군에 시정을 요구하는 압박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병석 기자**



고충민원 해결에 대한 민원인 소감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사례 1 - “공익사업 불요토지 환매 요청” 해결



울산광역시

공익사업 불요 토지 환매 요청

안녕하십니까? ○○○에 사는 ○○○입니다.
저는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에 토지환매요청 건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25

민
원

안녕하십니까? ○○○에 사는 ○○○입니다.

저는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에 토지환매요청 건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원이) 울산시로 이첩되어 울산시가 시행한 다운지구 개발 사업에 본인이 소유한 땅
이 편입되어 일부면적에 대해서는 민원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현재까지 남아있어 환
매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7년이 지난 현재 울산 시민신문고를 통해 본인의 주장이 타
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민원인에게 환매할 것을 권고 하였고, 환매완료 하였습니다.

울산 시민신문고에 (민원이) 원만히 해결됨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례 2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해제 요망” 해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해제 요망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 사는 ○○○이라고 합니다.
제 땅이 1980년대 5공시절에 울산컨트리에 체육시설로 묶여있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 사는 ○○○이라고 합니다.

제 땅이 1980년대 5공시절에 울산컨트리(클럽)에 체육시설로 묶여있어서 제가 약 30
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서 참으로 고충이 많았습니다.

제가 약 20년에 걸쳐서 줄기차게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아서 제
가 고충이 참 많았습니다.

이번에 울산 시민신문고 덕분에 제 땅이 해제가 되어서 울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
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례 3 - “드론 레이스장 이전 요구” 해결



227

02
11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서 전통 도자작업을 하고 있는 도예가 ○○○입니다. 뒤로 보이는 공역지. 즉, 드론비행 전용체험장이 지난해 4월에 들어선 이후 소음공해,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울산 시민 신문고가 개설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 저의 애로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약 5개월 정도의 조사를 거친 뒤, 울산 공역지를 이동하라는 주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극 소수의 민원을 간과하지 않고, 성심껏 조사를 해 주셔서 개인의 권익을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저의 일로 울산광역시가 정말 선진 행정을 실행하고 있는 도시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시민신문고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8-07-26 조례 제 187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시정 감사 및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이란 민원인이 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민원사항 중 시 및 구·군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시민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5. “청렴계약”이란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는 업체와 발주기관 당사자 간에 금품·향응 등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겠다는 특수조건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시민신문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시민신문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정을 감사하고 고충민원을 처리하며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시민신문고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개방형직위로 한다.
- ③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 모집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④ 위원장은 시장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⑥ 시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의 결위 시에는 후임자를 임용하거나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제4조(직무권한 및 관할) ① 위원회의 직무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시민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
2.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위원회가 발의한 사안의 조사 및 감사
4. 시장 또는 시의회에서 발의한 사안의 조사 및 감사
5. 청렴계약에 관한 감시·평가 및 청렴계약 부조리 사항에 대한 감사 및 조사
6.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
7.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
8. 행정제도의 운영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및 권고
9. 감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내용공표
10. 위원회가 처리한 조사·감사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11.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12.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13.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14.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속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된 사항

② 위원회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시 본청 및 소속기관
2. 구·군(시의 위임사무에 한정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4.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지방보조사업자

제5조(결격사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각 호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장이 될 수 없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0조 각 호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채용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고, 위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채용 계약 해지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채용계약 해지 또는 해촉한다.

제7조(겸직금지) ① 위원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직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선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결위된 경우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감사 및 조사 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렴계약에 관한 감사·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
3.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5. 위원의 제척·기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의 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직무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시민의 감사청구

제12조(시민의 감사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및 소속직원이 행한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에 감사를 청구(이하 “시민의 감사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19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
2. 시민단체의 대표자(해당 단체의 목적사업 범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감사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1. 시의회(의회사무국 직원의 시 보조업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재판 또는 수사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청구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이름·생년월일 및 연락처)
2.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와 감사청구의 내용 및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감사청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명칭 및 직원의 이름
4.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5. 복수의 대표자가 필요한 경우 3인 이내의 대표자 선정 및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제13조(시민의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① 위원회는 시민의 감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감사의 실시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 종료가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인에게 기간의 연장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직권에 의한 감사) 위원회는 시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청렴계약에 대한 감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의뢰 또는 요청에 의한 감사) ① 시장 또는 시의회는 공정성·객관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사항을 감사 또는 조사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장 또는 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제16조(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① 민원인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중복으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가 고충민원의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고충민원의 조사·처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위원회가 직접 조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관계 부서 및 기관에 이

접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 및 시 소속기관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시 및 시 소속기관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시 및 시 소속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장소·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시 및 시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결과와 통보)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 관계기관·관계부서의 장 및 감사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청렴계약 감시·평가

제20조(청렴계약 감시·평가대상) 위원회가 감시·평가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으로서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에 대한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감시·평가한다.

1.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
2. 2억5천만원 이상의 용역
3. 5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4. 그 밖에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21조(자료제출 및 요구) ① 제20조의 감시·평가 대상에 대하여 실·본부·국장, 사업소장,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목록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1월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0조의 감시·평가대상인 공사, 용역,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울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장은 사전에 위원회에 심의자료와 일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청렴계약과 관련하여 감시·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위원회의 직무에 대한 협조와 지원

제22조(의견제출의 기회부여)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부서의 공무원은 위원회에 감사청구사항 또는 고충민원 사항에 대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조치계획 또는 결과의 회보 등) 관계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권고 등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와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자문위원은 여성복지, 도시안전, 산업경제, 생활환경, 도시교통(도시계획), 교육문화 6개 분야의 전문가로 시민단체, 학계,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 ⑥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고충민원 중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사항
 -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 ⑧ 자문위원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전문가의 감사 등 참여) ① 위원회는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위원 이외의 분야별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공표) 위원회는 민원사항 조사결과와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7조(사무기구 설치·운영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사무기구 직원은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 ②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문서 등에는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에 따라 별도의 공인을 새겨 사용한다.

제28조(인력 및 예산지원) ① 시장은 위원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울산광역시 직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위원회 규정)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준용) 위원회의 감사업무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을 준용한다.

제31조(운영실적의 보고) 위원회는 매년 2월, 9월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민의 감사청구서						처리기간		
						없음		
1. 청구인	개인	① 청구인 (대표자)		② 대표자 생년월일				
		③ 주소				④ 연락처 (전화)		
	단체	⑤ 단체이름						
		⑥ 대표자		⑦ 대표자 생년월일				
		⑧ 사무소의 소재지				⑨ 설립일자		
		⑩ 단체설립 목적						
		⑪ 등록 기관				⑫ 허가번호		
		⑬ 회원의 수						
		⑭ 연락전화				F A X		
2. 청구 동기								
3. 감사청구사항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관련증빙자료 (있는 경우) 2. 기타(관련행정기관 또는 소송 등 제기유무) 3. 시민(50명 이상)이 연서한 서류(개인청구의 경우) : 따로 붙임							수수료	
							없음	

〈뒷면〉

작성요령

1. 감사청구인

〈개인〉 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쓰지 않습니다.

① 청구인 : 외 명이라고 쓰고, 괄호 안에 대표자이름을 씁니다.

※ 감사청구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50명 이상

※ 복수의 대표자가 필요한 경우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씁니다.

③ 주소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를 씁니다.

④ 연락처(전화) : 전화번호 또는 팩스번호를 씁니다.

〈단체〉 개인(50명 이상 연서)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쓰지 않습니다.

⑤ 단체이름 :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공식명칭을 씁니다.

-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단체

- 시민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⑩ 단체설립 목적 : 정관에 있는 설립목적은 요약하여 씁니다.

⑪ ~ ⑫ 주무관청 이름과 허가번호 등을 씁니다.

2. 청구 동기 : 감사를 청구하게 된 동기, 취지, 이유 또는 감사청구를 하게 된 원인이 된 사실 등을 요약하여 씁니다.

3. 감사청구 사항 : 감사청구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기재하되 청구사항이 2건 이상일 경우 각기 구분하여 씁니다.

※ 난이 모자랄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4. 관련 증빙자료 : 감사청구사항과 관련하여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제목을 쓰고 첨부합니다.

5. 기타 : 감사청구와 관련된 행정기관 명칭 또는 직원의 이름을 쓰거나 감사청구사항과 관련하여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등을 씁니다.

※ 시민(50명 이상)이 연서한 서류 : 개인이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날인) 등이 있는 원본을 첨부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접 수 번 호		제 호	접수년월일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성별)	
	주 소		연 락 처 (전 화 번 호)	
민 원 제 목				
민 원 내 용		- 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원인이 된 사실내용 - 고충민원 신청과 관련된 집행기관의 부서명 및 직원명		
기타참고사항		· 소송 또는 다른 불복 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에 고충민원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서면, 인터넷 접수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의 당사자 적정여부 확인을 위하여 고충민원 신청일로 부터 처리 완료일 및 문서 보존연한까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고충민원 신청자의 당사자 적정여부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서명: (인)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운영규정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8-10-29 규정 제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운영은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회 의

제3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4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시회의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소집을 통지하되,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표기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집통지가 어려운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전화·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기피·회피)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결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피신청 대상이 되는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피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피 또는 회피로 회의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되는 위원은 재적의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6조(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 회의 운영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소속 신문고 담당이 된다.

제7조(위원회 회의 의안 제출 등)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해당 고충민원을 담당하는 위원(이하 '주심위원'이라 한다)이 운영규정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및 제39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이에 준하여 작성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안상정요구서에 그 의안을 첨부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 회의는 주심위원이나 주심위원을 보좌하는 주무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이 제안설명을 하고, 질문과 토론 및 의결의 순서로 한다.

② 위원장은 상정의안과 관련된 조사관이나 민원조사 담당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① 위원회는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 종전 의결결의 변경은 재적위원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관계인의 진술) ① 위원장은 조례 제22조의 대상자와 위원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석 요구서를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견진술은 서면 제출로도 가능하다.

③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

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의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① 고충민원 관련 의안의 의결서나 결정서는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및 제39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이에 준하여 작성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이나 결정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나 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의 비공개)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결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사항과 공개될 경우 회의의 의사 결정 또는 감사·조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비공개하도록 의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의결서 및 결정서의 경정) ① 주심위원 또는 조사관은 위원회의 의결이나 결정이 있는 후에라도 작성된 의결서나 결정서에 명백히 잘못된 계산·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의결서나 결정서가 경정된 경우에는 의결서나 결정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제14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신청인은 조례 제16조제3항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신문고 담당은 고충민원을 접수한다.

② 신문고 담당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고충민원 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이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19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문고 담당은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민원번호 체계에 따라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④ 신문고 담당은 1건의 고충민원에 2개 이상의 고충민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분할 접수 사실을 제19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16조제3항 단서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인이 문맹이나 문서 이해능력의 부족 등으로 스스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청인이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접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의뢰 또는 요청에 의한 조사) ① 신문고 담당은 시장 또는 시의회 위원회가 조사를 요구한 고충민원을 접수한 즉시 그 사실을 요약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고충민원을 30일 이내에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조사·처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고충민원 조사·처리기간 연장 요청서를 작성하여 조사를 요구한 시장 또는 시의회 위원장에게 중간보고를 하면서 20일의 범위에서 조사·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 또는 시의회 조사요구 고충민원을 조사·처리기간 종료일 5일 전까지 완료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처리결과제출문을 첨부하여 조사를 요구한 시장 또는 시의회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처리절차 등은 제28조 내지 제32조, 제37조 내지 제47조를 준용한다.

제16조(고충민원의 선정대표자)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 중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이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고충민원신청의 대리) ① 고충민원의 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9호 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고충민원의 분류·배정) ① 고충민원은 각 위원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별로 분류한다.

② 신문고 담당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고충민원 기록표지를 작성한 후 제1항에 따라 분류한 고충민원을 주심위원에게 배정한다. 다만, 위원에게 배정하기 전에 취하된 고충민원은 주심위원에게 배정하지 않고 종결처리 하여야 한다.

제19조(고충민원의 이첩 등) ① 주심위원은 배정받은 고충민원이 위원회에서 처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관으로 하여금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내부결재를 받아 해당 고충민원을 관계부서 및 기관으로 이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 이첩사실을 신청인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방문 신청일 경우에는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서면
2.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제20조(조사관의 지정) ① 주심위원을 보좌하는 조사관은 배정받은 고충민원의 신청취지와 내용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 서식의 민원요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심위원은 배정받은 고충민원의 처리방향을 결정한 후 조사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자료제출 요구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또는 결정내용 등 진행상황을 수시로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1조(신청서의 보완) ① 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문서·

구술·전화·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각각 별지 제13호 및 제14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22조(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 ② 조사관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종결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면으로 취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관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기록으로 남겨 처리할 수 있다.
- ③ 신청인이 고충민원을 취하하여 고충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본을 고충민원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3조(우선 처리할 고충민원) 주심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우선 처리할 수 있다.

- 1. 2 이상의 기관이나 부서가 관련된 복합 고충민원
- 2. 5세대 이상의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
- 3. 고충민원 해결에 소요되는 추정 예산이 50억 원 이상인 고충민원
- 4. 사회적 갈등으로 반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고충민원
- 5. 고충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족으로 반복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로서 특별한 관심과 응대가 필요한 고충민원
- 6. 위원장이 우선 처리하도록 지시한 고충민원
- 7. 기타 주심위원이 우선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고충민원

제24조(병합처리) 진행 중인 2 이상의 민원이 같은 내용일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조사의 종결 등) ① 조례 제17조 제2항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위원회에서 각하한 고충민원을 그 사유의 해소 없이 다시 제기한 경우
- 3. 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한 고충민원과 동일한 고충민원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송·이첩된 경우
- 4. 신청인 자신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 5. 법령의 해석이나 행정절차 등에 관한 질의

② 주심위원은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 없이 종결할 수 있다.

- 1.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 2.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기한 내 고충민원 보완을 하지 않아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 3.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제기한 경우

③ 조사관은 제2항과 같이 처리할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제19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반복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2회 이상 알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같은 사람이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결처리하고,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른 사람이 신

청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내용의 처리결과를 알리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이 신청한 고충민원은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27조(처리기간의 연장) ① 조례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익위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감정의 의뢰가 필요한 경우
2. 권익위법 제44조에 따라 합의의 권고가 필요한 경우
3. 권익위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신청인이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5. 그 밖에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주심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고충민원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조사관은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고충민원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되,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고충민원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고충민원을 접수·경유·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3. 고충민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4.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시간
5.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실험·검사·감정·전문적인 기술검토와 이와 유사한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6. 시·구·군의회 등의 동의를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구·군의회 등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7. 시 또는 구·군 등의 예산사정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8. 탈세조사·가격조사·수요조사·원가계산·경영분석·감정실시 및 기업진단에 소요되는 기간
9. 시험·신원조회 또는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10. 신청인의 불출석·약속불이행 등 귀책사유로 지연되는 기간

제29조(조사방법) ① 고충민원의 조사는 조례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르되, 사안에 따라 2 이상의 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조례 제18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제출일자 및 요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한 사항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전신·모사전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고충민원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고충민원 신청서의 사본을 송달하고 설명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은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때에는 당해 고충민원이 행정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에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통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조사관은 제2항에 따라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이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30조(출석조사) ① 조사관은 주심위원의 지시에 따라 조례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문서로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출석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출석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충민원기록에 편철하되,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진술서를 고충민원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31조(실지조사) ① 조사관은 주심위원의 지시에 따라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등의 진술을 들으려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문서로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심위원 및 조사관이 제1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분야 자문위원 또는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 또는 신청인 등의 진술 청취
2. 관계 행정기관 등 또는 신청인 등이 소지하는 문서·장부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3.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 밖의 상황의 확인

③ 조사관은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조사관이 신청인·피신청인·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진술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신분증의 제시) 주심위원 또는 조사관은 조례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신분증(즉, 공무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3조(합의) ① 주심위원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나 당사자 사이에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합의에 참여한 주심위원과 조사관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34조(조정) ① 주심위원은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조정서를 작성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고, 조정회의를 주재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5조(합의·조정 결과의 통지 및 사후관리) ①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따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된 사안에 대한 이행결과를 확인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의 사후관리카드에 입력

하여야 한다.

- ④ 신문고 담당은 사후관리카드에 입력된 피신청인의 이행결과 등을 반기별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36조(기획조사) 민원조사 담당은 조례 제4조제1항 제7호 내지 제10호에 따라 고충민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빈발·반복 고충민원 분야
2. 불합리한 법령과 행정규칙 및 지침 등으로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분야
3. 행정기관 등의 시설 기준 및 관리 부실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분야
4. 행정기관 등에서 수립한 정책의 장기 미집행 등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불편 등을 초래하는 분야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분야
6.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37조(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① 주심위원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이첩·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조사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종결처리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고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 후에 처리
2.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또는 제도개선 의견표명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
3. 합의·조정인 경우에는 종결처리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고
4. 심의안내인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종결처리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고
5. 기각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

- ② 해당 사안이 위원회에서 의결이 보류되어 재상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재상정 안건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38조(고충민원의 결정내용) ①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며, 하나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사안별로 그 결정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1. 이첩 : 조례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각하 또는 이송 : 조례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시정권고 :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의견표명 :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도개선 권고 또는 제도개선 의견표명 :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심의안내 : 신청인의 민원과 관련한 행정절차 또는 제도를 설명하거나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7. 기각 :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주심위원은 위원회에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의결한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9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 ① 주심위원 및 조사관은 고충민원 처리와 기획조사 과정에서 법령이나 제도 및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민원조사 담당에게 제도개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민원조사 담당은 위원장의 지시가 있거나 고충민원 처리와 연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 ③ 민원조사 담당은 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의결한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0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① 조사관은 고충민원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고충민원이 접수된 사실과 주심위원 및 조사관의 성명·연락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15일이 경과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제19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문서로 통지할 경우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다.

제41조(결정의 통지) ① 제36조제1호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를 결정한 경우 조사관은 지체없이 고충민원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는 제19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피신청인 등 및 감사부서의 장에게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결정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인 경우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민원처리결과 통지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결정이 기각 또는 안내회신 등인 경우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통지문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의결서 등의 경정) ① 의결서 등의 경정에 관해서는 제13조제1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결서 등의 경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에게 경정된 의결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3조(처리결과 통보의 독촉) 조사관은 피신청인이 조례 제23조의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

제44조(이행실태의 확인·점검 등 사후관리) ① 조사관은 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피신청인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그 내용을 사후관리카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신문고 담당은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사후관리카드 입력실태 및 피신청인의 처리결과를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일로부터 2년간 반기별로 확인·점검하고 위원회에 그 결과 및 사후관리 종결 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신문고 담당은 제2항에 따라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대상이 되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주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④ 신문고 담당은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일로부터 2년이 지난 민원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목록을 작성하여 사후관리를 수행한다.

제45조(사후관리의 종결) ① 신문고 담당은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이 여건의 변화, 기한의 경과, 민원의 해소 등으로 사후관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후관리를 종결할 수 있다.

② 신문고 담당은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 종결대상으로 선정된 민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사후관리 종결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① 신문고 담당은 주심위원별 민원 접수·처리 현황과 조례 제17조 제1항의 처리기간의 준수현황 및 처리지연 사유 등에 대하여 매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충민원관리부의 입력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신문고 담당은 위원회의 민원처리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민원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처리한 주심위원에게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7조(민원기록의 관리) ① 민원기록은 매 민원마다 별책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 ② 민원기록은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사안은 10년, 그 외의 사안은 5년간 보존한다. 다만, 조정서의 원본은 준영구 보존한다.
- ③ 민원기록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기록관 운영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보 칙

제48조(문서관리) ① 위원회는 관계부서에 요구한 자료 등 문서의 보안관리를 위해 위원회에 문서보관함을 둔다.

- ② 주심위원 및 조사관이 고충민원 조사 및 공공사업의 청렴계약 감시·평가를 완료한 경우 관계부서에서 제출받은 서류는 신문고담당에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다만, 관계부서에서 제출한 문서가 원본인 경우에는 조사완료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49조(운영실적의 보고) ① 위원회는 매년 1월 말과 8월 말까지의 운영실적을 해당연도 2월 말과 9월 말까지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운영실적은 시보와 시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출 석 요 구(통 지) 서

민원번호 :

수 신 :

민원 제목			
출석대상자	성명(한자)		생년월일
	주 소		
출석요구 취지			
근 거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울산광역시의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석일시 :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나. 출석장소 :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시 민 신 문 고 위 원 회			
※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신분증 그 밖의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할 곳			

[별지 제3호 서식]

파
남
남
하
남
카이
너

[illegible]

[별지 제4호 서식]

고충민원 접수증				
접수번호		민원제목		
신청인	성명		주소	
대표자 (대리인)	성명		주소	
접수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울산광역시시민신문고위원회(인)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52-229-xxxx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5호 서식]

의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조사·처리기간 연장요청서			
접 수 일		보고 기한	
조사요구 위원회			
사건번호 및 사건명			
신청인(청원인)			
피신청인			
사건의 주요내용			
조사요구 사항			
조사현황			
기간연장 요청사유			
연장 요청 기간			

[별지 제6호 서식]

【시장(시의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조사·처리 결과 제출문】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조사 등을 요구받은
시장(시의회) 조사요구 고충민원(제목)에 대한
조사·처리결과를 제출합니다.
-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

위원장 : 0 0 0

(052-229-2900)

대표자 선정 통지서

비교

[별지 제8호 서식]

대표자 해임(변경)서		
1. 민원표시	민원번호 제목	
2. 신청인	성명(명칭)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3. 해임(변경)된 대표자	성 명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4. 대표자 해임(변경) 사유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변경)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귀중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1. 민원표시”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셔도 됩니다.	

[별지 제9호 서식]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		
1. 민원표시	민원번호 제목	
2. 신청인	성명(명칭)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3. 대리인이 될 자	성 명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4. 대리인 선임 이유		
5.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6. 대리인의 자격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귀중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입증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될 자의 신분증 사본	

[별지 제10호 서식]

가. 고충민원기록표지(앞면)

	접 수 확 인	담당자	사 무 관
고충민원기록			
민원번호	접수일 . . .		신청경로
민원제목	처리결과통보방식		
분 야	행정, 문화, 교육, 재정, 세무, 산업, 농림, 환경, 주택, 건축, 도시계획, 수자원, 교통, 도로, 복지, 노동 기타		
주심위원	조사관		
신청인	성 명 외 명		구분
	전화번호		
	주 소 (☎ -)		
	대 표 자 (대리인)		이해관계인
피신청인	기관명		전화번호
	담당부서	수행자	관계기관
비 고			
민원처리	발 생 원 인		민 원 배 당 일 . . .
	민원요약보고일 . . .		처 리 방 침
	조 사 방 법		자 료 요 구 일 . . .
	실 지 조 사 일 . . .		출 석 조 사 일 . . .
	민원조사결과보고일 . . .		처리(의결)일 . . .
	처 리 내 용		처 리 통 지 일 . . .
	이첩이송기관명		신 청 인 요 구 내 용
	피신청인통보일 . . .		처 리 결 과 불수용사유
보존기간	년	보존종료일	. . .

나. 뒷면

작 성 요 령

발생원인	01. 위법·부당한 처분 및 규제 03. 불합리·비현실적인 정책·제도·법령 05. 공직행태(비리,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 07. 신청인의 불합리한 개인주장·요구	02. 거부·부작위 등 소극적 처분 04. 각종 행정문의 및 건의 06. 사인간의 관계 99. 기타
처리방침	1. 조사심의 2. 중지·종결	
조사방법	1. 서면조사 2. 실지조사 병행 3. 감정의뢰 병행 4. 실지조사·감정의뢰 병행 5. 출석조사 병행 6. 출석·실지조사 병행	
	※ 2, 3, 4, 5, 6은 서면조사 외에 추가조사한 경우임.	
처리(의결)일	실제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짜	
처리내용	결정내용을 기재	
신청인 요구내용	01. 행정처분 등 시정요구 03. 정책·제도·법령개선(건의) 05. 수사·조사 요구 07. 은혜적인 조치 요구	02. 거부·부작위 구제 요구 04. 질의·절차 문의 06. 보상·배상 요구 99. 기타
피신청인 처리결과	1. 수용 2. 불수용 3. 미회신	
피신청인 불수용사유	1. 법령 해석상의 차이 3. 소송·행정심판 결과와 상이 5. 예산상 곤란	2. 공익목적·정책상 곤란 4. 타 위원회등의 심의결과와 상이 9. 기타

[별지 제11호 서식]

울 산 광 역 시 시 민 신 문 고 위 원 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민원 이첩(신청번호)

1.아래와 같이 민원을 이첩하고자 합니다.

가. 민원표시 :

나. 신청인 : (성명)

다. 신청요지 :

라. 이첩사유 :

마. 이첩기관 :

※ 이첩사실 통지 여부(☐ 통지 ☐ 미통지)※ 통지방법(☐ 문서 ☐ 전자우편 ☐ SMS ☐ 기타)

263



주무관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시행 시민신문고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www.ulsan.go.kr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 제12호 서식]

울 산 광 역 시 시 민 신 문 고 위 원 회

수신자 내부 결재

(경유)

제 목 민원요약 보고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약 보고합니다.

1. 신 청 인 : 성명
2. 민원내용 :
3. 검토의견 :
 - 전화확인여부 : 확인(전화번호:), 미확인(사유기재)
4. 처리방침 : 조사심의(위원회 상정·보고), 중지·종결(위원장 종결)

조사관	서명	위원	서명
-----	----	----	----

시행 시민신문고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www.ulsan.go.kr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 제13호 서식]

울 산 광 역 시 시 민 신 문 고 위 원 회

수신자

(경유)

제 목 민원 보완 요구(1차)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민원번호 민원제목)의 민원내용 중 별지 기재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여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하오니 20 . . .까지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완할 사항 1부. 끝.

265

 02
 11

울 산 광 역 시 시 민 신 문 고 위 원 회 인

주무관

서명

위원

서명

시행 시민신문고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www.ulsan.go.kr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 제14호 서식]

울 산 광 역 시 시 민 신 문 고 위 원 회

수신자

(경유)

제 목 민원 보완 요구(2차)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민원번호 민원제목)의 민원내용 중 별지 기재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여 20 . . .까지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귀하께서 보완을 하지 않아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다시 보완을 요청하오니 20 . . .까지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21조 제3항에 따라 귀하의 고충민원을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보완할 사항 1부. 끝.

울 산 광 역 시 시 민 신 문 고 위 원 회 인

주무관

서명

위원

서명

시행 시민신문고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www.ulsan.go.kr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 제15호 서식]

제1부 산광역시시민신문고위원회

수신자 내부 결재

(경유)

제 목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검토 보고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1. 접수일: (처리기한 :)
2. 신청인: (성명)
3. 피신청인:
4. 연장일수: (처리예정기한 :)
5. 민원요지:
6. 처리경과(일자별 작성)
7. 연장사유

$\frac{17}{E}$.

267

참고

주무관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시행 시·민신문고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www.ulsan.go.kr](http://www.ulsan.go.kr)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 제16호 서식]

울산광역시시민신문고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안내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고충민원은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접수일자		당초 처리기간	
연장사유			
처리에정기한			

2.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위해서 예상보다 처리기간이 늦어지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위원에게(☎ 052-229-××××)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울 산 광 역 시 시 민 신 문 고 위 원 회 인

주무관 서명 위원 서명

시행 시민신문고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www.ulsan.go.kr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 제17호 서식]

울 산 광 역 시 시 민 신 문 고 위 원 회

수신자

(경유)

제 목 출석 요구서

1.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 고충민원에 대한 귀하(귀 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표시 : (민원번호 민원제목)

나. 신 청 인 : (성명)

다. 신청취지 :

라. 출석일시 : 20 . . . 오전(오후) 시 분

마. 출석장소 :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회의실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의사당 1층

바. 조사사항 :

2.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신분증,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고, 출석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회의실 약도 1부. 끝.

울 산 광 역 시 시 민 신 문 고 위 원 회 인

주무관

서명

위원

서명

시행 시민신문고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 www.ulsan.go.kr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주 : 붙임란에 고충민원신청서 사본, 피신청인의 수행자 지정서 등을 추가 활용

[별지 제18호 서식]

울 산 광 역 시 시 민 신 문 고 위 원 회

수신자 내부 결재

(경유)

제 목 출석조사 결과 보고

1.고충민원 (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한 출석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사개요

- 1) 조사일시 : 20 . . 00:00-00:00
- 2) 조사장소 : 시민신문고위원회 회의실

나. 진술인

- 1) 신 청 인 : (성명)
- 2) 피신청인 : (성명, 소속, 직급)
- 3) 이해관계인 : (성명)

다. 조사자 :

2. 진술요지

끝.

주무관	서명	위원	서명
-----	----	----	----

시행 시민신문고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www.ulsan.go.kr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주 : 조사자가 란에는 조사에 참여한 위원(또는 직원) 성명을 기재

[별지 제19호 서식]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 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실지조사 실시 통지

1.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아래 고충민원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이해관계인, 참고인 그 밖의 관계자료 준비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표시 : (민원번호, 민원제목)

나. 신청인 : (성명)

다. 조 사 자 :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000, 주무관 000

라. 조사일시 : 20 . . . 오전(오후) 시 분

마. 조사장소 :

바. 조사사항 :

17.
E.

271
하
하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 위원회

주무관	서명	위원	서명
-----	----	----	----

시행 시·민신문고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www.ulsan.go.kr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합 의 서

민원 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합 의 일 시	20 . . . 00:00
합 의 장 소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1호 서식]

조 정 서			
민원 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조정 일시	20 . . 00:00		
조정 장소			
조정 내용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2호 서식]

사 후 관 리 카 드

☞ 사후관리카드는 합의·조정만이 아니고 시정권고·의견표명, 제도개선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까지 관리

연번	민원번호	접수일	분야	제목	신청인관련				위원회			처리부서(소속기관 포함)					처리결과확인	
					신청인	주소	연락처	휴대폰	위원	의결종류1)	의결일	처리과	담당자	전화번호	휴대폰	조치계획2)	처리결과3)	비고4)

※작성요령

- 1) 의결종류 :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합의, 조정으로 구분하여 기재
- 2) 조치계획 : 수용, 불수용, 검토 중으로 구분하여 기재
- 3) 처리결과 : 이행, 미이행, 처리중으로 구분하여 기재
- 4) 비 고 : 3) 처리결과와의 미이행, 처리중에 대한 처리여부를 기재

[별지 제23호 서식]

가. 시정권고, 의견표명일 경우

조사관	주심위원

울 산 광 역 시 시 민 신 문 고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신 청 인
 민원번호
 성명
 주소
 피신청인
 주 문
 신청취지
 이 유
 의 결 일

위원장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별 지)

이 유

1. 사실관계
2. 당사자의 주장
 - 가. 신청인의 주장
 - 나. 피신청인의 주장
3. 판단
4. 결론

※ 관계법령, 복명서, 출석조사서 등 별첨

나. 기각일 경우

조사관	주심위원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 ○ ○		
피신청인	○ ○ ○	접수일	20 . . .

1. 신청취지
2. 사실관계
3. 당사자의 주장
 - 가. 신청인의 주장
 - 나. 피신청인의 주장
4. 판 단
5. 결 론
6. 제도개선여부
 -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 관계법령, 복명서, 출석조사서 등 별첨

다. 각하, 이첩일 경우

조사관	주심위원

☐ 위원회상정
☐ 종결처리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		
피신청인	○○○	접수일	20 . . .

1. 신청취지

2. 사실관계 및 판단

3. 결 론

4.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 관계법령, 복명서, 출석조사서 등 별첨

※ 피신청인 등 의견은 사실관계 및 판단부분에 기재

※ 다수인 관련 민원인 경우 국장 또는 심의관 결재 후 소위원회 위원장에 보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라. 조정, 합의인 경우

조사관	주심위원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		
피신청인	○○○	접수일	20 . . .

1. 신청취지
2. 사실관계 및 판단
3. 결론 : ○○○ ○○○○ (합의 또는 조정)
4.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 합의서 · 조정서 및 관계법령 등 별첨

※ 피신청인 등 의견은 사실관계 및 판단부분에 기재

[별지 제24호 서식]

조사관	위 원	위원장

☐ 위원회 재상정
☐ 재작성 보고

재상정 안전 보고서	
민원표시	민원표시 민원제목
신 청 인	
피신청인	
위원회심의일자	
☐ 민원요지 ☐ 쟁점사항(논의내용) ☐ 위원회(위원) 지시사항 ☐ 검토(조사)결과 ☐ 처리의견	

주. 당초 상정된 안전 변경 없이 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 적용
※ 당초 상정된 안전이 부결된 경우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서를 재작성하여 보고

[별지 제25호 서식]

울 산 광 역 시 시 민 신 문 고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성명
 주소

피신청인

주 문

신청취지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 . . .

위원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별 지)

이 유

1. 사실관계
2. 당사자의 주장
 - 가. 신청인의 주장
 - 나. 피신청인의 주장
3. 판 단
4. 결 론

[별지 제26호 서식]

울 산 광 역 시 시 민 신 문 고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0000 - 00 호
의 안 명 ○ ○ ○ ○ ○ ○ ○ ○ ○ ○
대 상 기 관 ○ ○ ○ , ○ ○ ○
의결연월일 0000. 00. 00.

주 문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 년 00월 00일

위원장	○	○	○	_____
위 원	○	○	○	_____
위 원	○	○	○	_____
위 원	○	○	○	_____
위 원	○	○	○	_____

[별지 제27호 서식]

울 산 광 역 시 시 민 신 문 고 위 원 회

수신자

(경유)

제 목 고충민원처리 진행 상황 안내

1.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운영규정」 제조 제항에 따라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신청하신 고충민원의 처리진행상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접수일자		처리 예정일	
처리상황			

2.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위원(☎ 052-229-××××)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울 산 광 역 시 시 민 신 문 고 위 원 회 인

주무관 서명 위원 서명

시행 시민신문고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www.ulsan.go.kr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 제28호 서식]

가. 피신청인 통보용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울 산 광 역 시 시 민 신 문 고 위 원 회

수신자 피신청인, 피신청인의 감사부서

(경유)

제 목 민원처리결과 통보

1.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귀 기관에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귀 기관에서는 위 조례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우리 위원회와 감사부서(피신청인의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 위원회의 권고내용(의견내용)은 귀기관의 처리결과와 함께 공표되거나 같은 조례 제31조에 따라 매년 2월, 9월에 울산광역시장과 울산광역시의회에 보고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

울 산 광 역 시 시 민 신 문 고 위 원 회 인

주무관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시행	시민신문고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www.ulsan.go.kr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나. 신청인 통보용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울 산 광 역 시 시 민 신 문 고 위 원 회

수신자

(경유)

제 목 민원처리결과 알림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불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위원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우리 위원회와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3.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권고내용(의견내용)은 그 처리결과와 함께 공표되거나 같은 조례 제31조에 따라 매년 2월, 9월 울산광역시장과 울산광역시의회에 보고됩니다.

불임 의결서 1부. 끝.

울 산 광 역 시 시 민 신 문 고 위 원 회 [인]

주무관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시행 시민신문고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www.ulsan.go.kr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다. 제도개선(피신청인) 통보용

울산광역시신문고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 제도개선 권고

1. 그 동안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을 붙임1과 같이 권고하오니, 조치기한 내에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제도개선의 원활한 이행관리를 위해 0000.00.00.까지 붙임2의 ‘제도개선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권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조치결과는 붙임3의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을 작성하여 조치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도개선 의결서 1부.
2. 제도개선 추진 계획서(양식) 1부.
3.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양식) 1부. 끝.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장

주무관 서명 민원조사담당 서명 위원장 서명

시행 시민신문고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www.ulsan.go.kr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 제29호 서식]

가. 신청인 통보용 (기각, 안내회신 등)

울 산 광 역 시 시 민 신 문 고 위 원 회

수신자 신청인의 성명, 주소 기재

(경유)

제 목 민원처리결과 알림

1. 우리 위원회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2018-고-0000 공공사업편입 토지보상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가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하여 달라.
4. 귀하의 민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검토·판단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나. 끝.

287

민
원
고
시

울 산 광 역 시 시 민 신 문 고 위 원 회 위 원 장 인

주무관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	----	----	----	-----	----

시행 시민신문고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www.ulsan.go.kr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나. 피신청인 통보용 (기각, 안내회신 등)

울 산 광 역 시 시 민 신 문 고 위 원 회

수신자 피신청인 기관명(부서명) 기재

(경유)

제 목 민원처리결과 통보

1. 시민신문고위원회-1234호(2018.10.31.)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2018-고-0000 공공사업편입 토지보상에 관하여 신청인 000에게 불임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임 회신문 사본 1부. 끝.

울 산 광 역 시 시 민 신 문 고 위 원 회 위 원 장 인

주무관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시행	시민신문고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www.ulsan.go.kr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 제30호 서식]

울 산 광 역 시 시 민 신 문 고 위 원 회

수신자

(경유)

제 목 고충민원처리결과 회신 촉구

1. 시민신문고위원회-○○○○(20 . . .)호 관련입니다.
2.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7호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귀 기관에 시정권고(의견표명)한 사안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일이 경과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20 . .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기간까지 통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권고내용(의견내용)은 귀기관의 처리결과와 함께 공표되거나 같은 조례 제31조에 따라 매년 2월, 9월 울산광역시장과 울산광역시의회에 보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끝.

289
02
13

울 산 광 역 시 시 민 신 문 고 위 원 회 ㉠

주무관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시행	시민신문고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www.ulsan.go.kr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 제31호 서식]

조사관	위 원	위원장

사후관리 종결 검토보고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피신청인	
조 사 관		주심위원	
의 결 일		의결결과	
○ 의결주문			
○ 사후관리 종결사유			
사후관리 종결대상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2019 시민신문고위원회

운영보고서

발행일 2020년 2월

발행처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광역시청)
<http://www.ulsan.go.kr>

편집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052.229.3960~2

디자인·인쇄 인쇄마을 052.227.3040